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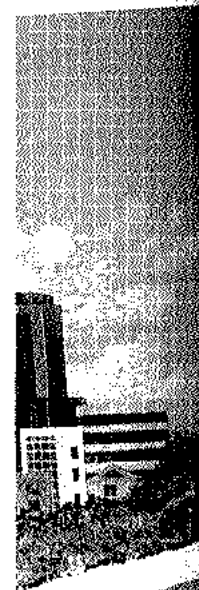
주식회사
Keumkang

建築

大韓建築士協會誌 JUNE 1986 NO. 207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다.

서고 있습니다.



보드는 석고
복합재질
중량의 다른
다 차음성이
다.



고보드는 칼로도
단할수 있으며
본드 등으로
부착할 수
다 또한
벽지 등 어떤 마감재로도
감할 수 있습니다.



고보드

1986. 6



80년 역사의 호주 “솔라하트사”가 30년
에 걸친 연구끝에 완성시킨 획기적인 태
양열 온수 시스템—“솔라하트”.

이미 세계 60여개국에서 그 성능과 경제성
이 입증되었듯이, 단 하루만에 설치하여
30년 동안 연료비 없이 뜨거운 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라하트”로 주택의 가치를 더욱
높여 보십시오.

“솔라하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태양
열 온수 시스템입니다.

1.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2. 최적의 일조량으로 하루 최고 43°C—80°C의 온수
300ℓ를 공급합니다.

1. 24시간만에 간단히 설치됩니다. 2. 수도꼭지만 틀
면 온수가 나오므로 사용이 간편 합니다. 3. 아파트 서
비스가 철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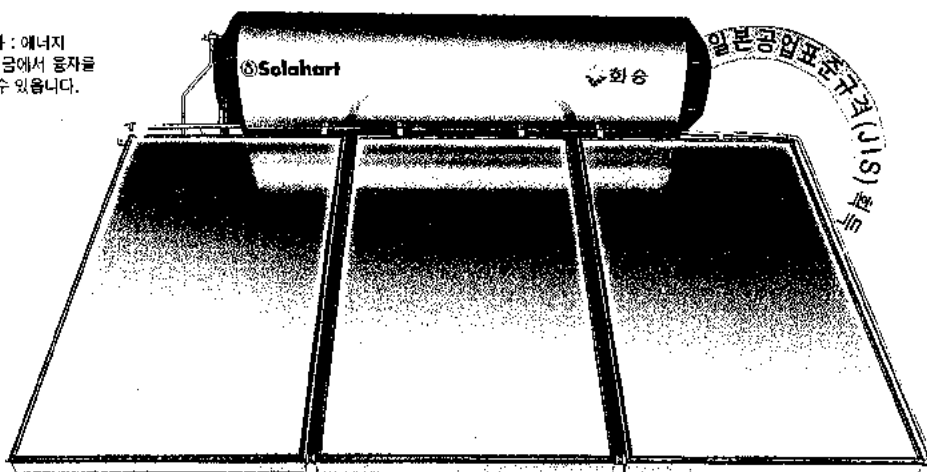
1. 고장없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철저한 보
온설계로 동파되지 않습니다. 3. 장마철과 폭한을 대
비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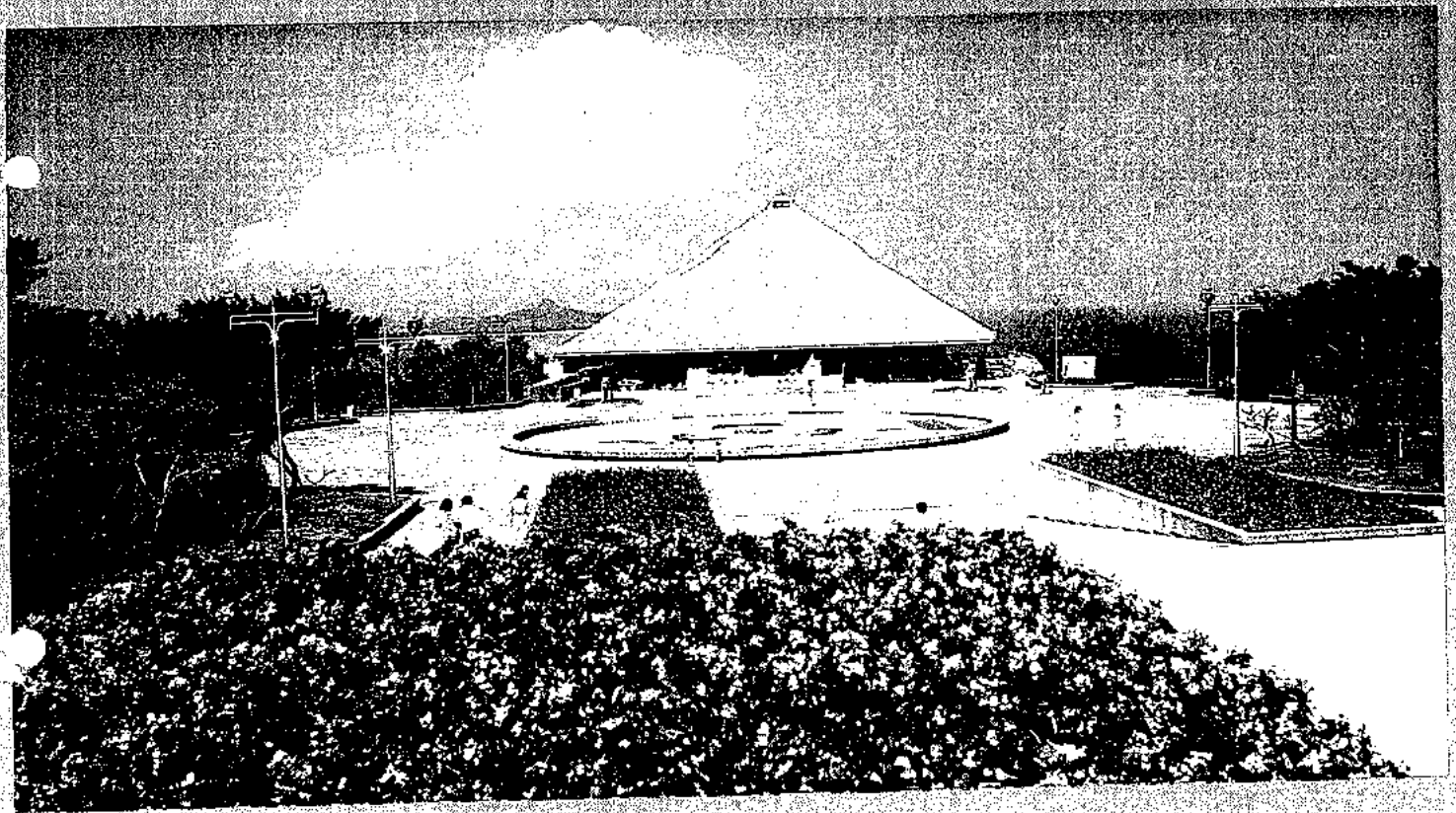
1. 30년의 연구·노력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용됩니다.

• 동자 : 에너지
합리화 기금에서 동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34-7 동양빌딩(대표)
☎757-8711, 757-9711 • 부산 :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6가
69번지 ☎462-1421~8 • 상설전시장 : 서울546-7471~2
■ 대리점 : 서울(서부) 313-8688, 8383, (동부) 424-9501/2,
인천93-7106, 수원32-1486~8, 대전253-8989, 254-4949,
춘천53-3442, 부산83-9342, 82-6429, 광주365-6766, 이리
52-5919, 제주27-5176, 전주72-1930

세계적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화승 솔라하트





건축 + 조경은 회색 도시공간에서 자연의 공급, 건축물의 품위보존, 창작성을 돋보이게 하는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조경설계

- 옥내외·옥상 조경계획 및 시설물
- 옥외공간 Paving 조경물설계계획
- 도시공원, 자연공원, 단지계획 및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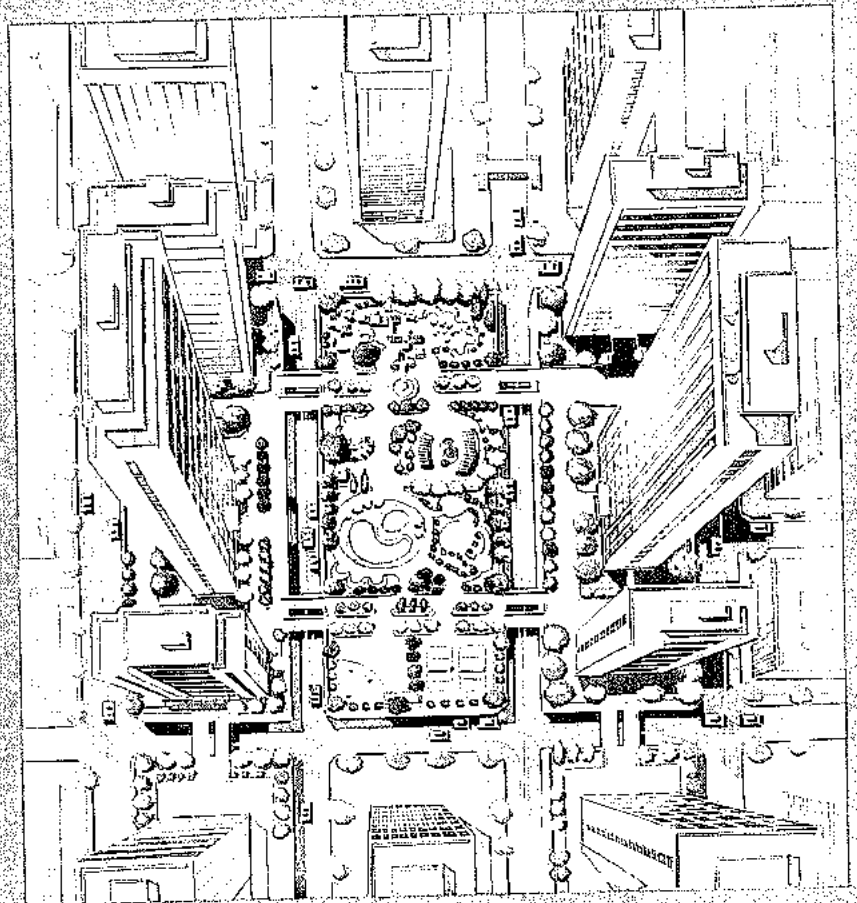
레저·스포츠계획

- 생활위탁단지 및 시설계획
- 스포츠시설계획 및 설계
- 골프코스, 스카이크로프 계획 및 설계
- 운동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놀이기구 설계 및 제작설계
- 도시어린이공원계획 (모형놀이 공원)

※ 건축주제도 조감도 특별취급



조원엔지니어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4-4 (삼익 E/D 805) TEL 547-1667



표지사진: 강석원작, 성심여대 소피바라 건물
사진: 김장웅

건축사

차 례

1986년 6월호 (통권 207호)

회원작품 / 호텔작품특집

- | | | |
|----|--------------|-----|
| 13 | 드래곤 벨리호텔 | 김관옥 |
| 16 | 인천송도관광호텔 | 송기덕 |
| 18 | 부곡로얄호텔 | 김춘웅 |
| 20 | 서해호텔 | 한동연 |
| 22 | 제주프린스호텔 | 안병익 |
| 24 | 영랑호 동방레지콘도 | 서천식 |
| 26 |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 | 강석원 |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입상자 시상식

- | | |
|----|---------------------|
| 7 | 회장개식사 |
| 8 | 건설부장관지사 |
| 9 | 아카시아(ARCASIA) 회장 축하 |
| 10 | 시상식 상보(詳報) |
| 43 | 수상자 소감 |

좌담

- | | |
|----|--------------|
| 30 | 건축관계법에 관한 좌담 |
|----|--------------|

특집·호텔

- | | | |
|----|----------------|-----|
| 45 | 호텔 | 안병익 |
| 48 | 의전행사와 호텔시설 | 임영호 |
| 60 | 호텔의 인테리어디자인 | 조성렬 |
| 55 | 우리나라호텔 건축의 개선점 | 현영조 |

논문

- | | | |
|----|-------------------------|-----|
| 73 | 건축과 조경 ① | 오상평 |
| 77 |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본 조선후기의 주택사상 | 한동수 |

회원광장

- | | | |
|----|------------------|-----|
| 67 | 유럽기행 | 오재영 |
| 70 | 벽면회화건축 | 유경철 |
| 80 | 감리업무에 대한 소고 | 강기새 |
| 82 | 미국콘크리트연구회 총회 참관기 | 안선규 |
| 85 | 신입회원소개 | |
| 86 | 협회소식 | |
| 90 | 자료 | |
| 96 | 회원동정 | |

발행인 오응석
편집 출판사업부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부위원장 김 린
위원 강철구
위원 서천식
위원 김기웅
위원 윤석우
위원 여홍구
전문위원 안상수 (디자인)
전문위원 임정의 (사진)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 (02) 581-5711 (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U.D.C. 69/72(054-2): 0612(519)
인쇄: 광문경판사
인쇄인: 천윤규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07호
구입년월일	1986. 6. 30.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une 1986 Vol 207

CONTENTS

WORKS/SPECIAL ISSUE · HOTELS

Dragon Valley Hotel	Kim Kwan Wook	13
Songdo Tourist Hotel in Incheon	Song Kee Duk	16
Bugok Royal Hotel	Kim Choon Woong	18
Hotel Free Port	Han Chong Un	20
Cheju Prince Hotel	Ahn Byung Ui	22
Dongbang Leisure Condominium at Yungnang Lake	Shu Chun Sik	24
Sophie Barat Hall Sacred Heart Woman College	Kang Suk Won	26

THE AWARDING PRIZE CEREMONY

Opening Adress by Chairman of KIRA, Oh Woong Suk	7
Appreciation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Lee Kyu Hyo	8
Appreciation by Chairman of ARCASIA, F. M. Mendoza	9
Details of the Awarding Prize Ceremony	10
Impression of Receiving Prize	43

TABLE TALK

On the Laws and Ordinances of Architecture	30
--	----

SPECIAL EDITION/HOTEL

The Conception of 'HOTEL'	Ahn Byung Ui	45
Ceremony and Hotel Facilities	Lim Byung Ho	48
Interior Design for Hotels	Cho Sung Ryul	58
A Note for Improvement of Korean Hotel Design	Hyun Yung Jo	65

TREATISE

Architecture and Landscape	Oh Sang Pyung	73
Housing Philosophy of the Late Chosun Dynasty	Han Dong Soo	77

MEMBER'S PLAZA

Travels; Around Europe	Oh Jae Young	55
Painting Architecture on Buildings	Yoo Kyung Chul	70
Views of Supervision	Kang Ki Se	80
Introduce to ACI	Ahn Sun Ku	82
Newly Admitted Member		85
KIRA News		86
Materials		90
Movements of the Member		96

Publisher: Oh Woong Su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Chul Koo

Shu Chun Sik

Kim Ki Woong

Yun Suk Woo

Yuh Hong Koo

Consultant: Ahn Sang Soc(Layout)

Lim Jeong Eui(Photograph)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왜 바일란트가 벤츠에 비유되고 있는가?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로서 우수한 성능과 오랜 역사로 자동차 시장에 군림하는 품위의 상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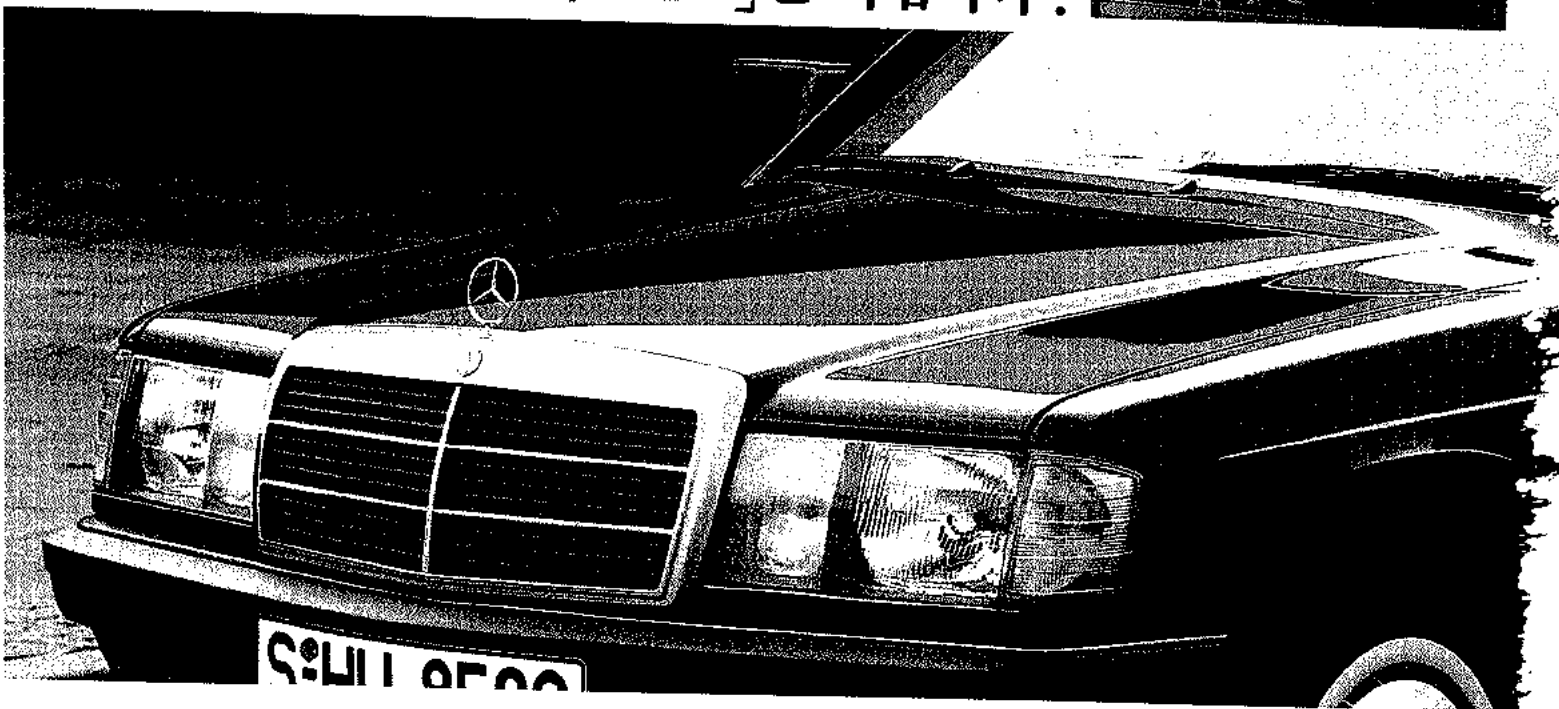
「바일란트」는 1874년 독일 Remscheid에서 창립, 113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술축적으로 1100여년이 넘는 특허와 연간 생산 120만대 규모의 가스보일러·온수기 전문 메이커로서 세계 가스보일러시장에 군림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가스연료의 시대가 오고있습니다

산뜻하고 품위있는 주방세트와 나란히 냉장고 모양의 깨끗한 가스보일러, 벽면에 부착된 바일란트 가스보일러로 순간난방, 순간온수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즐기는 문화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車「벤츠」를 아십니까? 독일의 가스보일러「바일란트」를 아십니까?



고급 빌라와 단독주택에서 바일란트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완제품 「바일란트」는 손자동 가스보일러로서 긴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구리로 된 열교환기,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버너, 청동으로 된 내부와 범광 처리된 미려한 외관, 다자인 등으로 고급빌라와 단독주택에서 그 품위를 한층 더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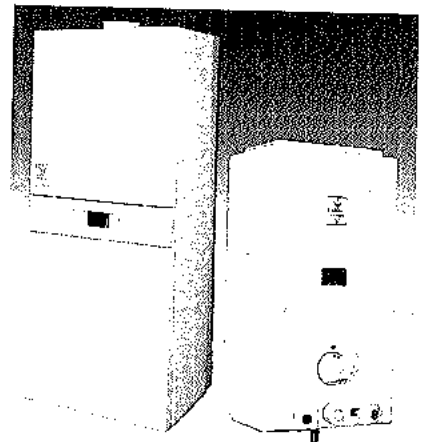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중



株式会社 和仁 Vaillant

본사 : 인천직할시 남구 간석동 617-12. TEL. (032) 421-5188, 423-5188
서울사무소 : 서울·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312호. TEL. (02) 757-3391~3
(지매회사 : 린나이코리아주식회사 · 린니산업주식회사 · 서울설비산업주식회사)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난방면적 및 온수용량에 따라 기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바일란트대리점

● 서울 : (주)한덕연료 273-2863 (주)대동열기 265-0197 (주)이천가스 기구상사 980-3651
바일란트설비상공사 676-9867 ● 대구 : 경록린나이 422-3651 ● 마산 : 린나이서부경남대리점 2-5011
● 대전 : 린나이충남대리점 22-8183

상설 전시장
● 롯데백화점 779-0659 ● 미도파 753-8151 ● 신세계 755-0790 ● 영동한양쇼핑 543-8288 (교) 230 ● 영동백화점 544-3000 (교) 3522
● 현대백화점 547-4014 ● 청라리미도파 963-2301 (교) 32 ● 기린전통백화점 547-3251 ● 도봉전시관 980-3651 ● 구로전시관 676-9866
● 화곡동전시관 690-3651 ● 화곡도시가스전시관 974-3288 ● 동대문에너지전시관 274-5991 ● 송파에너지전시관 552-5991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작품시상식

회장 개식사

Opening Address by
Chairman of KIRA
Oh Woong Suk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오늘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작품 시상식을 거행하며 존경하는 이규효 건설부장관님과 박익주 국회건설위원장님, 멀리 외국에서 오신 ARCASIA 의 MENDOZA 회장님과 전임회장이신 Mr. POON 씨, 동력자원부장관님과 과학기술처장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에너지절약 세미나에 참석하신 회원님 앞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수출이 증대되고 선진국으로 향하여 도약 하고 있으나 그 발전을 주도하는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위시한 각계각종에서는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 자원을 절약하고 외채를 절감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하에 대책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우선 건물설계에 에너지절약 개념을 반영하여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설계시 단열설계를 시도함으로써 한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현상설계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설계는 지난 11월에 응모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금년 3월, 73점에 달하는 많은 출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와 또한 정부 에너지 관련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대책의 측면에서 적극 권장을 받고 저희 협회가 앞장서서 본 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현상설계를 주도 해주신 건설부·동자부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님들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과 실무지도를 맡아주신 에너지관리공단 관계관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현상설계에 입해 주신 응모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대했던대로 좋은 작품을 많이 내 주신데 대해 본 협회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많은 작품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그 행사를 주최하여 주신 에너지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본 행사를 지원해 주신 화승과 한국유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현상설계가 우리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 의식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촉진제가 되고, 지속적인 연구발전을 자극하는 동기가 되어 우리의 앞날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5월 22일

대한건축시험회 회장 오 웅 석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주택 현상설계 작품시상식

건설부장관 치사

Appreciation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Lee Kyu Hyo



대한건축사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당부(當部)를 비롯한 동자부, 과기처 등의 후원을 받아 시행한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자연형태양열 주택에 대한 설계공모전시회의 개막 및 시상식에 참석하여 본인이 치사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재직하는 건설부나 건축사 여러분은 건축물·조형물을 세우고, 마을과 도시를 가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의 일익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기 때문에 평소 건축물과 건축사의 역할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소신의 일단을 과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토에는 지은 지 수백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적인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건축문화재를 다수 가지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과연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3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남겨 놓은 건축물·구조물이 과연 우리의 후세로부터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적이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우리는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깊이 성찰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평소부터 예술적(藝術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작품속에 만든 사람의 순수한 혼(魂)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만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이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역사적·문화적 안목과 미적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순수한 혼(魂)을 그 건축물에 넣어야 하는 것이며 적당히 설계·시공을 하거나 감리를 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냉엄한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세계민방에 우리의 건축문화수준을 과시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을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건축문화의 창조자인 건축사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아울러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노력을 통한 배전의 분발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건축문화에 있어서 예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지언만 우리 현실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의 문제로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절약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에 의하여 난방기간이 4~5개월이 되기 때문에 난방용에너지 소비가 많은 편이며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로서 금액으로는 매년 3조 8천억원을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거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소비절약운동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축건물단열시공의 의무화, 에너지소비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다각도의 절약시책이 강구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건축사 여러분이 주지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건축사 여러분이 건축물의 설계당시 부터 에너지소비절약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종기법의 적용, 효율높은 기자재의 선정 등을 강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번 건축사협회가 주택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상공모전(懸賞公募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며 건축물에너지 절약추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으며 동 공모전(公募展)에 출품하여 주신 건축사 및 건축학도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아낌없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건축사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이를 적극 후원해 주신 관계기관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건축문화 창달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의 번영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치사에 거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5월 22일

건설부장관 이 규 호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작품시상식

아카시아회장 축사

Appreciation by
Chairman of ARCASIA
Felipe M. Mendoza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이규호 건설부장관과 박익주 국회건설분과위원장, 정부 관계관, 그리고 오용석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인을 여기까지 초청해주셔서 이처럼 영광된 자리에서 한국건축사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필리핀인인 동시에 아카시아(ARCASIA) 회장입니다.

필리핀인과 한국인은 공동시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천년전서부터 우리는 민족적으로 중국에서 유래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같은 핏줄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조, 문화, 모든 예술을 사랑하는데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의 공통점은 지난 세계제2차 대전시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화를 통해서 서울이나, 마닐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급속히 발전을 해서 새로운 건물이 급속도로 들어서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급진적인 건설상을 통해서 본인은 정부에서 오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건축인, 또 건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의 건축사 여러분에게 항상 아카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카시아와의 유대강화가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속한 대한민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등 공동의 과제를 안은 국가들이 상호 협조하에 아카시아를 통해서 보다 굳건히 결속하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국이 건축사협회의 본부 건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추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고, 놀랍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미국 워싱턴에, 또 런던에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빛나는 노력의 결과를 본인은 직접 와서 보고 앞으로 1988년도 아카시아 총회가 한국에서 기어이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하신 현상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5월 22일

아시아지역건축사회 이사회 (ARCASIA) 회장 멘도자 (Felipe M. Mendoza)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주택 현상설계입상자 시상

Report

Details of

The Awarding Prize Ceremony



본협회는 5월22일 오후 2시30분 부터 이규효 건설부장관, 박익주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아카시아(ARCASIA ;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이사회) 회장 멘도자 (Mendoza)씨, 고문 로날드 폰(Ronald Poon)씨 등 국내외 내빈과 역대회장 및 현임원, 회원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회 강당에서 자연형 태양열 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주택 현상설계 입상자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행사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를 빛낸 국내의 귀빈

이규효 건설부장관이 유상열 주택국장과 배종명 건축과장, 이필원 기술지도과장을 대동하고 본협회에 도착, 현관에서 본협회 임원진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회장실에서 전회장단과 현임원들의 인사를 받은 후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환담을 나누었으며 이때 박익주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도착, 이규효 건설부장관과 환한 웃음을 나누며 인사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오웅석회장의 소개로 멘도자 회장과 로날드·폰 고문이 이규효장관과 박익주 국회건설위원장에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후 국내외의 귀빈 일행은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멘도자 아카시아 회장

본협회 초청으로 5월20일 말레이시아를

날아 내한한 아시아지역 건축사회 이사회 (ARCASIA) 회장 멘도자씨와 고문 로날드·폰씨는 아침 10시30분 부터 본협회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역대회장 및 현임원 등과 인사를 나누었다. 약 1 시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특히 멘도자씨는 본협회가 건축사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미국·영국 등과 함께 자체회관을 지니고 있는 3대 건축사단체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본협회가 자닌 저력에 감명받는 듯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일행은 본협회가 마련한 오찬을 마치고 설계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국내외귀빈 축하

시상식이 시작된 것은 오후 2시30분경, 식순에 따라 개회식 선언, 국민의례, 오웅석 본협회 회장의 개식사 등 순서가 이어졌으며 이규효 건설부장관의 치사가 행하여졌다.

이규효장관은 치사를 통하여 (정부수립후 38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남겨 놓은 건축물·구조물이 과연 우리의 후세로부터 조형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적이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후 (건축문화의 창조자인 건축사 여러분의 깊은 성찰과 아울러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노력을 통한 배전의

분발)을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우리 현실에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번 건축사협회가 주택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현상공모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 다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추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바란다>고 본공모전의 의의와 성과에 기대를 모았다.

다음에는 박익주 건설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중한 사연에 따라 아카시아 회장 멘도자씨의 축사순으로 넘어 갔다.

멘도자씨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자기 회관을 소유한 세계 몇 안되는 국가의 저력있는 건축사단체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88년도 아카시아 총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고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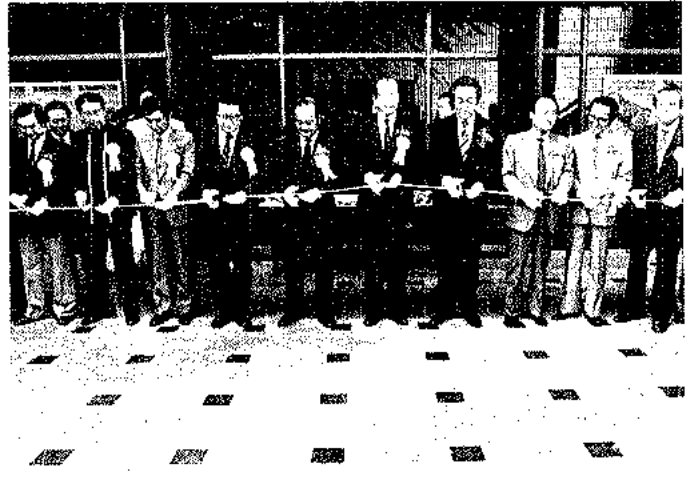
시상

시상식은 신문·방송 등 각 언론매체의 열띤 취재경쟁이 불타는 눈부신 스포트 라이트와 후레쉬 속에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규효 장관은 친히 상패와 부상을 건설부장관 수상자인 김기홍·최병완 팀에게 전하면서 따뜻한 악수로 격려를 겸한 분발을 당부하였고 동력자원부장관 상은 장석정 자원개발국장이, 과학기술처 장관상은 김지문 동력자원연구조종관이



〈사진上〉 건설부장관상을 수상하기 위해 이규호장관 앞에 올라온 김기홍(우측), 최병완(좌측) 회원. 〈사진 右〉 전시회 개막테이프 커팅. (좌로부터) 노날도·문, 멘도자, 김지문 동력자원연구원, 박종국 에너지관리공단부이사장, 박익주건설



위원장, 이규호건설부장관, 오웅석회장, 정석정 동자부자원개발국장, 현창진 전회장, 이춘상 서울지부장.

각각 수상팀에게 대리 시상하였으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장상은 박금식 소장이 수상팀에게 직접 시상하였다.

이어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부분과 자연형태양열주택 설계부분의 가작·장려상·노력상이 본협회 오웅석 회장에 의해 시상됨으로써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끝났다.

전시회개막

시상식을 마친 국내외 내빈 일행은 오후 3시 건축사회관 선관가든에 마련된 전시회 개막 오프닝 테이프의 커팅 라인에 뒀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극대화하는 각종 기법(技法)을 적용한 주택설계 계획안이 이제 막 세상에 공개될 순간이었다.

드디어 테이프가 가위에 잘려 나가고, 내빈들은 본협회 A·B 전시실에 나누어 전시한 작품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으며 전시장 입구에 이르러 이규호 장관, 박익주 건설위원장, 멘도자 아카시아 회장 등의 순서로 방명록에 서명을 하였다.

건물에너지분과위원회 이종관 간사는 오웅석 회장의 안내로 전시장에 입장한 내빈들에게 각 작품이 채용한 에너지절약 개념의 특징들을 상세히 설명해 나갔으며 작품 참관이 끝나자 자축연 칵테일 파티의 귀빈석에 자리하였다.

자축연은 삼펜 병 마개가 터지면서 흰 거품이 호사스럽게 넘쳐 흐르고 폭포수를

잔에 받듯 축주를 나누어 건배하는 순간 절정을 이룬 듯하였다.

뒷날 —

자연형 태양열 주택이 본격적으로 설계,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주택지역마다 차고 넘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총소비량의 40%를 소비하고 있는 오늘의 주택에너지 소비구조에 큰 변혁을 가룩하게 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내빈들이

치켜든 자축 건배의 뜻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들 예견하는듯 하였다.

홍보성과

홍보위원회(위원장 이문우)는 본행사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5월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밀하게 홍보계획을 성안 추진하였다.

가. 신문·통신·잡지 홍보성과

신문·통신	게재일자	게재면	크기	게재내용
연합통신	5월 21일	경제면	14행	태양열주택 등 전시 건축시험, 에너지절약형도
건설회보	5월 23일			에너지절약형주택전시회개최
매일경제	5월 23일	10면	2단 11행 사진8cm×5.5cm	태양열주택전시회 대한건축시험회
매일경제	5월 24일	9면	Box 9.5cm×14cm	에너지절약형주택 소개
조선일보	5월 28일	6면	Box 17.5cm×20.5cm	에너지절약형주택으로 수상한 김기홍씨
중앙일보	5월 28일	12면컬러면	Box 12.5×10	건축시험회공모 절약형주택 최우수작들
서울신문	5월 31일	7면	8단 35행 사진2매 7×5	에너지절약 새자연열주택개발
경향신문	6월 3일	10면	Box 12cm×13.5cm	절약형주택창안 활발 건축시험 현상공모설계도 전시
광주일보발간월간잡지「예향」	7월호			태양열·에너지절약형주택 화보 소개
여성동아	7월호	컬러화보	2면	태양열·에너지절약형주택 화보소개

홍보위원들은 이날 협의한 바에 따라 5월19일을 기해 일제히 포스터, 행사 프로그램, 전시작품목록, 홍보문 등이 가득 든 홍보자료봉투를 한뼘씩씩 짊어지고 담당매체를 향해 활동을 개시했다.

홍보의 성과는 발과 입의 운동량에 비례한다는 원칙은 19세기가 저물어 가도록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사무(私務)를 제쳐두고 땀 흘리는 위원들의 활동량에 따라 성과의 대소도 좌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의 홍보를 위해 홍보위원들이 얼마나 애썼는가는 그 결과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본행사와 관련한 언론매체별 보도현황은 예시한 표와 같다.

나. 텔레비전

월 일	방영시간	매 체	프로그램	보 도 내 용
5월22일	19:00~	KBS-ITV	뉴 스	전시회개회, 최우수상수상작품소개
5월22일	22:50~	KBS-2TV	뉴 스	전시회소개, 최우수상수상작품소개
5월22일	21:00~	MBC-TV	뉴 스	전시회소개, 최우수상수상작품소개
5월23일	06:45~	KBS-ITV	뉴 스	전시회소개, 최우수상수상작품소개
5월23일	07:00~	MBC-TV	뉴 스	전시회소개, 최우수상수상작품소개

다. 라디오

월 일	방송시간	매 체	프로그램	보 도 내 용
5. 20.	07:00~	KBS-1R	안녕하십니까	김일영·강철구회원출연 대담
5. 21.	17:10~18:00	KBS-RS	시민생활상담	정치부위원장 출연
5. 23.	10:40~	CBS	주 택 메 모	정정치 부위원장 출연
5. 24.	15:00~	CBS	CBS 광 장	에너지절약형주택 소개
5. 26.	12:40~	KBS-1R	오후의교차로	이종관·강철구회원 중계자 생방송
5. 30.	14:00~	KBS-2R	임성훈과학계	이종관 회원 출연

성과분석

본 공모전은 3개부처의 후원에 따라 거국적 행사로 추진됨으로써 건축물 부문에 대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분석되며 아울러 건축분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당국, 실수요자 및 각급학교 학생들의 실무교육 효과도 거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개념 적용례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정책적 측면에서 주택 이외의 각종 건축물에 절약의식을 파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에너지 절약에 부응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개발 생산에도 촉진적 효과를 파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본 행사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창출한다는 건축사 본연의 목적의식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성과의 수렴을 통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 함으로써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여망과 성원에 보답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협찬사에 감사

본협회는 행사가 성공리에 대단원을 지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찬조하여 준 한국유리공업(주)와 (주)화승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배전의 성원을

바라고 있다.

전시회개관 축하화환을 보내준 한국인슈로공업(주) 및 (주)화승 임직원 여러분의 건투와 일익사업의 번창을 본지면을 통해 기원하며

특히 본행사의 거행을 전국 국민에게 상세히 보도, 전달하여 줌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한층 높여준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매체 각사에 대하여 2천4백여 회원과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전시작품참관 : (우측으로부터) 오웅석회장, 이규호 장관, 박익주위원장, 강철구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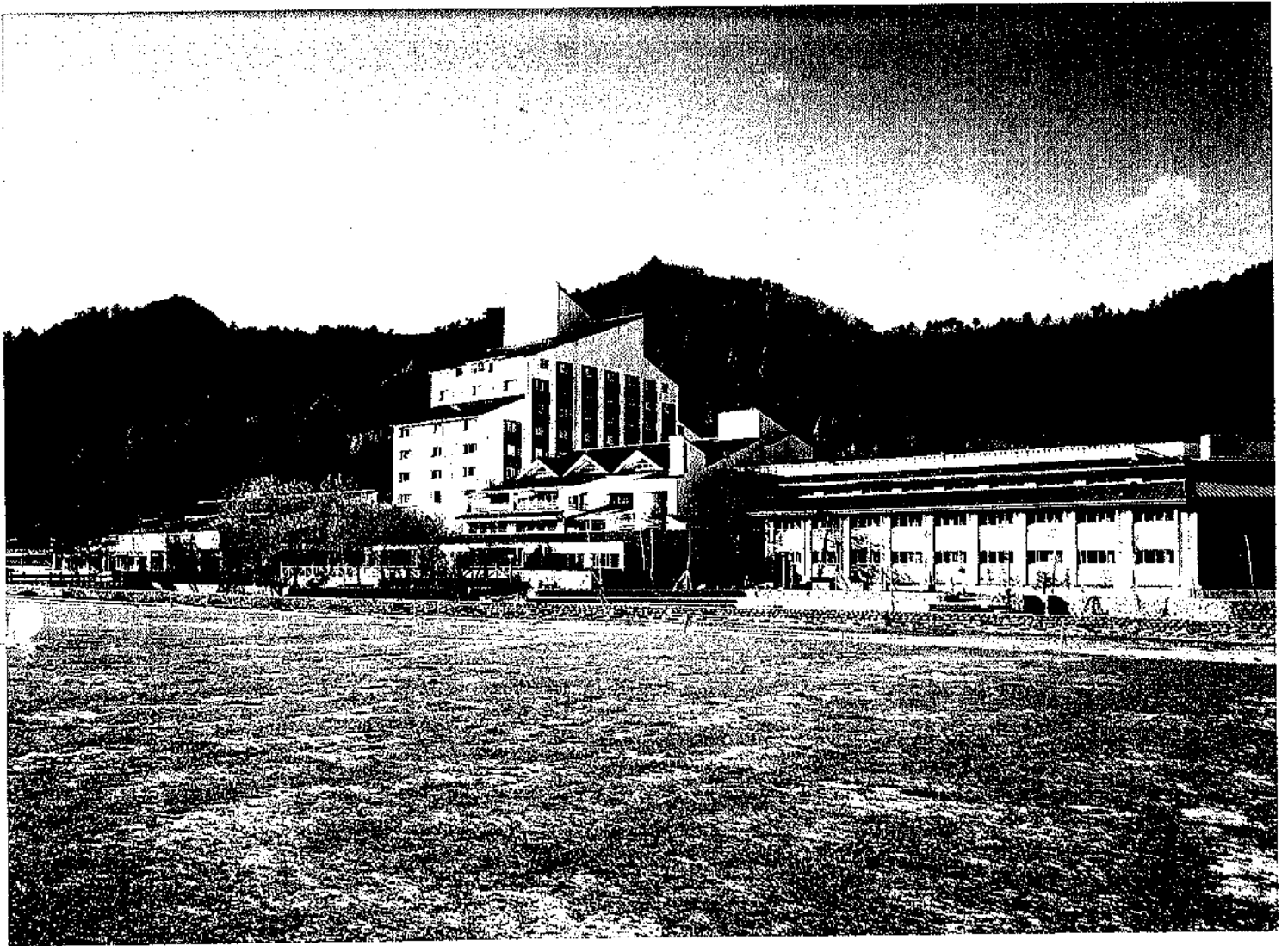
전시회개장 자축연, 이규호장관과 축배를 드는 오웅석회장.



전시회개장직후 병영록에 서명하는 멘도자회장



이규호장관과 멘도자회장의 교환(交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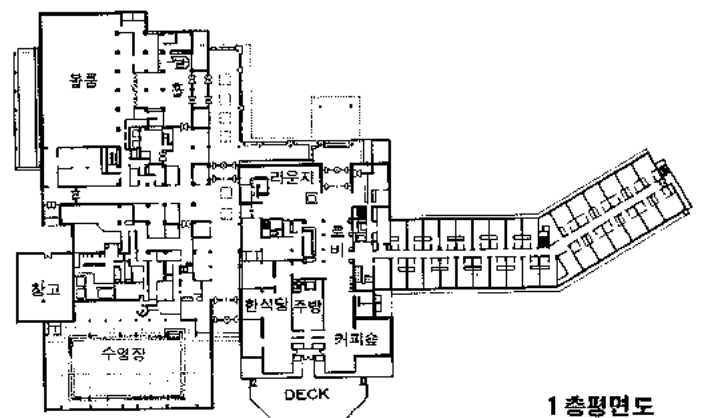


드레곤 벨리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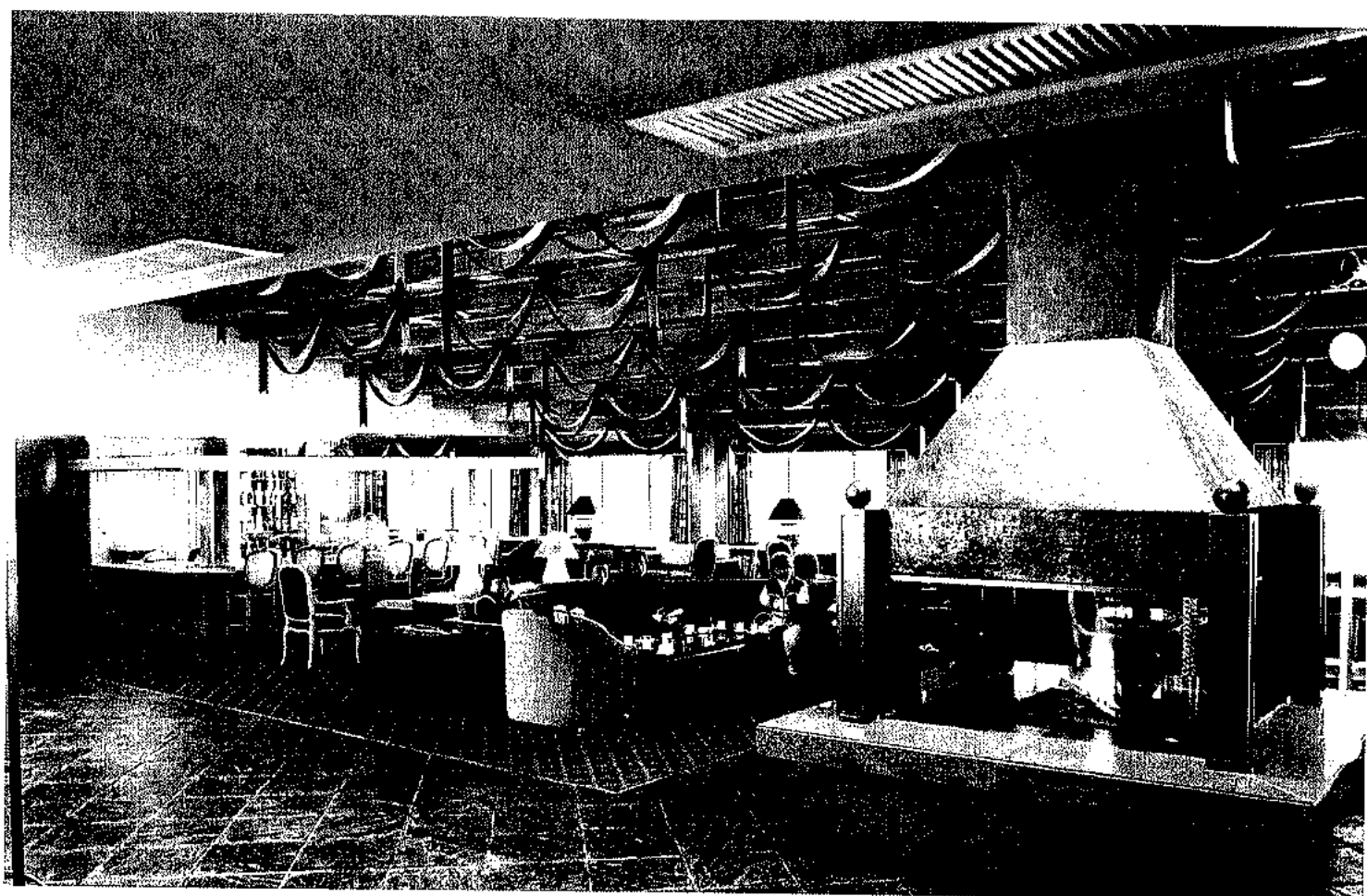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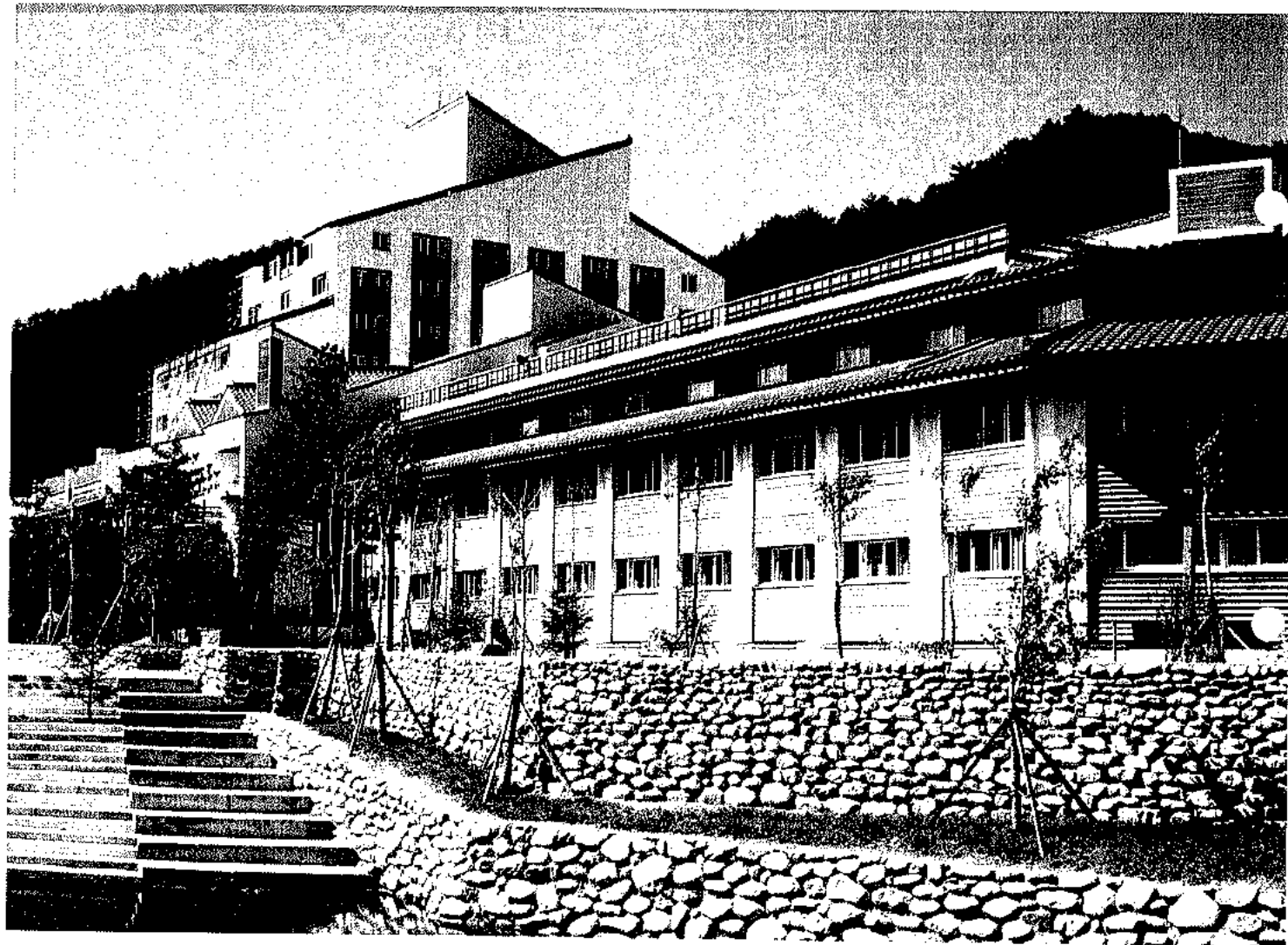
Dragon Valley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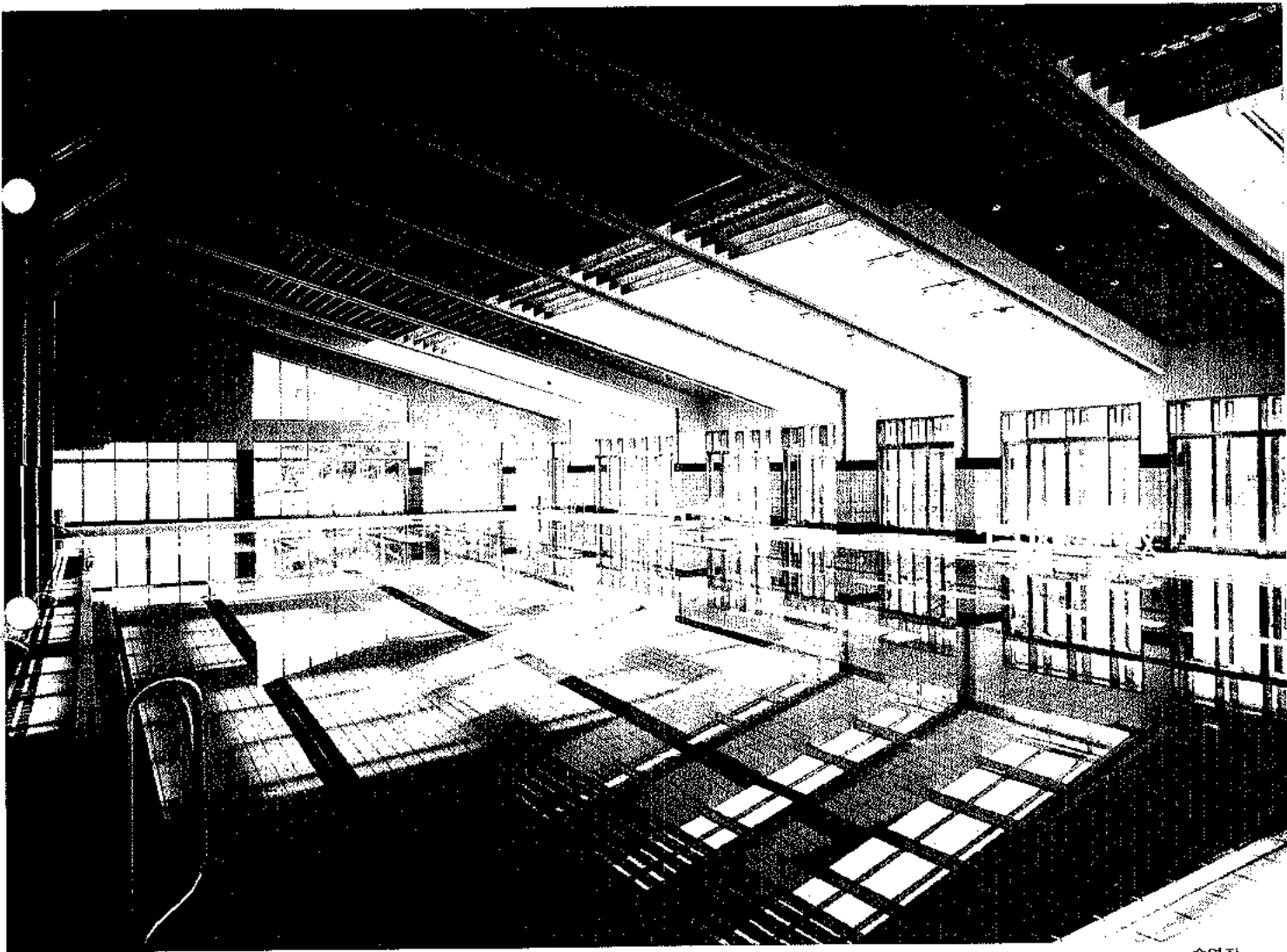
김관욱
Designed by Kim Kwahn Wook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연 면 적 / 25,329.95㎡
 건축면적 / 7,200.50㎡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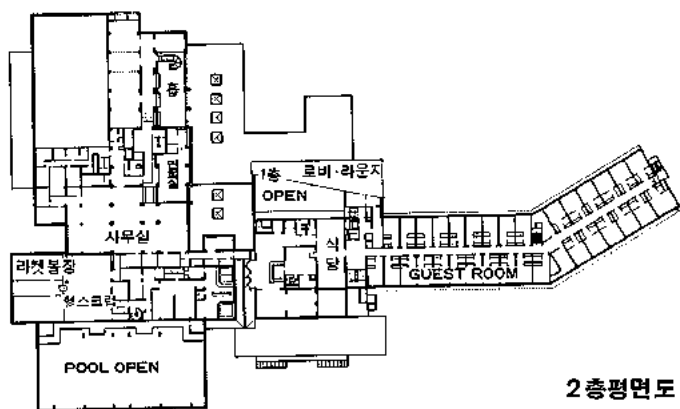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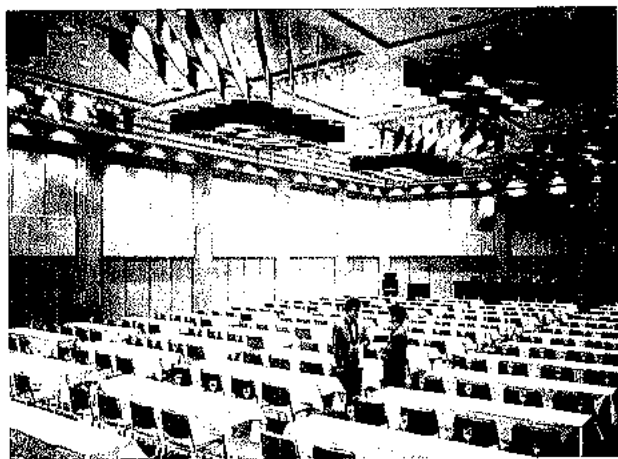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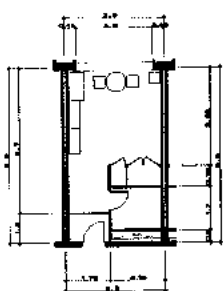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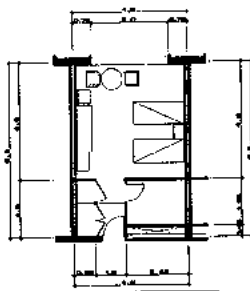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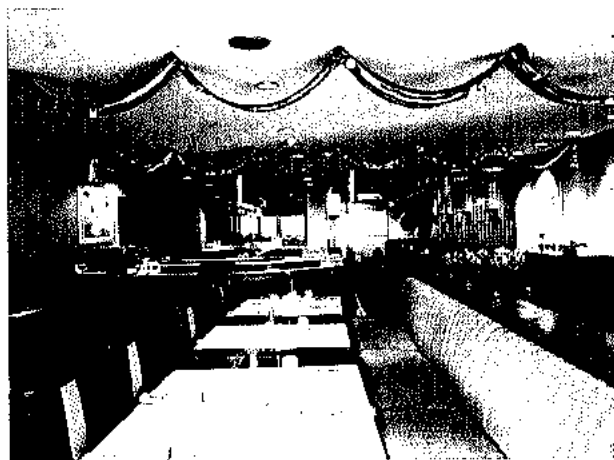
대회의장



한실단위평면도



양실단위평면도





인천송도관광호텔

Songdo Tourist Hotel, Incheon

송기덕

Designed by Song Kee D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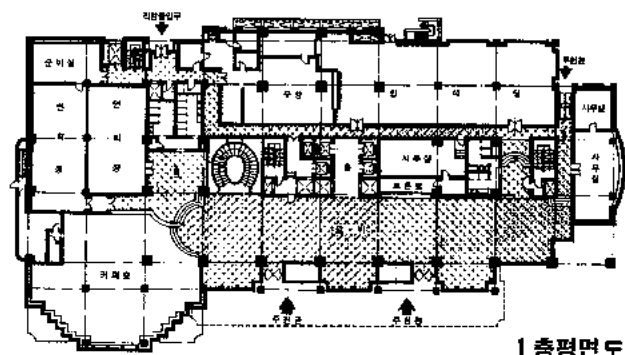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인천 남구 송도 제 1 지구

대지면적 / 11,833㎡

건축면적 / 3,10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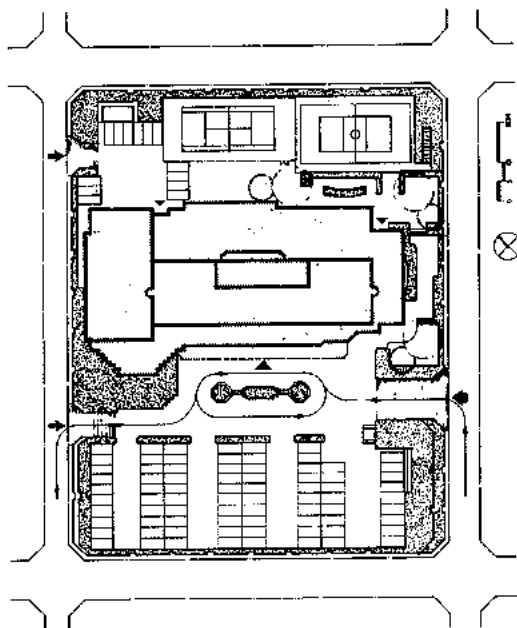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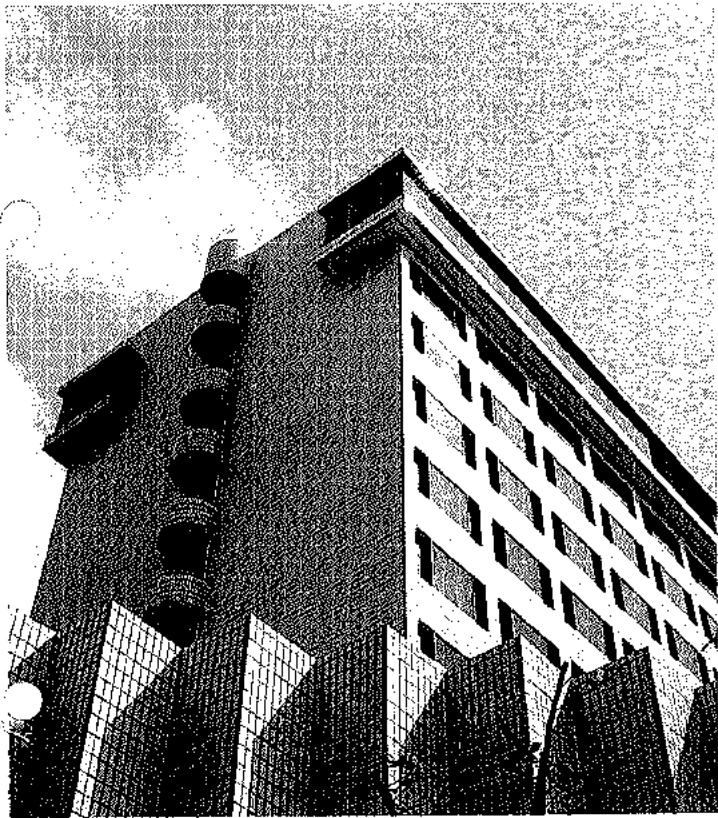
연면적 / 23,026.0㎡

외장재료 / 외장타일, 화강석,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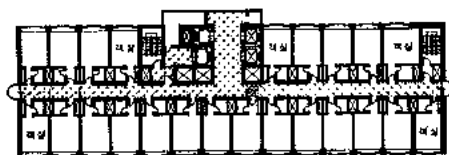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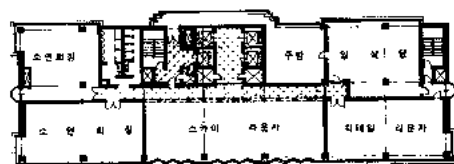
송기덕 /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
용산구/서계동 209/714-7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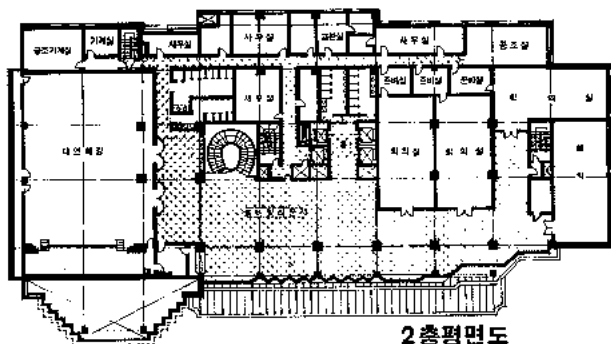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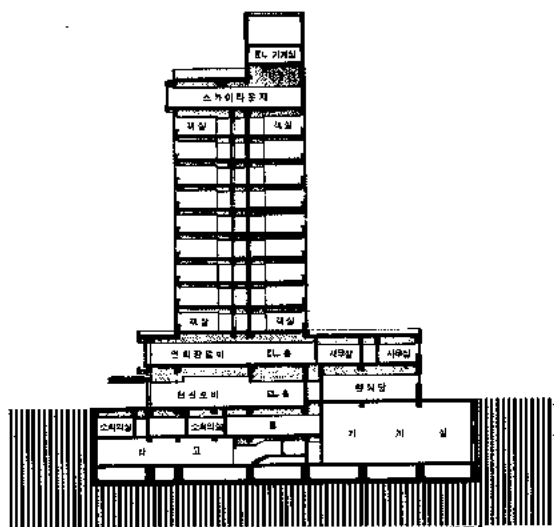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3층평면도



2층평면도



단면도



부곡 로얄호텔 Bugok Royal Hotel

김춘웅

Designed by Kim Choon Woong

대지위치/경남 창원군 부곡면 거문리

대지면적/3,33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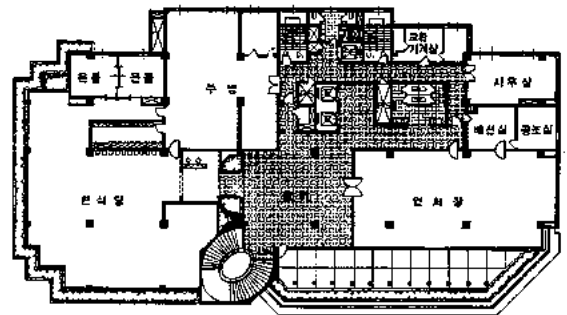
건축면적/1,269.11m²

연면적/13,337.1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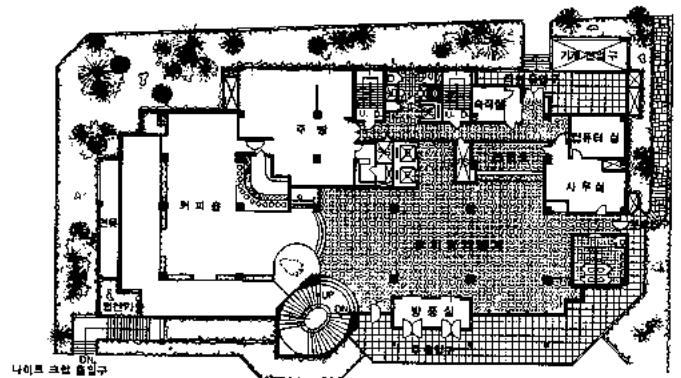
규 모/지하2층 지상10층

구 조/철근 콘크리트라멘조

객 실 수/158실(168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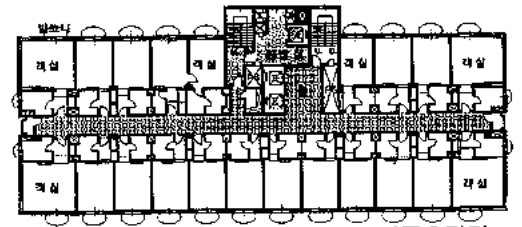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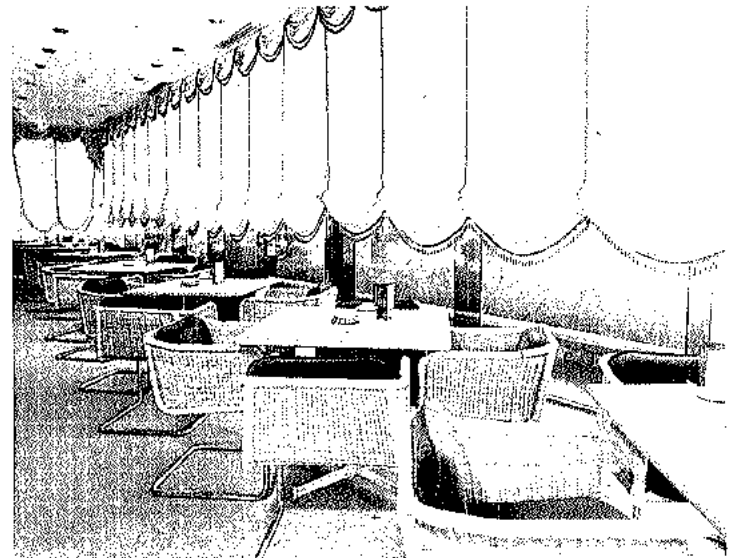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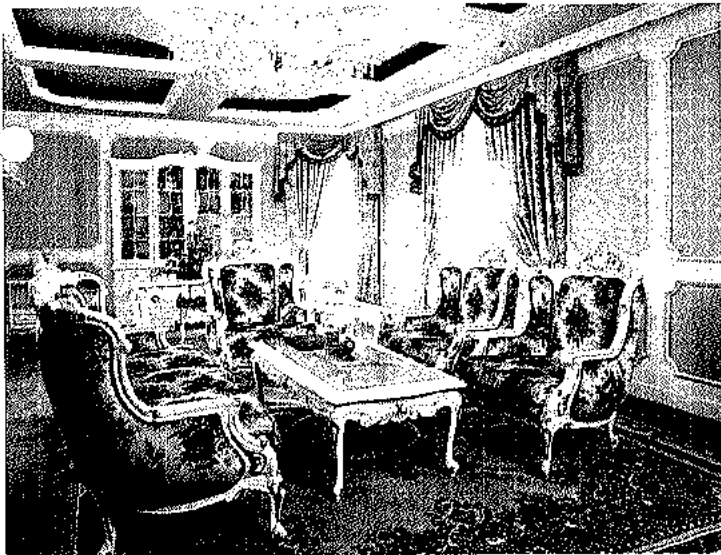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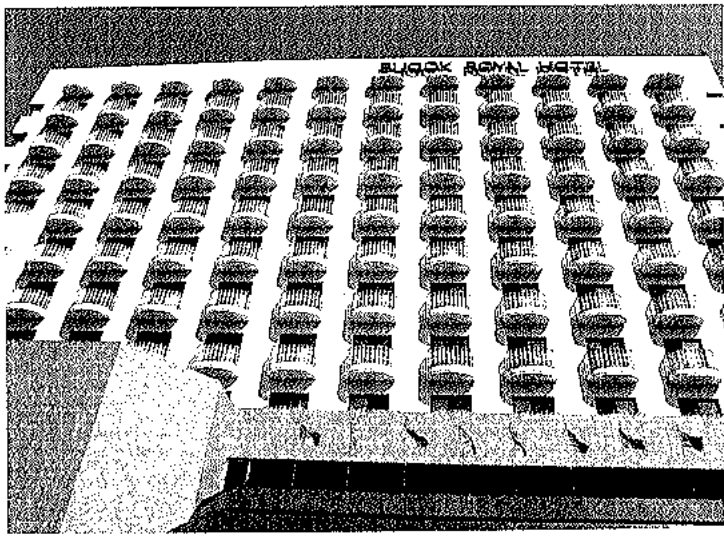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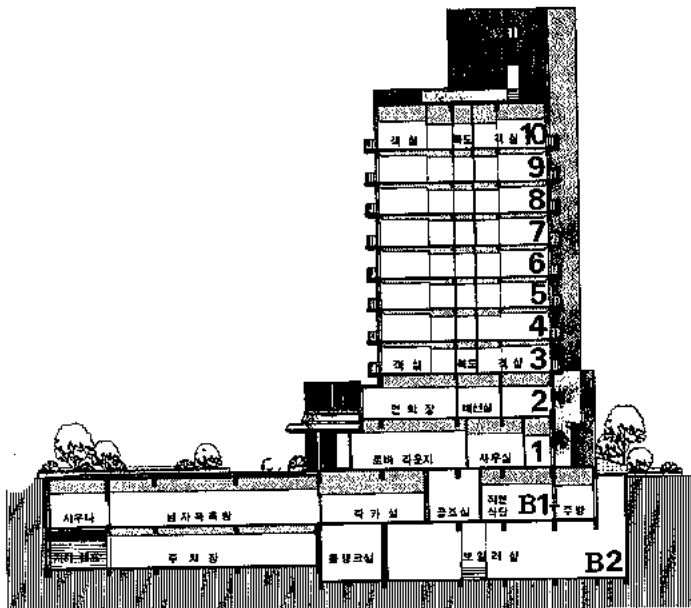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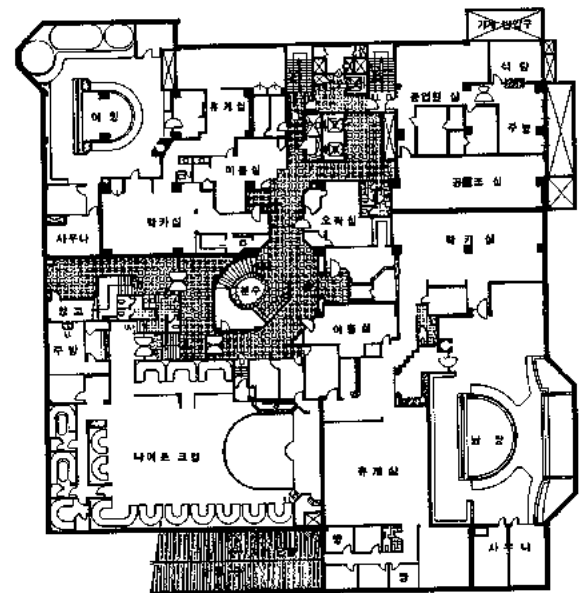
김춘웅/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13/562-9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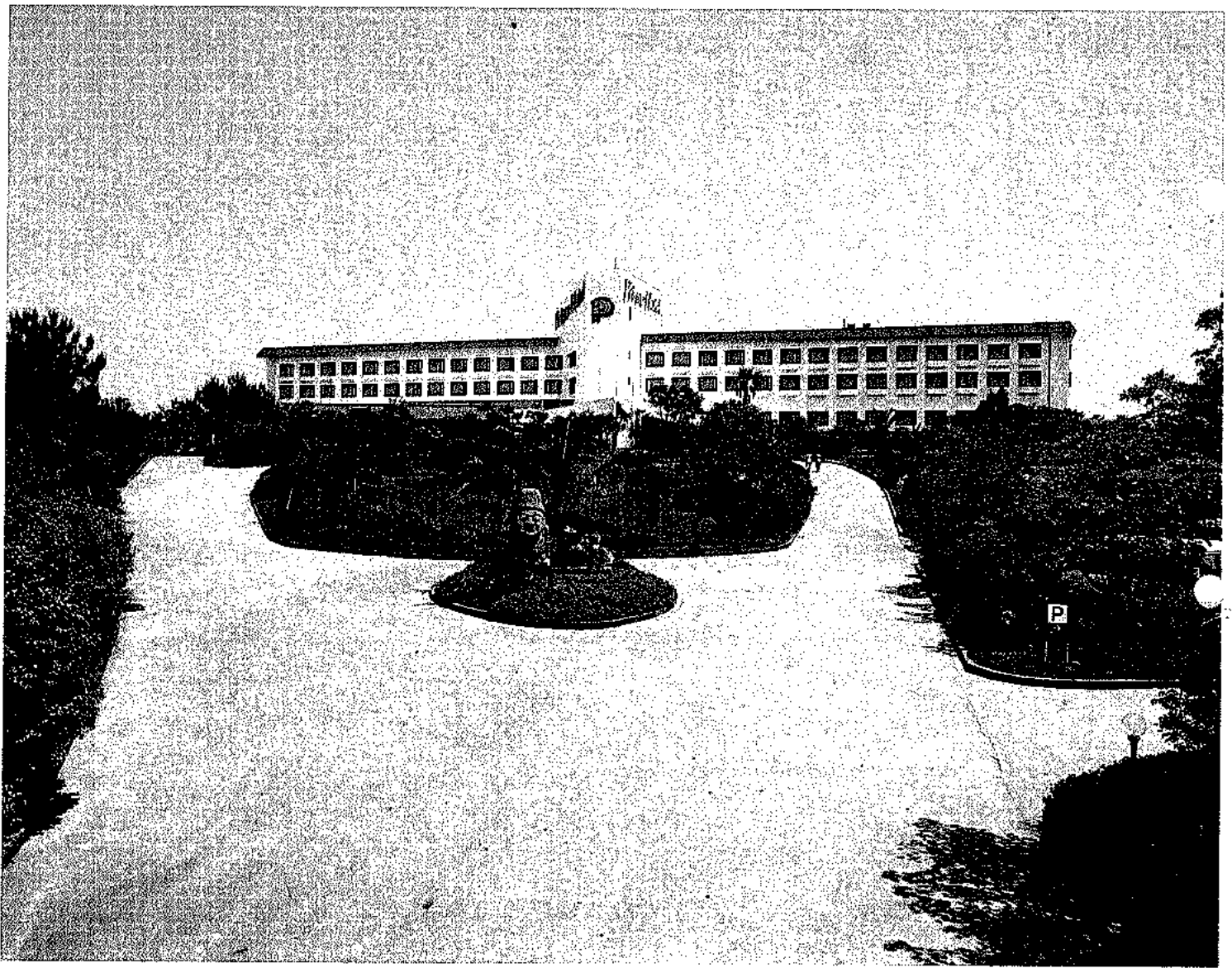
기층층평면도



단면도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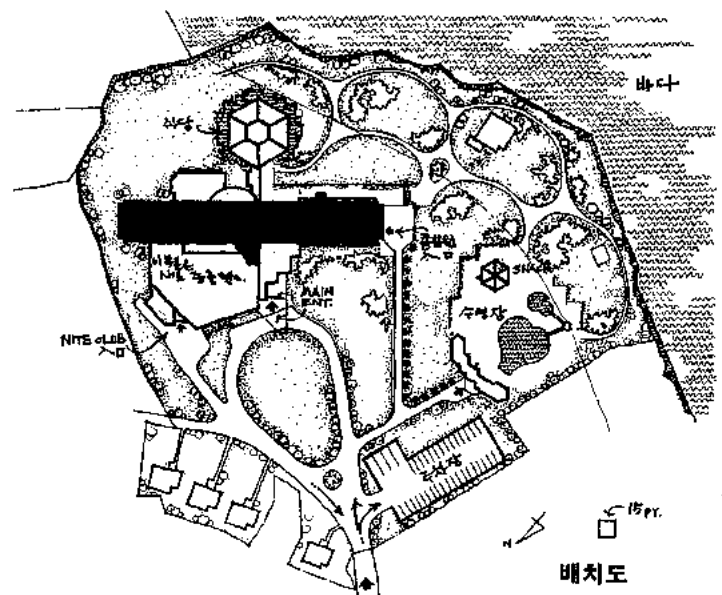


제주 프린스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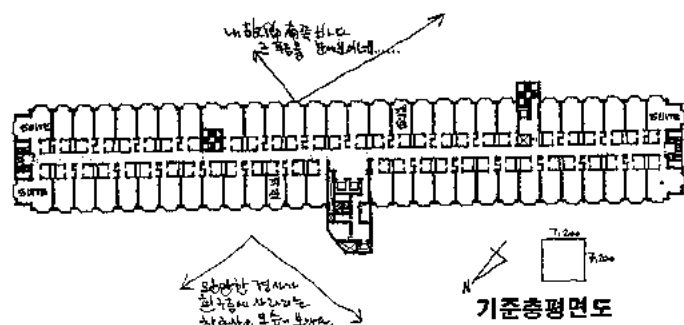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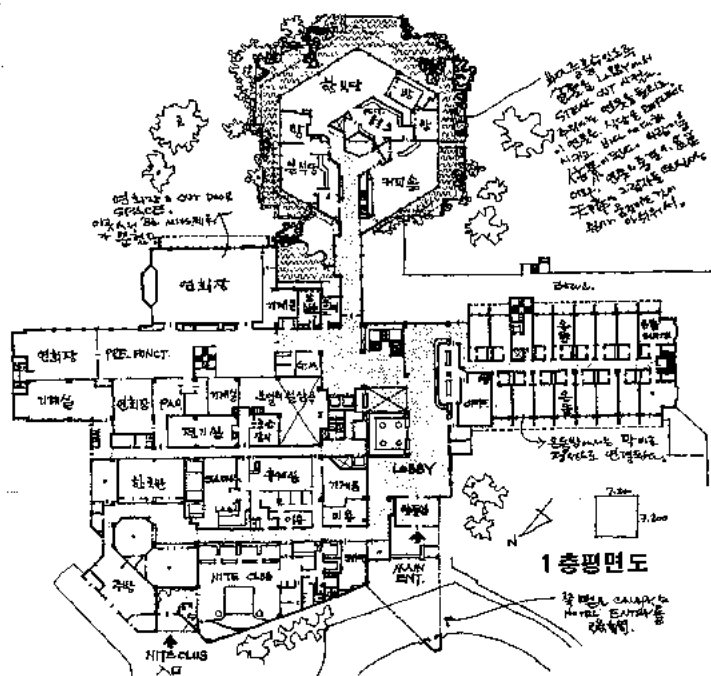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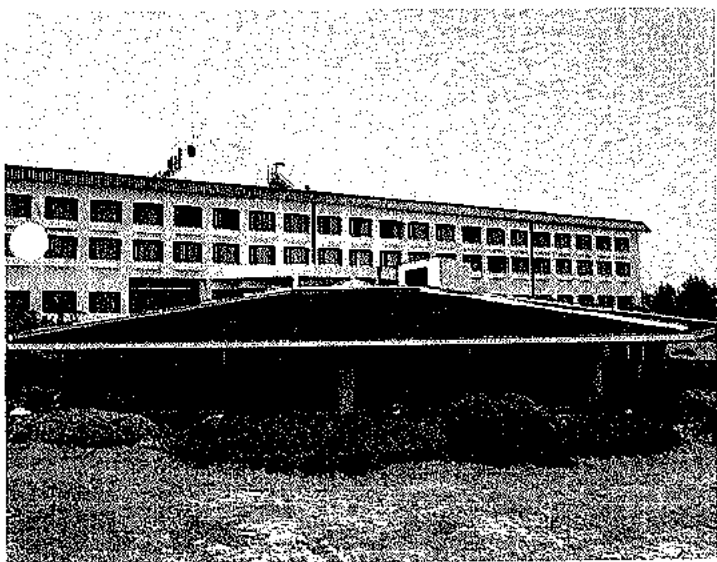
Che-ju Prince Hotel

안병의
Designed by Ahn Byung Ui

대지위치 / 제주도 서귀포
총면적 / 14,907㎡
규모 / 지상 4층, 지하 1층
객실수 / 170실



안병의/종합건축사사무소/항건축/서울 강남구
삼성동 34-9/545-9500





서해호텔

Hotel Free Port

한중언

Designed by Han Chong Un

대지위치 / 제주도 연동 291

대지면적 / 4,546.5 m²

건축면적 / 3,109.9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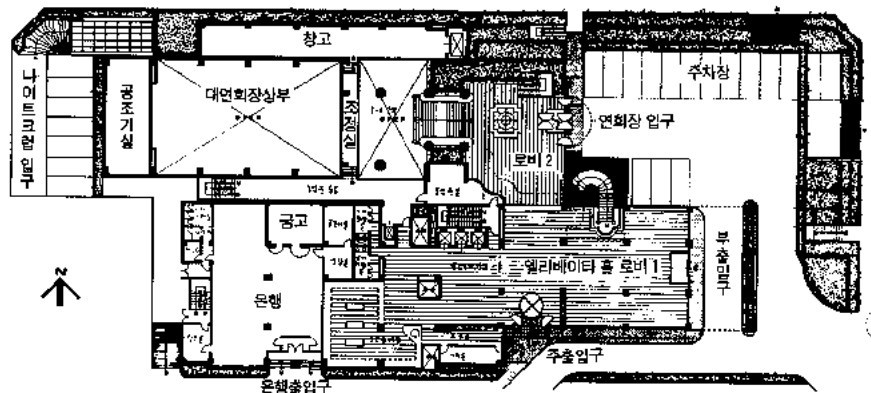
연면적 / 19,382.5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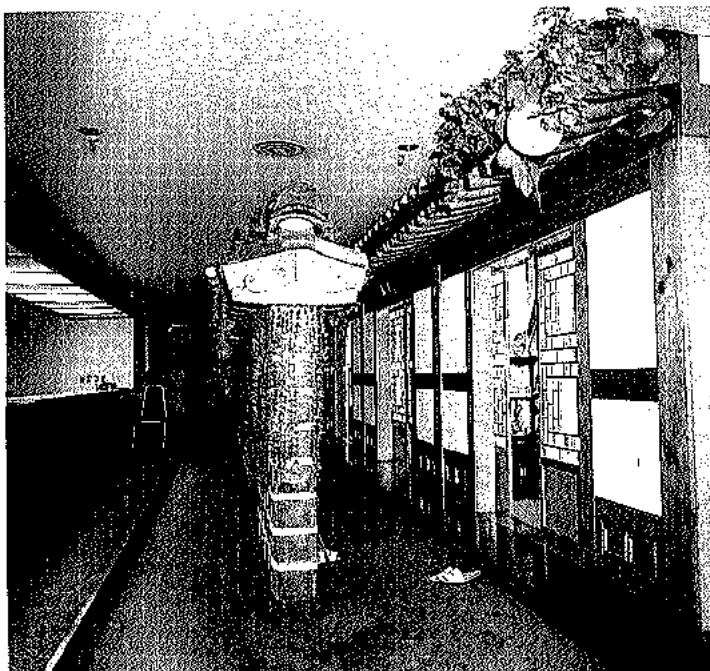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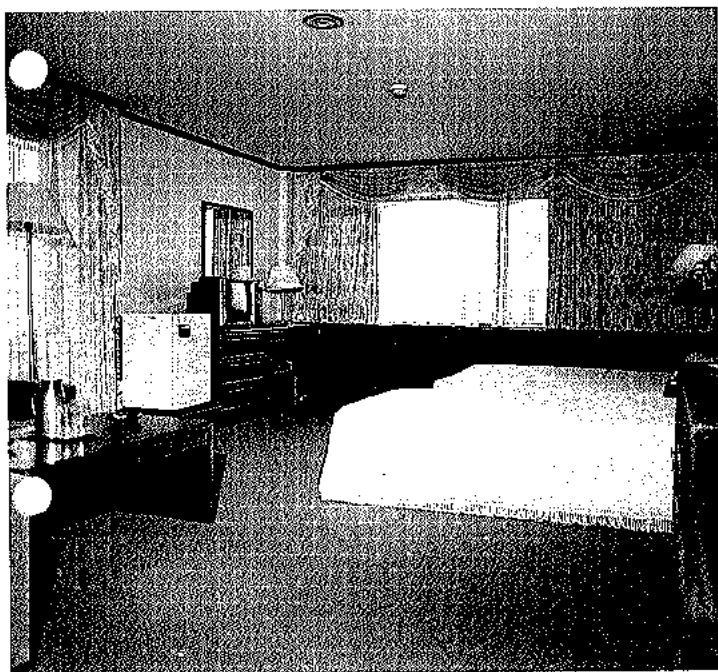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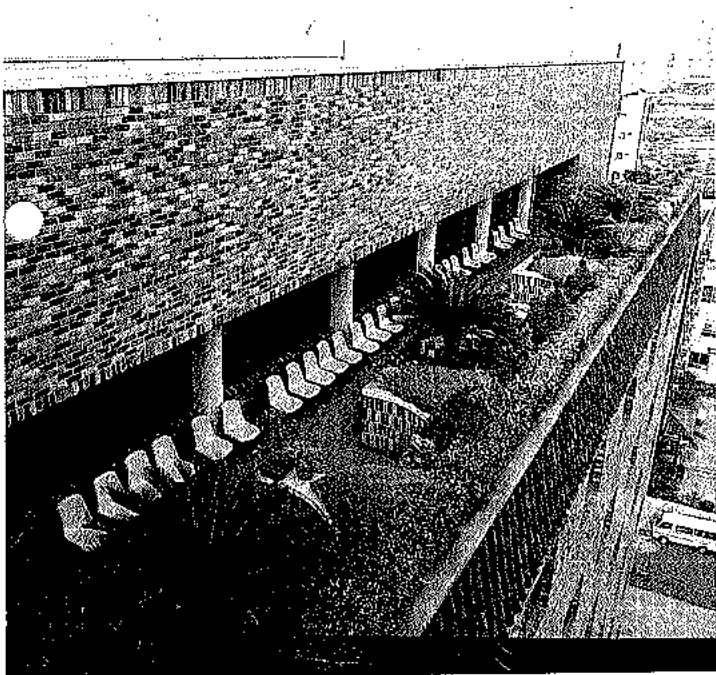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옥탑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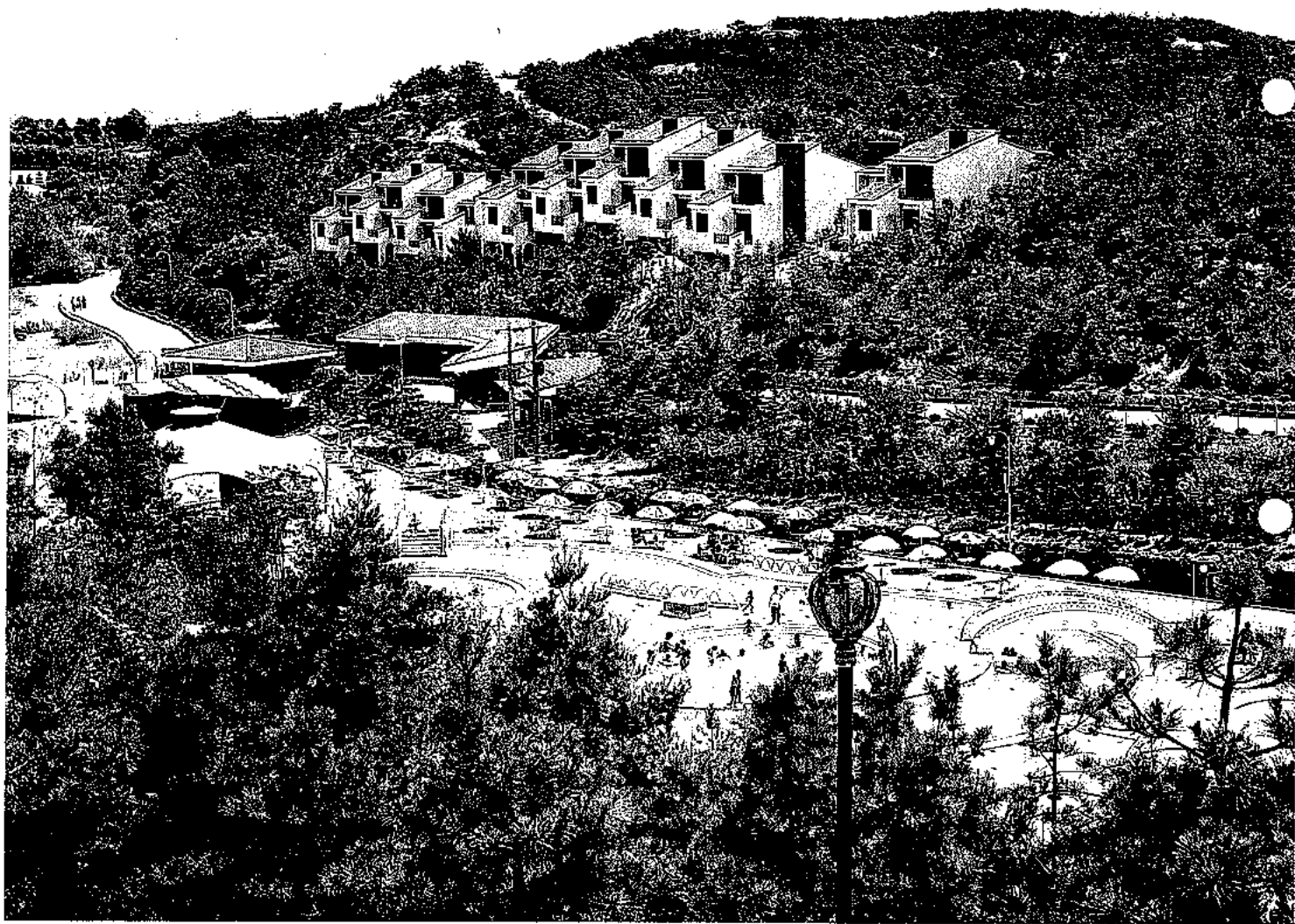
객실수 / 162실

외부마감 / 자기질 외장타일

한중언/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730-9922







영랑호 동방레저콘도

Dong Bang Leisure Condominium
in Yung Nang Lake

서천식

Designed by Suh Chun Sik

대지위치/강원도 속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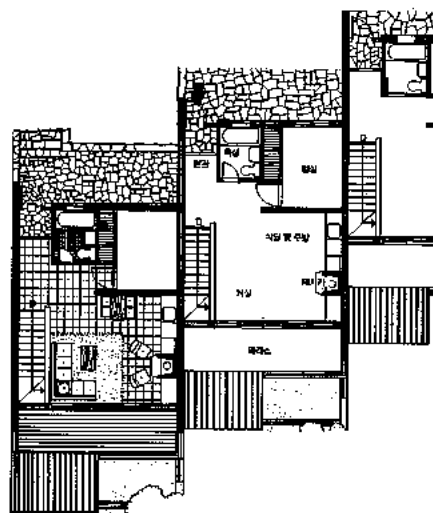
규모/단독콘도A형: 83.7m² (12동)

B형: 68.16m² (28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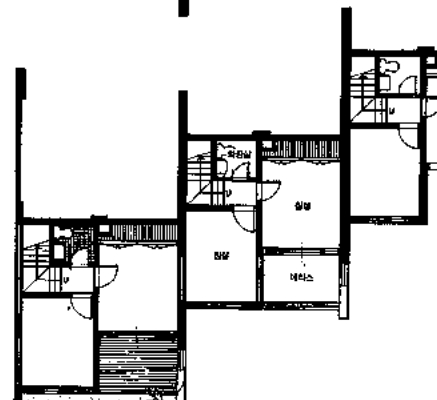
연립형콘도: 85.98m² (19세대)

구조: R.C조

외부마감재료/스페나쉬기와, 변색벽돌차장
쌓기·본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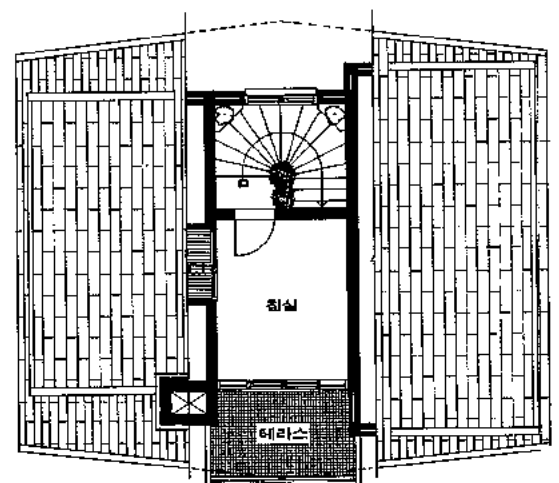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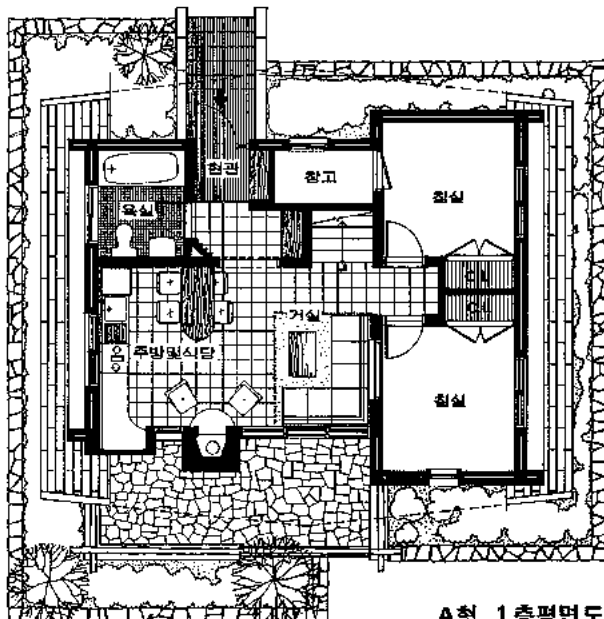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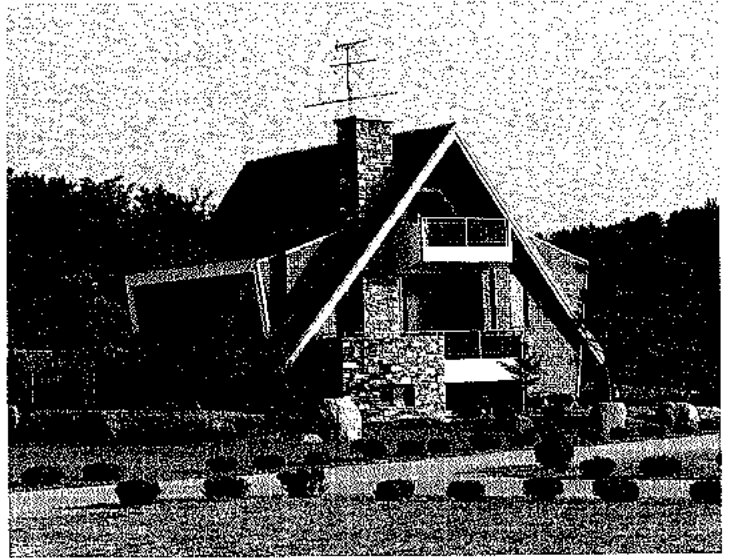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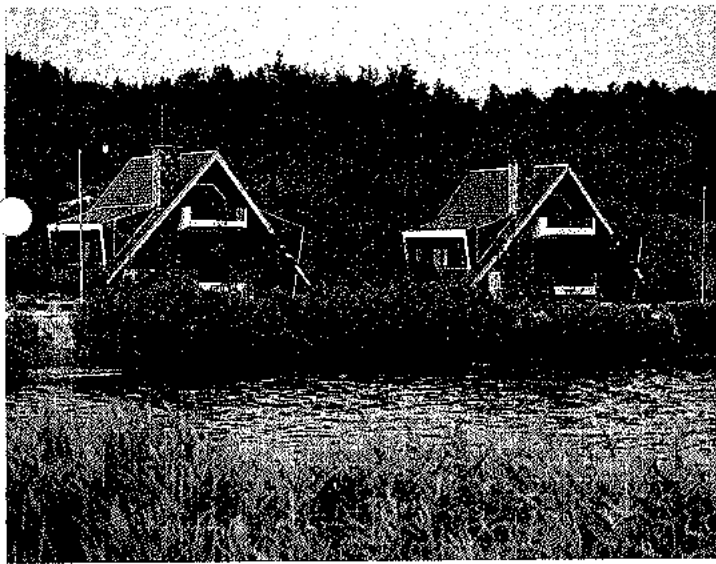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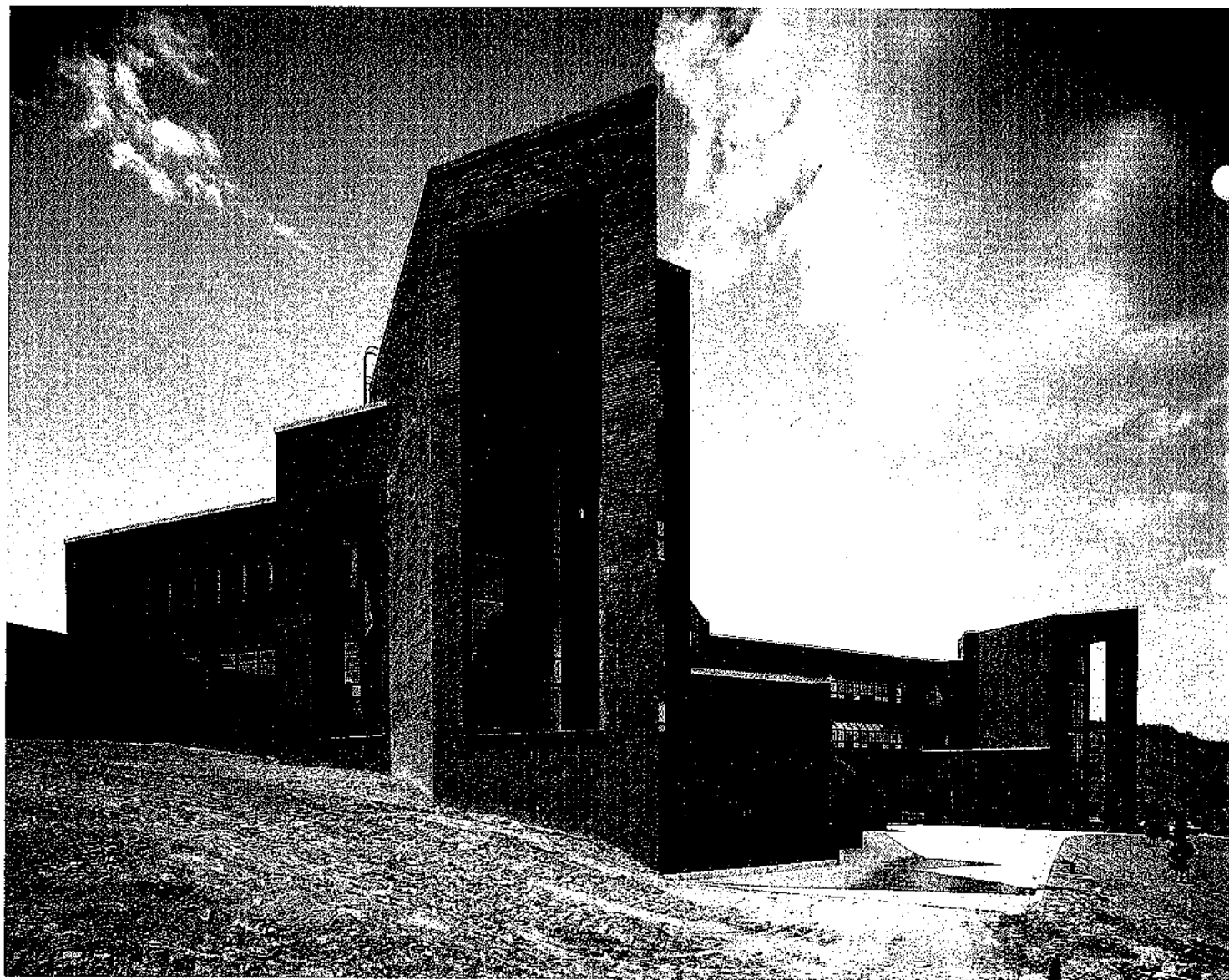
연립형콘도 2층평면도



연립형콘도 1층평면도

서천식/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건축/서울
강남구 논현동 81/549-3100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

Sophie Barat Hall
in Sacred Heart Woman College

강석원

Designed by Kang Suk Won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대지면적 / 244,625 m²

건축면적 / 2,153.95 m²

연 면 적 / 6,902.52 m²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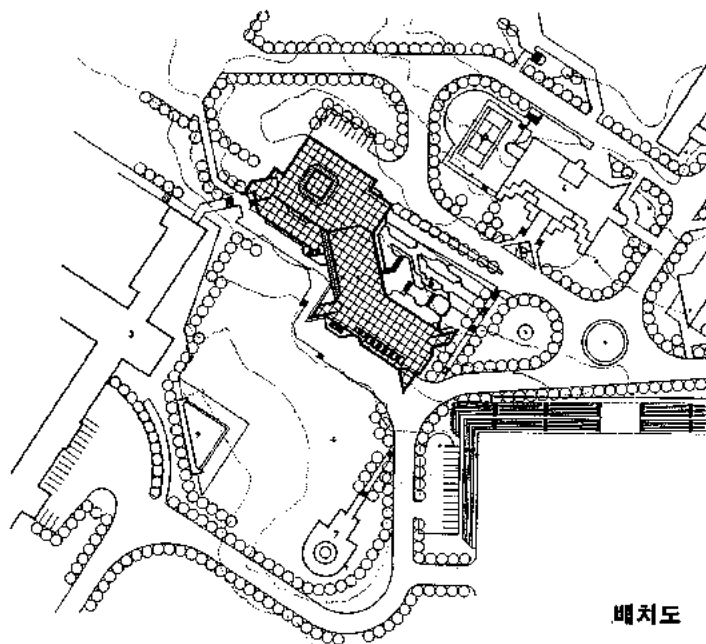
지역·지구 / 주거지역, 풍치지구, 개발제한구역

건 폐 율 / 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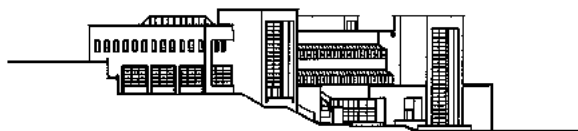
용 적 율 / 12.14%

구조설계 / 이용하(건축사사무소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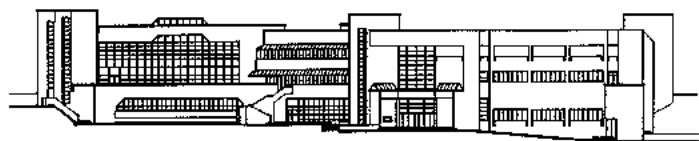
강석원/건축사사무소 구름가/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542/741-3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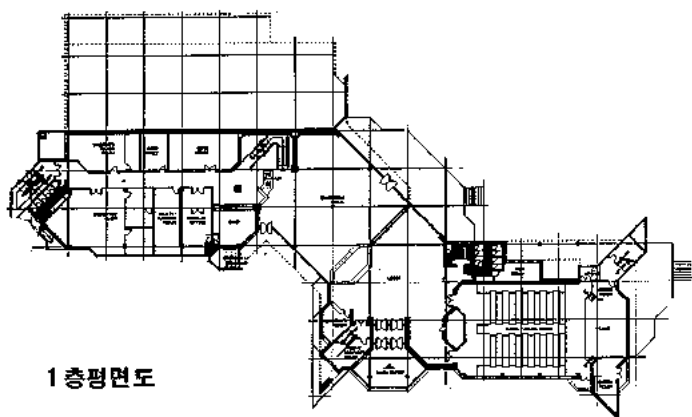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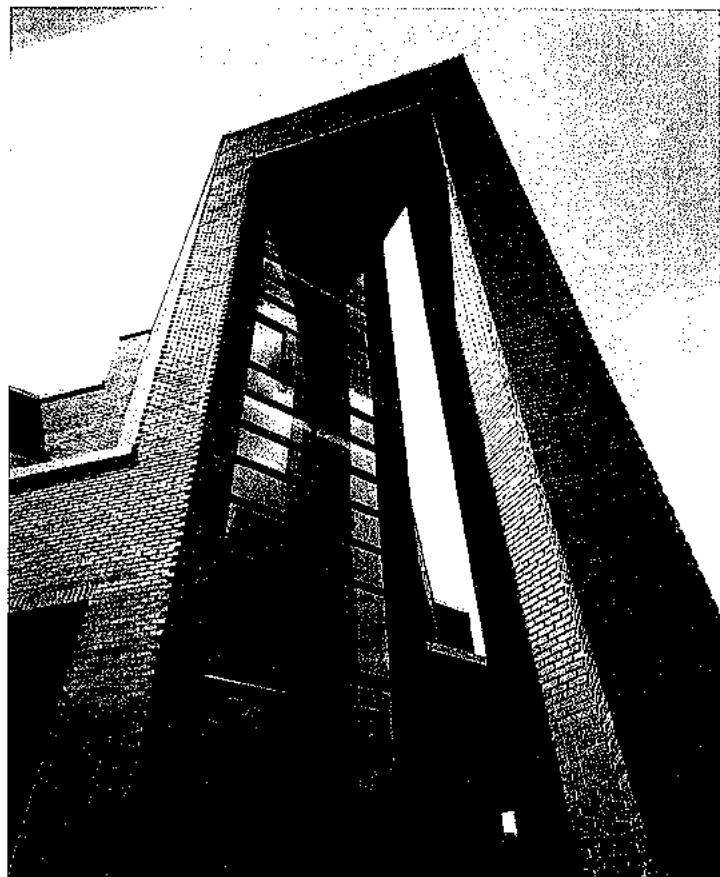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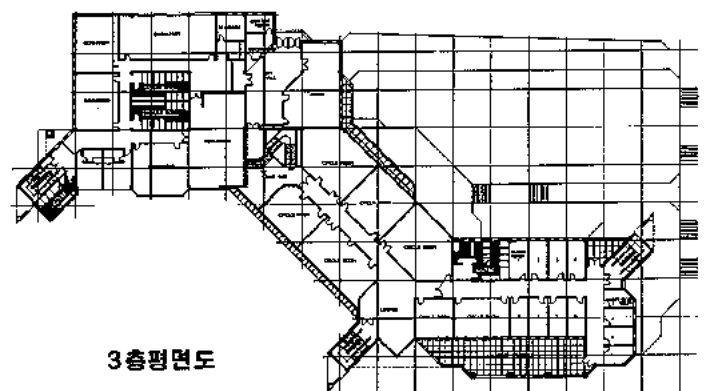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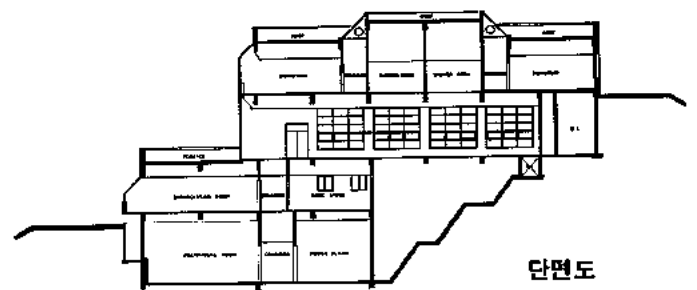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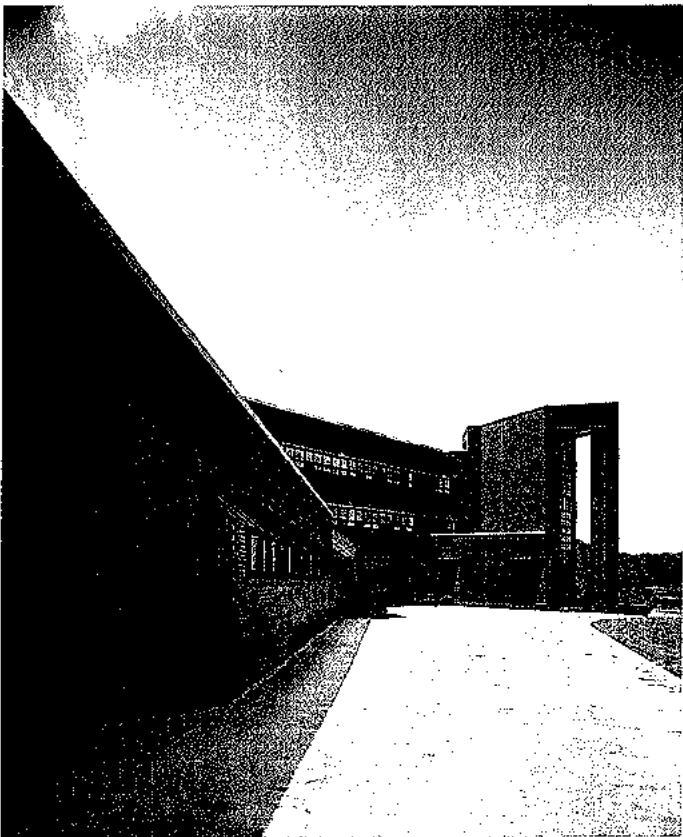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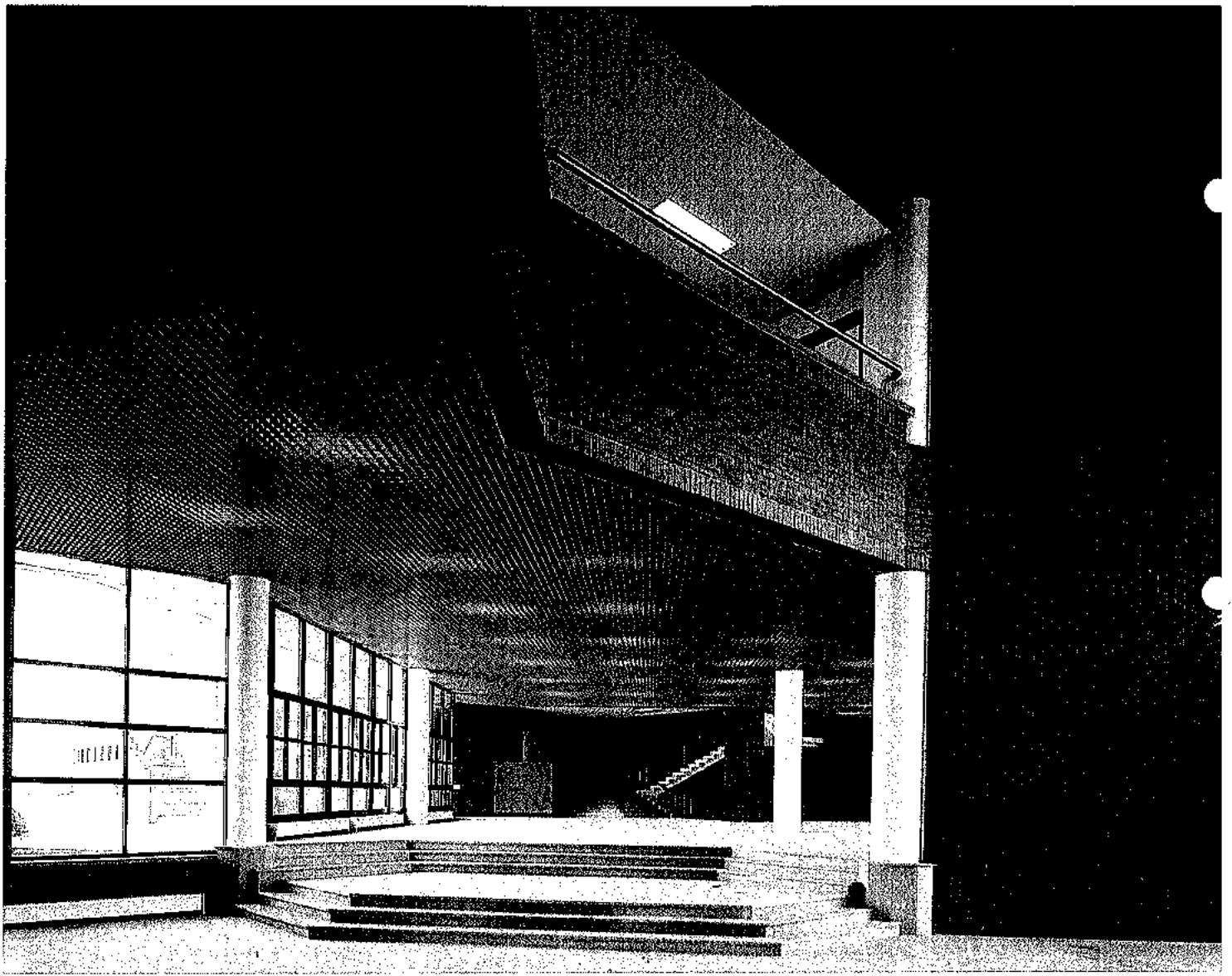


정면도



1층평면도





'86회원건축설계 작품전시회

출품작 공모

본협회에서는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도 동 전시회 개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하오니 다음을 참작 적극 출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출품요령

1983년부터 1986년 7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2. 제작요령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유리, 스티로폼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1 작품당 3 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도면·설계개요·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작품명, 사무소명·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패널은 9월 2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 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 수 상 (2) 협회장상
장 려 상 (6) 협회장상

■ 기타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논문부문 시상대상은 회지에 게재된 회원집필논문에 한함.
3. 제출처 및 문의처
본협회 출판사업부, 기술부
(581-5711, 5712, 5713, 5714)

※ 패널제작시 패널에 부착하는 사진은 지방순회전시 도중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할 것.

※ 작품집 제작에 쓰이는 자료는 작품집 발간후 반환하며 필히 흑백으로 제출할 것.

건축관계 법에 관한 좌담회



일 시 : 1986. 5. 6 (화) 14:00

장 소 : 본협회 대회의실

참석자 : 김기수 (본협회 부회장)
김재우 (법규위원회 위원장)
강석준 (강석준건축사사무소)
권태정 (법규위원회 위원)

배종명 (건설부 건축과장)
장동찬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최창규 (건축사사무소 신진)
한정섭 (단국대학교 교수)
한진택 (법규위원회 위원)

Table Talk

On the Laws and Ordinances of Architecture

사무처장 : 지금부터 건축관계법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을 대신하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수 : 협회 부회장입니다.

오웅석 회장께서 이태리 해외출장중이어서 본인이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오늘의 이 좌담회에 참석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령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리며 특히 저희 건축 관계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부의 주무 과장님이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것은 현실적으로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큰 기대로 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의 성격은 저희들 건축사 개개인이나 또는 협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관계에 관련된 여러가지 분야 즉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분야등 모든 건축분야에 관련되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어떻게 하면 멋지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것을 서로 기탄 없이 의논을 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이나라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행정의 발전 그리고 건축사 개개인의 건축업무를 함에 있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실효있는 제도 마련의 방향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자리가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좌담회가 되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 법규위원회 위원장 김재우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는 창립 후 20여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상 각 분과별 연구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오회장님이 협회를 맡으신 이후 현재까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법규위원회에서도 수차 건축 관계법에 관한 토론이 있었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협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심사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장 동찬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은 1962년도에, 건축사법은 1963년도에 제정 공포되어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해 볼때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에 관계되는 법률 현 시대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연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축관계법이 현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좋은 개정안으로 구상되어 당국에 협조와 건의를 통해 개정됨으로써 건축사의 지위향상과 건축문화의 창달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법규위원회에서 그간 다루어 왔던 것을 말씀드리면,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 되어야 하며, 또 일조권, 대지인의 공지 등은 현재와 같이 전국을 함께 묶어두기 보다는 지역 실정이나 여러조건에 맞추어서 다소 융통성있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겠으며, 위반 건축물이 매년 발생되고 이를 조치 하고 시정을 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없는지?

지체부자유지도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이 되어야 하겠으며 건축사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으나, 건축문화의 창달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행위자인 건축주, 시공자 보다는 지도만을 하고 있는 공사감리자에게 가혹한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초래하는데 대한 개선점, 건축사 시험제도의 이원화 문제, 단독사무소와 종합사무소에 대한 문제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에 87년 7월 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조각·회화등이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런지?

저희 협회 차원에서 시급히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적 추세로 보아서 외국 건축사들이 우리나라 건축설계 용역을 맡는 것이 확대될 지언정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국 건축사 보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법적,



김기수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축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선을 돌려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좌담회를 통해서 법 개정에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창규 : 오늘 이 모임이 좌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여태까지 생각했던 법에대한 생각 이런것을 피력하는 것이 좋을상입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인 법에대한 우리들의 자세라할까 전해보부터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법은 물론 입법의 정신과 취지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 하고 모범이라 하겠쥬. 그리고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데는 모범의 법조항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수많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세칙, 조례로부터 많은 편법이 나와서 시행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고 파악하는데 편리하게끔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때 우리사회가 너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법이다, 사회질서나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덕, 윤리, 상식의 최하의 선을 그어 놓은 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범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느 전문분야에 국한된 법을 얘기할 때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가 여기에 또 따라오게 됩니다. 수많은 법이 제정, 개정 되었고 또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천에따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감독기관 즉 정부가



김재우

행정관리를 하게되고 감독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범조문에대한 유권적 해석문제도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일반의 전반적인 법이라면 몰라도 그 법이 전문분야에 관계되는 법이라할진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유권적해석을 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선되지 못하고 감독기관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이 지금 우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전문법이라는 데서 약간 애로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전문분야 사람이 내린 해석이 반드시 옳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절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이 건축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가령 여기서 법대로 한다면 현재에 있는 모든 건축을 엄격히 따진다면 위법 건축물이 아닌 것이 거의없을 것입니다. 가령 자로 재봐서 1~2cm가 틀려도 이것은 법 조문상 해석으로는 위법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위법으로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전문분야의 법에 하나의 신축성같은 것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극단한 예인데 건축법이나 건축사법, 기타 여러가지 우리에게 관계되는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이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관계되는 행정이나 통제나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쥬. 그러나 관련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느낌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분야에 관계되는 법령이나 조례나 모든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포됐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언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위법일까 탈법일까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예를보면 언덕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마구들어 섰습니다. 몇년이 지나 이것이 완전히 슬럼화되면 정부는 이것을 양성화해 버립니다. 그럼 법에는 그것을 양성화 하라는 법은 없는데 과거에 있던 법앞에 “특”자나 “특별”자만 붙이면 가능한 애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할때 법의 존엄성이라할까 법의 공정성이라할까 이런것이 오히려 저하 되거나 않을까 가끔 느껴본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과연 그러면 건축법을 누가 위반했느냐? 건축주, 시공자, 아니면 건축사가 위반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건축사가 위반했다고 봅니다. 왜냐? 다른 분들은 건축법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다만 설계 한건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이 법의 이면을 이용해서 탈법을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나왔으니까 바로 위법의 동기는 건축사들에게 있지않느냐. 정말 냉정히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지만 사회에선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인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란 국민대중이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자동적으로 대우하고 부르는 호칭같은 것이 사회적 지위이지 우리가 무슨 장관국회의원처럼 대우해달라! 요구에 뵈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얘기지 일반국민들이나 관에다가 얘기할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있고 실력있는 건축사라면 일반대중이나 건축주들은 우리를 존경할 것이고 우리한테 부탁을 할 것입니다.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도 그저 통제, 규제 일변도로 만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들어 낸 것이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하겠을까. 그래서 전 우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이 반성해야 하겠고 법이야 약법이든 선법이든 일단 공포되면 꼭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다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약법이다 인정될 때 여기서 오늘같은 이런모임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새로 제정한다든지 해야겠습니다. 법원론에는 법규정이 엄격하다고 해서 처벌이 엄격하다고해서 범죄가 근절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따라올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문제지 완전히 범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슬기롭게 이것을 어떻게 잘해나가는냐? 하물며 우리 전문분야에 관계된 법일진대 전문적인 입장에서 모みを 살피면 해결할 수 있을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해서 자기일이 혹은 판에대한 감정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해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적에 여기서 모순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발견되면 먹고 살아가야되고 일일해야 하겠으니 탈법을 생각하게된다 이것입니다. 탈법을 생각하게되면 건축주는 이익만 추구되면 언제든지 건축사가 가르쳐준 탈법을 서슴치않고 한다. 여기서 위법건축물이 나온다 하는 애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우리사회에 많이 생겨났을적에 무슨 건축사만의 발전이니 건축문화의 창달이니 이것은 허울 좋은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에 하나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국제수준이라는 어떤 막연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주 거기다가 비교하고, 대응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사회의 수준과 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제수준의 개념에 생각한다면 과연 한국사회에 건축사가 진정한 건축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문제가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수준은 우리사회의 선에맞는 분에맞는 하나의 수준을 그어놓고 정규건축과 4년을 졸업하고 기사자격수첩을 취득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력을 가지고 면허를 얻었다면 건축사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제수준이라는 막연한 숫자가 있어서 거기에 미달되지 못하니까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 OO같은 부류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축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사회에 알맞는 수준하에서 우리는 이사회에서 뚜렷한 건축사임에 틀림없고 뚜렷한 건축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것을 우리자신이 포기할 때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는 법의 하나의 해석문제라든가 이럴 때 여기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가까운 시일내 저작권 법이라는 것이 제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기회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나? 작가에게 있다. 몇년가지고 있느냐? 죽어서 50년이나 90년이나 혹은 영원히냐! 이것이 굉장히 논의됐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건축주나 상업주의자에게 단 1회에 한한 사용권을 주는것 뿐이지 저작권은 영원히 작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작권 속에는 인격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팔래도 팔 수 없고 살래도 살수 없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년까지 해 가지고 가령 출판업제라든가 건설업자들이 그 저작권을 주장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된다. 해가지고 저작권은 몇년 시한을 붙이자 하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로마의 베드로사원 옆에 있는 그 원형주랑이 베르리나가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죽은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누가 거기에다가 이것은 내작품이다, 이것은 저작권 베르리나가 죽었으니까 이탈리아기에 소관된다. 이런 소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베르리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말하는 저작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잘못 이해해서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에서 저작권이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상설계 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현상설계에서 발주자 즉 건축주측에서 출품된 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이것이 상식밖의 일입니다. 왜 반환치 않는 겁니까? 다음에 당선작품에게 상금을 주었으니까 설계비를 못주겠다. 상금과 설계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웃기는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서 건축법이니 건축사법이니 기타 관련되는 법률 우리법규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비중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화를하면

사회변천에 따라서 우리수준에 맞고 우리 시각에 맞는 것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또 집행되는 주위에서도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하는 수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들면 중간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재보니가 5cm가 틀리다. 강력히 얘기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이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좋다 봐주겠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본다면 위법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권이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명확히 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법이든지 시행령이든지 시행규칙이든지 조례가 결국 수처나 도표로 안되어 있는한 문장으로 되어있읍니다. 문장으로 되어있으면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권적 해석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학적인 "뉴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여기서 위법 이라하면 건축적인 부조리 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다급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공무원은 위법이나 했을 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것이 오히려 법을 정확히 만들고 신축성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조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 둘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사는 하나의 대행기관이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하나의 대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허가를 득하기위하여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리를 해야하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하고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3인연서 제도가 있었읍니다. 어느 일정 건축사가 설계한 도면을 같은 수준하에서 다른 건축사가 일일이 도서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왔다. 그래서 결렸다. 그래서 3사람이 법면건축사가 나왔다는것 입니다. 그러면 시건축과에서 보고되는 보고서에서 서울시에 1300명 건축사중에 700여명이 법면건축사라는것이 신문에 나오면 일반국민이 무엇이라 하겠읍니까? 건축사란 범법을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구나!



최창규

여기서 무슨 사회적 지위나 대접을 우리가 바라겠읍니까? 안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정규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지방장관의 사무실 허가를 얻어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땀는데 왜 면적얼마 이상은 세사람이하라 얼마 이하는 누가해라 이 기준이 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편리라고 보아잡니다. 예산이 없고 사람이 적고 일은 많고 하나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같은 분야니까 우리 나눠서하자! 이런 부분은 너희가 맡아서 하라! 거저 하라는것이 아니다! 감리비를 받아라! 이런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때문에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얼마나 다진줄 아십니까? 법규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통계를 잡아 보십시오 저는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기존것보다도 좋게 한다는 의식이 없으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야겠다는 전제가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좌담회를 통하여 반성하며 연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완전무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건축자체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시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따라가면서 계속 고치고 시도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이런 모임을 가진 이유도 이런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얘기를 나누면 이 기회를 통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중명

김재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국민과 건축사의 교량적 입장에서 애쓰시는 건설부 건축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배중명: 건축법이란 사람의 수는 지꾸 늘어나고 대지는 좁고 집은 크게 짓고 싶고, 따라서 이 좁은 공간의 도시에 집만 가득 차게 된다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니까 이를 어느 정도 규제해서 적절하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마 건축법의 기본인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의 규제는 아무나 집을 지을 수 있게하여 집이 무너졌을때 비특정 다수인이 위해를 입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건축시험의 취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학을 나왔으면 설계를 해도 좋은 거지요. 또 대학을 안나와도 설계를 하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은 집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국가 전체의 부(富)라고 할까요? 이것이 적절히 쓰여지기 위해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 감리를 하게 하여 건축물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건축시험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교를 많이 해 봅니다. 의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하나의 직업이고 건축사는 비특정 다수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나 건축사나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인대비해 솔직한 심정으로 의사만큼 사회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건축주보다, 바꿔 말해서, 환자보다는 의사가 더 의학지식이 많고 앞서가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 점에 대해 스스로 능력을 쌓아서 그 분들은 돌아갈 때까지 선생님이란 칭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라든가 건축물의 창조 자체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열 사람이 잘해도 한 두 사람이 잘못하면 그 전체의 수준 자체가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선 스스로 자기의 가치 창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건축사 면허를 주었을 때에는 규모의 제한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도 의료면허를 의사면허로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수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합과 단독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일정 수준 이상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로 건축사의 면허를 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확보한 건축사 사무소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건축사 수는 저희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1급 건축사 수만 해도 약 19만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실제 등록을 하여 일하는 사람이 5만명 정도 됩니다.

일본의 건축사 법과 우리 건축사법이 조금 다른것은 종류도 물론 다르겠지만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등록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일본은 건축사이면 어디 있든지 간에 모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건설회사에 건축사가 약 40%가 소속돼 있습니다.

일개 건설회사에 건축사 숫자가 약 400~50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하고 그 사람들의 통제하에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제한을 없애는 문제는 면허받은 모든 건축사의 활동제한 완화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법의 유권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하고 두번째 관할법에 대한 것은 건설부가 해석하고 나머지 웬만한 것은 건축시험회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도,군에서도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연구기관에서 유권해석을 하게 하는 문제는 좀 연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누가 해야 마땅할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없는 단체가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자기의 편의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계속성이 있어야하므로 한번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유권해석도 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유권해석되면 계속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여 건축을 하게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첫째 건축주가 있고 두번째 설계하는 건축사가 있고 세번째 시공하는 사람이 있고 네번째 그걸 가져야할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의 개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관계를 갖게되는 것인데 건축사 행정업무에서 처벌의 대상이 많아 곤욕을 치르는 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나 건축주에 대한 처벌이 건축사 입장에서 보려는 너무 가볍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 건축물을 지어 놓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저는 건축주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자나 건축사가 집을 지어 이득을 보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국가로 하여금 치루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의 이런 현실을 고려하는 문제를 겸해서 검토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건축주로 하여금 스스로 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지도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는 건축사보다 법을 잘 알리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겠지요. 그래서 착공시초부터 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없도록 해서 건축물이 위법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위법건물이 생기면 그 다음엔 건축사도 그렇고 건축직 행정공무원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곤란하지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건축법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건축법 보다는 일본의 건축법이 더 규제가 심하고 일본의 건축법 보다는 미국의 건축법이 더 규제가 심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지구 분할 같은 것에도 주거지역이 주거 전용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드를 보면은 주거지역만 열인가 열들 정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역지구 개념이 100개가 넘습니다. 미국이 자유스러운 나라 같지만 건축을 하는데는 저희보다 월등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이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선 선진국이라고 할 수록 건축법의 규제는 강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꾸어 말씀드리면 원사국가인 아프리카의 일부국가 같은 데에는 건축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2,000년대 이상 뒤로 거슬러 가면은 건축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60년대 제정 법규보다는 완화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초기법 보다는 완화되는 쪽으로 가면서 세분화 되는 쪽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저희 건축법에 대한 것도 건설부 생각은 지금보다는 너무 규제하려는 것보다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법이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의 앞으로 개정방향도 전국을 통일해서 규제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줄거리만 얘기한다면 전례올하고 일조권 문제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적률 문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만 지금보다는 폭을 더 넓혀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지금보다도 작거나 크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로서 완화하고 도시계획 구역 등 내에서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하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중간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양원영 : 저는 감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허가건의 약 80%가 1,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소규모 건축물중 80%가 단독주택, 혹은 점포주택 등인데 그중 90% 대다수가 소위 집장사라고 하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건설법 제 4조에 의하면 일반건축물 495㎡, 주거용 건축물 661㎡ 미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주머니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아무나 하여도 합법적인 시공인 것입니다.

현대건축물은 소규모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이 복잡하여 설제시에 전기, 위생, 난방, 방수, 방습, 방음, 환기, 채광, 단열 등 주거환경의 기본이 되는 조건을 충족되게 설계하고 있으나 1평이 몇 평방미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미터법에 의해 작성된 도면을 직관법에 의존하여 시공하고 있음을 현장조사 결과 중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찌 위법된 시공을 막을 수 있으며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해 낼 수 있겠습니까? 건축물은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연히 유지격지의 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0만채가 넘는 소규모 건축물들이 불량되게 신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의 편의만을 생각치 말고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단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각 대학 및



양원영

전문대학에서 5,500여명의 건축학도가 배출되고 있고, 해외건설의 위축으로 인한 고급건축기술자가 회사로부터 밀려나와 실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기술인들을 제쳐놓고 건축의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시공을 맡기는 한 양질의 건축물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법건축물의 발생도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진택 : 일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 2층이하 8m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의 고정된 규정을 완화하여 이에 절대거리 규정을 채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높이 2층이하 8m이하의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이격거리는 1.5m로 하고 1층이하 5m이하는 1m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다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보통 10cm~30정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높아지는 경우 감리하는 건축사들이 이문제로 인해서 일조건 미확보로 처벌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2층에서는 8m 1층에서는 5m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주의 임의대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노출문제인데 2분의1이 노출되다보니가 주벽이 외관상 상당히 불합리하고 미관상 나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하층 노출부분은 1층이나 2층의 구조와 같은 것으로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무가 75년도 총리훈령 제8호에 의해서 시작되어 77년1월부터 새로 신설된 법에 의하여



한진택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제정되어 건축사가 대행업무를 맡을때의 제정목적은 건축민원 서류 숙결처리를 위해서 8근무시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문제를 내세웠고 또 하나는 건축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학력수준이 낮기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건축사한테 이것을 대행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간 당초의 목적이 변질되어 요즈음은 대행업무 처리기한이 5일로 연장되었고 대행업무로 인하여 수많은 건축사들이 고초를 당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인 건축사의 대행업무는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고 권한이 없기때문에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건축사의 대행업무의 책임과 의무는 과거 건축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기관으로 부터 가장 문제가 많이 적출되는 분야의 건축물에 대하여 감사의 지적을 모면하는 수단으로 결과가 이루어졌으며 건축사가 그 타겟트를 넘겨 받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건축사한테 넘기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든가 아니면 대행업무를 관에 환원시켜 건축사는 순수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리업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감리업무는 건축사와 건축주간의 쌍방계약 행위로 건축주가 건축사의 감리업무 집행에 대하여 이행치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계약을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어긴행위가 되므로 건축사는 당연히 감리를 포기하고 포기사유를 건축주와

해당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김리건축사의 임무는 다한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관에서 하여야하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을 때 건축주가 다시 김리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행규정이 바뀌는 것이 김리업무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우 :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말씀도 계셨고 또 일선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정섭 교수님께서 평소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섭 : 우리 건축법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미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미 선진국의 건축법은 대개 우리 건축법안의 일부인 개체규정만으로 이루어지며 건물 자체에 대한 구조안전 위생설비 등의 규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세히, 다시말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못한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지킬수 없는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만한 법을 만든 것은 그만큼 역사적 배경이 있고 깊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는 현실은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하루 아침에는 될 수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법을 만들고 집단 규제는 다른 단독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같은 앞으로의 건축법체제방향을 생각할때 과거 건축법내지 시행령 개정의 방향이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건축법 시행령안에 있던 구조 기준을 따로 떼어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는 선진국 건축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러지않아도 설계를 하려면 건축법외 소방법, 주차장법, 오물처리법등 온갖법이 관련이 돼서 뼈먹기 쉬운데 적어도 구조안전에 관한것 만이라도 한 군데에 묶어져 있어야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진국법이 좋다고해서 선진국을

홍내낼 수 없는 것이 사회적 바탕, 경제적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만 하더라도 세분화법이 있기 때문에 땅 자체를 적게 조깅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에들에 가보니까 단독 주택의 경우에 제일 규모가 적은 주택 지역의 최소면적이 180평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땅을 조개는 규정이 있는 나라에서 건축선을 지정한다든가 공지비율, 전폐율등을 정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적협회에 부탁한 하년 10평이던 5평이든 조깅 수 있는 제도하에서 옹적 지역이니 전폐율이라니 하는것은 사실상 시가지 개선하는데 별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시험회가 상설기구를 설치 하여 실제로 건축사가 겪은 중에서 법이 조금 지키기 어렵다든가 무리하다든가 해서 당한일 같은 것을 상시로 보고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를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에 어떤 개선을 요구할적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설기구 내지 운영방법을 조금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부탁드릴 것은 건축사들과 건축공무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다시말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이렇게 고쳐야되는가 하는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건축법을 강의 합니다 만 1학기 강의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설명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간단회 같은 시간제약을 받는 데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은 설명은 못드리고 그동안 느꼈던 극히 모순된 조항 또는 꼭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조항들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의 정의를 이번에 고친다니 다행 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강의때마다 지적하던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북악현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급주택지인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라면 건축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맨 처음 나온 대지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했을때는 거기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울타리 안에다가 받아들집, 들깨아들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단아파트가 보급되면서 용도상 불가분이 아니라도 한울타리안에 지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또 여러필지로된 한 대지로 두번 건축허가를 받아 전폐율등을 위반하는 사태가 생겨 이것들을 보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건축물이란 말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대로 한다면 한 대지 내에다가 두개의 집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서를 제출하였을때 막을길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바닥면적 산정 방법만 보더라도 사실 거기에 기본정의 이외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필요없는 것들입니다. 또 아까 여러분 말씀중에 인접대지 경계 선과 건축높이 관계에서 높이 8미터 미만의 건축물과 8미터 이상인경우 평창한 차가 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만 이조항, 또는 건축대지에 전면 도로쪽에 대해서 건축물을 제한하는데 그 앞의 길이 경사질 적에는 평균 운운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법령을 고쳤기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제한한다는 원리만 이해한다면 8m 이하, 8m이상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순 조항은 인접 대지의 땅의 높이가 다를때 평균높이로 건축높이 제한 기준을 잡은 것도 문제입니다. 남향으로 기울어진 땅에서는 오히려 일조와 전망을 기타 방향이 기울어진 땅에서도 전망을 가리는 결과가 났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고 통로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정의는 우리 건축법에 있는데 통로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중 피난 시설등에 관한 조항중 통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통로라는 것은 한 대지안에서 교통 전용에 쓸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도로라는 것은 적어도 두집 이상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동에서 말미암아 막다른 도로에 관한 규정이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번 고쳤습니다만 현재 규정을 보면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 도로폭이 3미터까지 될 수 있게돼 있는데 이 조항때문에 두집만이 싸이하는 판통도로는 폭이 4미터 되어야하고 3미터 폭의 막다른 도로에 5호까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작은 공장에도 덮어놓고 나무를 심어야하는데 마당을 작업장으로 싸이하는 조그만 공장에서 나무가 어떻게 유지되니까?

도시계획이 가장 발달하고 가장 환경을 잘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표준공장을 보면 나무 한그루 없습니다. 한쪽 도로에 면해서 트럭한대가 들어설 수 있는 공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대까지도 환경이 좋게 됩니다. 나는 이조항을 완전히 없애 주었으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의 도시는 푸르고 좋은데 우리 도시는 왜 삭막하기만 합니까. 집을 지을적에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게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조항을 만든것 같은데 구미 도시에 가보면 도시가 푸르다는 것은 각 블록내에 나무가 있어서 푸르게 아입니다. 파리, 런던의 상업 지역에서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푸르게 보이느냐 하면 가로수가 많고 또 몇 브락 지나가면 모서리 같은 데에 소공원이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로 보면 파고다공원 잘 해 놔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공원이 많아야 도시가 푸르러 보이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집을 짓는데 나무를 심으라고 강요를 안해도 마당이 있으면 나무는 심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이 이렇게 모순이 많다는 것은 전문직업공무원이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건축법을 전공하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조문이 기초적인 연구에 바탕을 두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고치려니 잘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지요, 일본이 가장 목조 건축이 많고 불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도 많고 해서, 그래서 방화 규정이 굉장히 엄한 나라인데 그 일본의 방화규회 기준이 1,500㎡로 되어있고 우리도 처음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큰 불이

나니까 법을 고칠적에 그것을 1,000㎡로 고쳤습니다. 무려 1/3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아무근거 없어요. 이런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가하면 내화구조의 규정은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에 폐기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기술이 빨리 발달하고 새 내화재료가 생산되기 때문에 내화구조 규정을 어느정도의 열에 얼마만한 시간 견딜 수 있으면 내화구조로 본다는 식으로 규정방법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집합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불량주택지구에서 한주택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생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건축의 구분은 그 기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합주택과 아파트와 기능상 무엇이 다른니까? 같습니다. 주거양식 기본적으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혼합식등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위에 자기만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연립주택은 단지 붙어있다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땅을 공유하고 건물은 공유부분하고 전용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파트먼트 하우스 입니다.

네번째 혼합형은 예를들어 땅이 비싸니까 1, 2층은 연립주택으로 하고 3층 이상을 아파트로 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란되기 시작한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들때 꼭 같은 내용으로 2층 이하면 연립주택 3층이면 아파트로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거구분은 이런 원칙에 맞춰 고쳐야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때문에 원칙을 달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실문제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완화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애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 현재규정은 어느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자율적인 건축물마다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집을 자율적에 그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공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요. 블록내의 보름이 결정



한정섭

되니까 그 보름에 필요한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면 각 건물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빌딩은 일요일 또는 토요일까지도 쉽니다. 백화점에는 일요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차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공용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각 건물별 주차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고려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법이 안마당식주택을 못 짓게 하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대지면적을 주택지인 경우에는 90평방미터인데 이렇게 작은 땅에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인접 경계선에서 얼마 띄어야 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만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가회동이나 계동에 가보면 25평, 20평땅에 지은 7자, U자식 주택은 안마당을 유용하게 쓰고 있고 환경도 괜찮습니다. 이런 주거형식은 서양사람들도 코트하우스라하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 건축법으로는 못짓게 되어 있어요. 이미 분할된 대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불량주택이 되어 안되지만 신시가지 개발 지역에서는 한블록을 완전히 코트하우스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울타리도 필요없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장님 말씀에 일본에 가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건설회사 사무소에 건축사가 많더라하는 애긴데 우리나라도 안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사실 가능한데 지금 안되는걸로 인식이 돼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법을 보면 업으로 남에게서 보수를 받고 전문으로 설계할적에는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큰 기업의 정직원으로서 있는 건축사가 그 기업의 건물을 설계, 감리하는 것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법이 첫번 생길적에 건축사 협회 회원 자격을 건축사무소를 개업하는 사람만으로 한정시켜 버렸어요. 이젠 좀 고쳐져야 되겠어요. 또 대학교수들이 설계를 못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도 재고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과거에 학교에 있는 분들이 너무 설계를 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실제로 학교에 있어 보니까 실무를 몰라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실 건축교육이 절름발이가 되고 있어요. 선진국에선 대학교수가 전부 설계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도 사회 환경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가 있는 분한테 자세한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양식있는 사회고 또 적어도 건축 설계를 맡기면 우리처럼 며칠 사이에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안하고 건축사를 보고 일을 맡기기 때문에 충분히 양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 있는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건축사무소를 차려놓고 문을 안 닫으려면 현실과 타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 공식으로 설계할 수 있게하면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문제를 보며는 그것은 좀 터주어야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며, 회원자격도 개업하고 있는분만 한하지 않고 전체 건축사로 하는것이 우리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읍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하는 분이 회장이 되었을때 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입장과, 개업안한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때 입장하고는 다를 것이며 후자의 경우 더 강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배종명: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수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건축사의 면허를 가진 교수분들도 설계를 하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건축사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문제가 있지만 설계작품이 없는 교수가 제지를 가르치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으로서 1년에 1건이면 1건 제한을 두어 교수분들도 작품을 낼 수 있는 길이

트였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집니다.

김기수: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현직 교수의 건축설계업무에의 현실 참여문제 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건축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만은 현행 건축사법 체제와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다른 관련 법규 등과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론과 실체가 서로 효율적으로 접합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현 제도내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시간을 가지고 관련분야에 계신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권태정: 두살박이 유아회원으로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 특히 건설부 배과장님의 참석은 공무원으로서 의견수렴의 의의가 있고 한교수님은 건축사도 공무원도 아니라는데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고 이해관계를 떠나 입법취지에 관한 순수하고도 근본적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껏 교수님과 여러 회원님들께서 건축법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실로 받아들여 지지면 행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이론 하나 하나가 합리성과 논리성이 정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법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시행착오도 가져오고 시대성에 따라 변화도 되었고 개정도 끊임없이 거듭해서 오늘에 이트른 시련과 고초를 겪은 이유있는 법이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부정 뒤에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긍정 뒤에는 부정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편협된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다수 회원들의 의견일지라도 대의적, 미래지향적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규제가 까다롭고 지키기 귀찮고 설계하기 힘든다거나 건축주 실득이 힘든 상황이라고만 해서 불평내지 개정을 주장한다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협회 내에 건축법을 취급하는 상설 기구를 두도록 해서 여기서는 법을 연구하고 법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법의 누락을 추가 건의하고 법을 정리도 해보고 가다듬고

회원들의 법 질의에 즉각 정확한 회답을 주고 유려한 방법을 모색도 해주는 등 행정기관과도 끊임없는 교량 역할을 하고 여타 연구기관도 활용을 하는 등 건축관계 법규정에 대해서는 어느기관 보다 넓고 깊게 다루는 기구로 발전시킨다면 건축의 전반을 사회화가 주도하게 될 거고 회원들의 권익도 형평성 있게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모든법이 그렇듯이 제정이든 개정이든 충분한 시간속에 설문이나 공청 회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주 바뀌지 않는 법, 알기쉬운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애 본인이 업무를 통해 느껴온 몇가지를 딱딱한 법조문 형식을 떠나 개괄적 개정건의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일조권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의 이격 거리가 건물이 8m까지는 높이의 1/4이다가 8m를 초과하면서 급격히 1/2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임에도 일부를 헐지 않으면 그 후에 증축을 하지 못하는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고 일조권이란 인접 건물높이에 비례 변화적 영향을 줄지언정 급격히 변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이는 비합리적이라 지적합니다. 저층부를 보다 강화하는 한이 다소 있더라도 갑작스런 변화는 모순된다고 보아 직선 비례적 변화 규정을 주장합니다.

두번째로 처마선의 일조권 규정에서 완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경사진 처마의 경우는 인접건물에 주는 일조권 침해 요소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며 반하여 디자인 기법상으로는 본 규정이 크게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소 부드럽게 완화한다면 보다 아름답고 보다 시원스런 건물이 많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집단으로 동시에 여러동의 주택(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완화를 주장합니다. 북측에 이격시킬 거리를 모든 동이 일률적으로 남측에 더해준다면 동간의 일조권 거리는 변화없이 앞마당이 넓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과의 경계는 종전과 같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아파트 단지내 동간 거리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인접대지와는 일정 거리를 지켜주고 단지내에서는 자유롭게 배치한다면 단지내 토지이용 방법이 대단히 다양하고 쓸모있게 될 것이며 작가의 작품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일조권은 단지내에서 다른 야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간선도로변 노선상업 지역의 주거지역화하는 문제입니다.

과거법에는 상업지역과 여타의 지역의 중복되는 대지의 경우 두 지역중 상업지역 면적의 다소에 구애없이 전대지가 상업지역의 적용을 받게되어 건물이 대형화 했고 고층화했었으나(용적율, 건폐율등으로 기인함) 법개정에 따라 과반수 면적인 지역에 적용되다가 보니 노선상업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화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연 건물이 소형화 저층화 하게되며 또한 상업지역 적용을 위해 뒷필지를 작게분할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여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미관지구로서 규정상 대형화 고층화 해야하는 의도와는 상충되는 모순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선상업의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또한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다루든지 모순성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문제입니다.

지금 소형 건축물의 경우는 그 감리를 설계자가 아닌 타 건축사가 감리단이란 집단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볼진대 그 작품의 지향하는 바 의도는 작가인 설계자가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음을 부인 할 여지가 없겠기에 당연히 설계자와 감리자는 일치함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행제도가 위법 건축물 시정을 대전제로 부조리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우리모두 각성해야할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한편 쥐를 잡으려다 독을깨는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위법건축 없는 사회가 정착이 되어 설계 감리자가 일치되는 날이 와야겠고 이렇게 됨으로써 감리자가 자기의 보수를 지급하는 건축주를 지도 아닌 감독을 해야 하고 본의아니게 고발을 해야 하는 비윤리성도 동시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여섯가지를 두서없이 건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정

강석준: 저는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대행 대상건축물에 있어서 반복누적되고 있는 위법다발요인에 대한 개선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개정에 있을 때마다 좀 아쉬우게 느껴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10여년간 동일유형의 위법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손질이 안된채 묵과되어오고 있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법은 왜 고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합리적으로, 좀더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과 법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점 즉 동일 유형의 위법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면은 그 위법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실태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나 학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는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개정을 위하여서는 각시도지사나 건축사협회의 각 도지부장을 통해서라도 누적되는 반복적인 위법다발 요인에 대한 실태표본조사를 실시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감리전담실무를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반복위법다발 요인중에서 준공전에 위법된 것은 전제위법의 2-3%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감사등을 통해서 비교적 사후단속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후에 이루어지는 97-98%에 대한 위법에 대해서는 사각이 되어서인지 아니면 서민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관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이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위법이라면 법의 권위를 위하여서라도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강석준

철저히 단속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위법다발요인들이 실태표본조사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생활 편의상 필요에 의한 편법적인 위법이라고 판단되고 사회공익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국민편의차원에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조경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준칙에 의하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40-60%범위내에서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부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200㎡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그 조경면적을 자율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조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현행 40-60%로 되어 있는 것을 20-40%로 완화해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그것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개인주택이나 혹은 기타 주차의무규정의 대상규모에서 벗어나는 건물에 있어서는 조경면적으로 인해서 대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내만해도 노상주차로 밤이면 거리에 차들이 죽 서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경문제는 완화해서 주차공간이라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유권해석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협회를 통해서 유권해석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집에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전설부 질의나 기타 질의에 대한 것들도 빠짐없이 다 수록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연구상설기구설치를 말씀했음니다만 그런 기구에서는 개개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전부 수집해 가지고 동일유형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법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붙여서 설치되는 외부계단의 끝부분을 처마끝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은 그것은 외벽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린생활시설등에서 외부계단은 처마끝 20cm 남겨놓고서 대개 허가가 나고 그렇게 준공이 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유권해석을 보니까 계단의 끝부분이 바로 외벽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건폐율이나 이적거리등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동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동일유형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혼동방지를 위하여서라도 법규로서 보완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즉 단, 외부계단의 끝부분은 외벽으로 간주한다' 라는 단서라도 넣어가지고 규정해놓아야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안해 놓으니까 실무면에서 가끔 착오와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권해석중에서도 법규화해야될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끌라가지고 법개정에 반영해서 이에 규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장동찬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 관계로 평소에 제가 생각해보던 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의 취지와 용어의 정의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들면, 지하층의 경우 법 제 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하는 대피시설로서의 지하층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들어 갈수록 대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축주 자의로 설치하는 거실로서의 지층은 어느정도 지표면 밖으로 돌출할수록 일조, 채광, 통풍 등 환경이 개선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지하층만으로 규제하니 환경을 좋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법에서 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하층중 일정

규모 이상의 대피시설과 지표하에 설치하는 거실로서의 지층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법의 용어중 다세대주택, 통로, 건축선등 법 제정당시 부터 분명치 못한 정의나, 그동안 법의 부분적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변질된 것등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외무에 대한 규정을 법에 반영하기 시작한 점은 매우 좋게 사료됩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해 다수인이 모이는 관람,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은 물론 대규모 건물 등에도 그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중 주차장 공용문제라든가 법 연구의 상실 기구 설치문제 및 건축사 자신의 품위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재우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토의 하신 내용과 법규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구 검토했던 내용들을 건축법 개정작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협회도 지금쯤은 건축관계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사법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창규 :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2년서 부터 4년까지 건축사 국가고시 출제위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제가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법제처장인가?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출제한 내용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그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었습니다. 또 한가지 요즘에 와서 매년 통계를 잡아 봤더니 이것은 같은 대학교육을 받고 의사시험에 붙는 비율하고 건축대학을 나와서 건축사시험에 합격하는 비율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채용시험도 아니고 취직시험도 아닌데 무슨 커트라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커트라인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전부 볼일수도 있고 전부 떨어질 수도 있다. 또 한가지 이 출제위원이 전부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객관식 문제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은 이유는 나는 나쁘게 생각해서 채점의 편리를 위한것이 아니냐? 건축의 능력을 볼적에 과연 객관식이 그렇게 요구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건축사법 국가고시에 관한 출제문제, 출제내용문제, 합격율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별기구가 생기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덩핑이나오는 이유가 거기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작정 건축사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이것은 국가가 생기는 업무와 인원의 인력수급계획이 정확히 돼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명확히 된다면 커트라인도 어느 정도까지 양해가는 선이 나타나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가끔적이면 출제위원들도 우리 협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위원이 나와서 실지 경험을 쌓는 다수가 실지 현장에서 해본 문제들을 좀 내는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영 : 건축사보(보조사)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보는 우리들의 후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의 뒤를 이어 건축사가 될 사람등인 것입니다. 매년 많은 후진들이 각 대학을 나와 설계사무소의 문을 두드립니다만 인연이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면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그들중에 적성이 맞는 사람을 뽑아 훌륭한 건축사 후보로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성에 맞지 아니한 사람등이나 간혹 성실치 못한 보조사가 들어와 수시로 이전(사무실을 자주 바꾼다)하며, 자기의 실력을 속이고, 파다한 보수를 요구하여 후일 말쑥을 부리는 자가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경력을 위조하여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는 등 건축사와의 부단한 신경전과 불협화음이 그칠새 없습니다. 일단 건축사 사무소에

입소할 의사가 있는지는 협회에 등록하고 그의 학력, 경력, 보수기준, 기타 이전에 대한 관리를 협회에 맡겨 질적인 향상과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석준 : 제가 일본법에 관해 잠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건축사법을 보니까 건축사는 거의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지 않으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 심사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심사회 위원은 중앙이 10인 내지 30인으로 되어있고 지방은 5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중의 60%가 건축사로 구성되도록 아주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징계라고 일컫고, 징계처분을 할때에는 행정관청의 장이 반드시 건축사 심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을 보면은 건축사의 감리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 위주의 처벌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시공중의 위법단속은 전적으로 공무원(감시원)이 전담하고 있음) 그것은 건축시공자가 허가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도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에 나와 있는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다시 말하면 시공자의 고의적인 위법시공일 때에는 감리건축사의 책임은 없고 직접행위자인 시공자만을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것을 보아 일본에서는 건축사의 권익보호가 법적으로 잘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사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심사제도의 신설이 바람직하며 한편 공무원의 징계규정을 보면은 징계에는 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민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부터 10년전의 징계사유가 적발돼도 저화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행정처분의 시효도 앞으로는 설정이 돼야지만 저화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화들의 설계분야에 대한 분업화

문제입니다. 현재 건축사가 소방법이나 혹은 기계설비 또는 구조기술사, 전기 기타 등등에 대한 즉 건축설계와 관련되는 기술분야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한 건축사라면 그 분야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비단 분업화돼 있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건축사의 고유업무분야였던 것이 분업화된 것인만큼 건축사에게 그 분야의 설계는 허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은 소방설비에 있어서 소방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당분야설계에 대해서는 소방설비업자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을 받으려면 그 업자에게도 역시 보수를 주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건축사가 소방기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당 소방설계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즉 건축사가 소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소방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와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원래가 소방설비는 건축사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규 : 요즘은 보니까 공무원이 몇년이상 되면 건축사 면허를 준다는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적인 전지에서 볼 적에 공무원 대우위주, 이런 인상으로 일반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회원들도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저항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요식행위로서 형식적인 시험방법을 거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모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의 재직시에 건축사 시험을 수검한 자격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거의 몇년씩 공부하면서 국가고시라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는데 공무원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해서 그러한 특혜를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원들 한테는 정말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저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것도 이 자리에서 얘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동찬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을 안하고 있는것 같 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정섭 : 건축사법은 제가 건축법처럼 자세히는 생각안해 봤습니다만 조금전 최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게된 것을 저도 후에 알았어요. 그 문제로 건축학회에서도 제가 대단히 화를 내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느낀 것이 우리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자기 앞에 닥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건축계 전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아요.

관청에서나 사회에서 건축사를 대단하게 생각 안한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들어 놔느냐 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든 어떤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업하는 분이 이미 전폐율이 초과된 기존건물을 1층 바닥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니 지금 늘리려는 부분을 기존 건물로 그려 가지고 등기에 나온 평수와 맞추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더니 건축주 측에서도 당신은 대학교수니까 원칙론만 얘기하는 사람이니 현실이 그렇지 않는데 뭐 그러느냐? 이런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사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조금전 공무원 특혜문제도 그래요. 논리상 말이 안되는게 건축공무원이 하는 업무하고 건축사가 하는 업무하고 같지 않는데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자격법에서는 각종 기술자나 기능자의 자격이랄까? 등급을 수험자격 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술사법을 만들때 건축사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건축계에서 반대하여 건축사법을 만들었고 후에 기술사법이 기술자격법으로 바뀔때 건축사 수험자격도 높여 건축사를 기술사와 같은 급으로 만들었는데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건축사 수험자격 연한을 낮추는 바람에 건축사는 기사 1 급에 해당되게 됐어요.

아까 1,300여명의 회원중에서 700여명이 별반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태를 역을하라고 말한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건축인 자신들이 반성하고 사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시험회에서 그런 별을 받는 사람중에서 정말 건축사의 품위를 실추시킨 사람을 골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역을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확실히 자기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하고 그것이 건축사의 품위를 실추시킨 증거가 밝혀지면 정말 눈물 머금고라도 그런 사람을 협회 자체가 벌을 주어 일벌백제의 단안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건축사의 지위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재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범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 했는데 응시자격이 우리는 대학교 졸업후 5년이고 기술사는 7년으로 되어 있는데다 건축사시험에는 특별전형제도가 적용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 자격문제에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라는 것은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협회설립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막연히 전부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만이 참다운 옹호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맹목적인 보호는 보호가 될 수 없음을 썩은 가지를 쳐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예로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을 수없이 당하는 회원은 법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정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건축사의 징계를 관에서 직접하지 못하게 하고 건축사 협회가 맡아야 합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문지식 직업인 단체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에 서는 전문직 자격을 그런 단체에서 인정하고 징계도 합니다. 이렇게 되자면 물론 민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얼마전에 시험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내게 문기를 한쪽에서는 건축사시험 합격율이 낮으니까 늘려야 한다고, 다른 한쪽에선 건축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해서 전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사회고 제대로 되어 가지면 과부족이 심해서는 안되지요. 기존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력은 중세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의사협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 외과대학을 설립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모자라 동양계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동양계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번엔 그것을 막고 자기네 외과대학을 증설했어요.

이런 일은 어느 사회나 다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절대로 나쁜게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전제가 있어요. 사회수준이 올라가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같은 현실에서 건축사시험 합격자 수만 줄이겠다고 하면 당장 학생들이 데모를 할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건축사시험 제도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축학회와 건축가 협회에서 그전부터

논의되어온 것입니다만 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의사나 약사처럼 자격시험을 보게 하되 지금 기사 1 급 시험과 합쳐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한 후 1차 자격을 주고 그후 경력에 따라 5년 후든 7년 후든 기술사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수험자격 경력연한을 정해 설계 등 실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기술사도 이에 준해 하면 됩니다. 문제는 경력인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전처럼 학교 대학원 경력도 시공회사 경력도 꼭 같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식은 안됩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건축사시험의 경우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도면의 관여인 기입란 자체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식으로 한 도면이 작성되기 까지 관여한 사람의 일부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사인을 받은 후 대장에다 기입하고 그런것이 있어야 인정해주고 해야지 건축하는 건축사 사무소에서든 권위가 서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실지 경험을 쌓은 사람이 인정을 받기 연구소에 있었다, 건축유판단체에 있었다, 해서 경력을 인정해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되었을 적에 비로소 사회가 건축사를 알보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 건축문화도 발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재우: 그의 건축사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장 4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했으며,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좌담회 내용이 제한된 지면에 모두 옮겨 질지는 의문이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르는 좋은 말씀 나눠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보완 발전시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합으로 맞은손님 웃으면서 돌아간다.

건설부장관상 에너지절약형주택 부문

김기홍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탐

많은 현상공모전 중에서 이번의 공모전은 에너지를 주제로 한 아주 실질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피부에 와닿는 주제라 생각한다.

모든 전람회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모양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번 공모전은 모든 건축관계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주제라 생각한다.

작년 연말,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을 검토하며, 지켜보면서 그동안 건물설계, 특히 주택설계에 있어서 건축주의 취향, 요구사항과 설계자의 의도 - 기능성, 건축미, 적절한재료, 기타 여러사항 등 - 을 종합하여 신중을 기하고 해결하느라 고심을 하면서도 냉·난방 (에너지소비)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했던감이 있다.

우리의 에너지소비 추세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겠지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75% (1983)에 이르고 여기서 주택부분에서의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35% 정도가 되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깨닫는다.

또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수요가 건축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무관심할 수 없다 하겠다.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도시에서 36.7%의 주택 부족율을 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5.5%의 부족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한 저렴하게, 신속히, 대량으로 주택을 보급 할 수 있게 건축 관계자들이 연구·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특히 설계기법에 있어서도 단순하며 통일성 있고 변환점있는 설계로 발전시켜 나아가 건축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얼마전에 해외건축가와의 자리에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가들의 에너지 절약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자랑스레 늘어 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해 - 자원량, 개발정도, 소비량 해외 의존도 등 - 문의하여 주에너지가 해외에서 비싼 달러로 구입이 되고 부존자원도 충분치

못하다는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실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나며 오히려 이런 공모전이 좀 늦지않았나 하는 감이 든다.

주택은 주택이 갖는 특수성이 있어 — 특수한 소수의 집단이 생활을 영위하는 그릇으로서, 또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 주어진 대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생활조건 여기에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과학 건축학적인 조건들을 총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조정과 연구를 거듭했지만 시간에 쫓겨 미흡하나마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이 제 1회 공모전인 만큼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시급성이 되어 앞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공모전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여러방면으로 애쓰고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최측에 감사를 드린다.

동력자원부장관상 자연형태양열주택 부문

강대호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수 년전의 일이다.

석사과정의 초반기 부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적 접근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자연형 개념은 나에게 상당한 호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가능성과 적응성에 적잖은 기대도 있었다. 처음 접했을 때에는 겁없이 쉽게만 이해하려 했던 이 개념이 점차 공부를 더 해감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에 접목하기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당한 고민을 해야했었다.

그러나 차츰 이 방면에 대한공부를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도 Passive적인 (자연형의 개념에 입각한) 방법이 많이 적용되었으며 우리의 조상들도 꼭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각종 자연적인 건축 재료와 건축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기후적인 또는 지형적인 외부조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 수상소감

Impression of Receiving Prize

또한 외국의 다양한 풍토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형의 개념(Passive Approach)은 아마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개념이 아니었기겠느냐라는 확신을 갖게된다.

따라서 자연형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의 변천 속에 건축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고도의 설비화에 묻혀 잠시 잊혀졌던 개념의 재등장이라고 믿고 싶다. 다만 그러한 고전적인 기본개념이 시스템화라는 현대적인 과학화의 경향에 따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자연형 시스템의 적용은 1970년대 에너지 파동 이전부터 있었으며 에너지 파동에 자극받아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설계 그리고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연형 건물이 10만호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역시 상당히 많은 자연형 건물이 보급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정립되었고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수치적인 열성능분석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궁극적으로 건축화하는 일은 우리 건축가가 맡아야 할 분야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찌기 수년전부터 이러한 자연형 건물설계 공모를 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공모전과 같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있게 주목하고 연구

함으로써 우수하고 아름다운 자연형 건물이 지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설계공모 기회를 열어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고마움을 느끼며 졸작을 최우수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땀흘리며 작품작업을 했던 동우건축의 강철구 소장님, 김태선님, 오홍중님과 연세대 박사과정 김기환 선배님과 수상 기쁨을 나누며, 지금까지 이 방면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연세대 이경희교수님과 동력자원연구소 오정무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전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있기를 고대하며 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가 계속될 때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건축시대가 저 무한한 에너지원인 밝은 태양과 함께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결실을 하나의 채적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리라 다짐해 본다.

(본 최우수상 수상은 필자이외에 강철구, 김태선, 오홍중, 김기환 공동임을 밝힌다.)

과학기술처장관상 학생부문 최우수상

김대중/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대학에 들어와 건축을 처음 접할때의 막막함이 올해로 만 4년째 이다. 아직

미숙하기만한 우리에게 막상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무어라 얘기할 수 없다. 우선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울리며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수상에 즈음하여 부끄럽기만한 작품을 정리해 본다.

본 작품의 계획 단계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제약인자들로 인한 평면형태의 확실성과 입면상의 단조로움이었다. 평면형태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해, 공간 구성의 중심이 되는 거실부분을 자연스러운 곡면벽으로 처리함으로써, 변화를 유도 하였고 곡면벽 윗부분에 Open-space를 둠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더했고 아울러 은실에서 태워진 공기의 광범위한 흐름과 자연스러운 통풍을 유도하였다. 입면상의 단조로움은 남쪽정면부 전체가 유리로 덮여아는 제약 조건때문이었다. 결국 입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의해서만 결정이 아니하였는데 만족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내진 못하였던것 같다. 좀더 열심히 하지못한 아쉬움과 함께 이번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과 후배들에게 그 고마움을 이번의 영광으로 대신하고 싶다.

길고 지루했던 하나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 마다 고통에 가까웠던 시간들이 보람 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아름다움 때문인 것이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서로의 미숙함과 어설피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엮어 나가는 그 아름다움이다. 그 이러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길은 멀고 험할수록 갈만 하다는 어느 선배의 말이 입속에서 맴돈다.

(본 수상은 윤희진, 김유한과 공동임)

바로 잡습니다.

1986년 4월호 건축사지 58쪽에 게재된 내용중 <대체에너지 주거부분에 작품을 기대> 제하의 이남호 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융용연구실장의 글은 <앞으로는 복합적인 에너지원 창조> 제하의 이명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원장의 글임을 밝힙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복합적인 에너지원 창조> 제하의 이명호 원장의 글은 이남호 실장의 <대체에너지 주거부분에 작품을 기대> 제하의 글임을 밝힙니다.

편집실무진의 실수로 두분 글의 제목과 필자명을 서로 뒤바뀐데 대해 이명호 원장과 이남호 실장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회원여러분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4월호 49쪽의 모형사진과 50쪽의 모형사진도 서로 바뀐 것임을 밝혀 바로 잡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출판사업무>

호텔

Special Edition/Hotel

The Conception of 'Hotel'

by Ahn Byung Ui

호텔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호텔이라는 무대에서 연출된다.

보수와 개혁, 합리성과 부조리, 사랑, 강간, 메카니즘과 인간성의 상반이, 참된 것과 위선이, 횡령, 부정, 기타 범죄가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인종차별의 문제마저 일어난다.

호텔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를 골자로 하여 엮어낸 소설에, 「아더·헤이리」가 쓴 「호텔」이라는 책이 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상연된 영화 「대공황」의 원작자인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호텔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이 지식을 바탕으로 스릴과 서스펜스에 넘친 드라마를 보여 준다. 하도 재미있어 나는 다섯번이나 읽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되어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호텔을 설계하려면 우선 설계자료집에 실린 과거의 호텔을 조사하고 대체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첫순서이겠으나, 이밖에 호텔운영에 대한 책들도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어디까지나 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요구되는 것은 호텔이라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다. 말하자면 호텔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아더·헤이리」의 「호텔」은 바로 이런데 필요한 인생마춤인 책이다.

이 소설의 무대는, 미국에서도 인종 차별이 남부 뉴올리언스의 고색창연한 전통있는, 성그레고리라는 큼직한 호텔이다.

옛날의 영광을 걸머진 채, 지금은 은행에 저당설정된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닥쳐 후로 다가왔는데도 앞길이 막막한 어느 월요일에 이 소설의 첫장은 시작된다.

총지배인을 겸한 이 호텔의 건축주는, 여러군데 용지를 알아보았으나, 불합리한 경영으로, 영업이 실통치 않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 호텔을 어느 은행에서도 거들떠 보지않아, 결국은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많은 최신식 체인호텔을 갖고있는 호텔왕이 이 소식을 듣고, 유리한 조건에 매수하려고 날아든다.

때를 같이하여 영국의 한 공작이 부인과 비서 그리고 다섯마리의 「테리아」까지 이끌고 귀빈실에 숙박하지만, 그날밤 바람둥이 공작은 거리의 술집에서 창녀와 놀아내고 술이 취해서 자가용을 몰고 돌아오던 중, 어린애를 차우고, 얼떨결에 달아난다. 그러나 호텔의 경비주인이 이를

눈치채고 공작을 협박하여, 마침내는 어린이를 차운 증거가 되는 차를 멀리 판 곳으로 옮겨준다는 조건으로 막대한 돈을 받아낸다.

한편 이 마을의 갑부들이 댁이 모여 호텔방을 빌려 지배인에게 돈을 주어 콜걸을 불러 전랑 놀아내지만, 그것도 모지라 여자친구를 꼬여서 수간하려고 하지만, 소란을 피우는통에 들통이 나버린다.

비행장의 쓰레기통에서 줍거나, 거리의 배아까씨가 훔쳐낸 호텔숙박객의 열쇠를 이용하는 호텔전문 절도범이 때를 같이하여 이 호텔에 숙박한다. 절도범은, 공작부부가 외출한 사이에, 푸론트가 불뼉을 때를 기다려, 멍청한 푸론트만을 계략으로 당황하게 만들면서 감쪽같이 공작의 방열쇠를 얻어내, 가짜열쇠를 만들어, 본열쇠는 푸론트에 돌려준다. 이 절도범은 다시, 공작부부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방에 들어가 1만불이 든 가방을 훔쳐낸다.

한편 치과의사들의 심포지움이 이 호텔에서 열리는데, 그중 한사람은, 흑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숙박을 거절당하고, 이에 분개한 치의사협회장은 다른 호텔로 옮기기를 바라지만,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아 협회장은 시표를 내고 흑인과 같이 돌아가고 만다. 이 사실이 신문에 크로즈업 되어 건축주가 마지막수단이라고 믿었던 인종평등을 모토로 하는 노조계열 회사의 용자같이 막혀버려 호텔은 절대절명의 판치에 서게된다.

엘리베이터 한대가 오래전부터 고장이 잦았으나, 건축주는 예산부족으로 미루어 왔는데 드디어 9층에서 밑으로 떨어져 많은사람이 다치고, 매다침 타고있던 공작도 죽게된다.

이 호텔의 단골손님으로 외모는 보잘것 없고, 언제나 썩방에만 숙박하는 광산왕이 이 호텔을 인수하게 된다.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 천절했던 부지배인 「매그다못트」를 총지배인자리에 앉혀 호텔운영의 전권을 위임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매그다못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인종차별을 안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소설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월요일에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금요일로, 각 장을 요일로 메겨있어, 닷새동안에 일어나는 파노라마가 스피드하게 처리된다. 이상 대체적인 줄거리사이에 호텔의 여러가지 생리가 치밀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그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부정과,

호텔 산업은 본질적으로
장치산업이다. 건물과 각종
시설은 움직일 수 없고 손쉽게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없으며,
객실과 레스토랑, 바 등의
수용인원은 결정되어 있어 이것을
그날 팔지 않으면 제로가 되는
장사이다.

눈물겨운 이야기가 수를 놓는다.

내가 이 소설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건축주와 이 호텔을 매수하려고
찾아온 체인호텔왕과의 대화이다.

전지는 호텔이란, 손님이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있고 품위있게 만들어,
극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자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호텔이란 능률적이며 경제적이고
규격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호텔의
모든기구가 정확한 원가계산위에 효율중계
운영되어야 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는 극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대해 건축주는 반박한다.

호텔이란 경영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곳이며, 서비스를 빼면은 무엇이 남겠는가?
보나마나 당신의 체인호텔의 손님들은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따뜻한 분위기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받을만한
자력이 없는 감성이 순한 사람들인가
보군」 하고.

체인호텔왕은 다시 반박한다.

서비스라는것 자체가 캐케묵은 낡은
생각이다. 현대사람들은 그러한 기만을
바라지 않는다. 예를들면 옛날에는 에리트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일등차를 탔지만,
현대는 제트항공기가 편을 친다. 우선
빠르고, 스튜어디스가 운반해 주는 주어진
식사를 즐긴다. 메뉴를 골라야할 번거로
번거러움도 없다. 매우 빠르고, 기능적이며
규격화된 이러한 현대 의식을 호텔에서도
요구한다.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가 있는 보수적인
호텔인가 또는 체인호텔의 규격화된
능률적인 호텔인가, 하는 것은 호텔
건설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부딪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호텔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호텔의
평면, 입면에서 실내장치, 호텔의 기구에

이르기까지 호텔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국가로 말하면 바로 헌법 제1조에
해당한다. 물론 이것은 애초에 호텔
건축주가 결정하지만, 건축가는 이 호텔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호텔계획에
나무랄데 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호텔의 성격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는
척도중에 호텔 전종업원수를 객실수로나눈
계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서울의 특급
호텔의 경우 이 계수는 1.4내외가 된다.
즉 600실 호텔이면 종업원수가 약
1,000명인 셈이다. 미국의 호텔은 인건비가
비싼 관계로 이 계수가 0.6정도 되는 고급
호텔도 많다. 이 계수가 높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가 좋다는 이야기가
된다. 종업원수가 충분하니 당연히 친절
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호텔요금도 비싸진다.

세계각국의 이름있는 은행가들이 투표
해서 선정한 세계10개의 좋은 호텔중에,
파리의 리츠호텔, 동양에서는 항항의
「만다링」, 싱가포르의 「상그리라」 그리고
일본의 대倉호텔이 들어있다. 여기서 좋은
호텔이라는 관점은 음식이 맛있고,
분위기가 우아하며, 서비스가 좋다는등
앞서 성그레고리호텔의 건축주가 말하는
보수적인 스타일의 호텔이다.

동경에 있는 대倉호텔은 객실수 930,
종업원수 1,450명으로 그 계수는 1.6이니
우리나라의 어느 호텔보다도 높은 셈이다.

호텔에 묵을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나 방내에서 일을 보고 객실에
돌아오면 방안은 외출할때 그대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기 일쑤다. 그러나
대倉호텔의 경우 객실을 담당하는
「메이드」와 청소부가 적어도 하루에
서너번 들러 깔끔히 방안을 정돈한다.
호텔이란 호스파타리티, 즉, 보살핀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倉호텔에서는
손님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공정한 값을 받는 기능적인 호텔인가,
또는 서비스가 좋은 보수적인 호텔인가,
하는 문제는 아마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숙원일지도 모른다. 그 까닭은
아무리 세상이 물질문명 지상의 세계로
바뀌어도, 사람의 감정이나 생활습성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고 아늑하고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보수적인 계층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서로 다른 이
두 종류의 호텔은 공존하면서 경쟁해 나갈

것이다. 어느쪽이 옳으나 그르나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맞추고, 호텔의 위치조건에
따라 건축주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겠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보다 기능적인
호텔이 늘어나는 경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대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한동안
객실은 점점 최소면적으로 치달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다시 옛날처럼 객실이 넓어
지고, 여유있는 분위기의 호텔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호텔이 서로 경쟁을 한 결과
보다 수준높은 호텔을 만들려는 까닭이며,
분위기 또한 점점 호화로운 방향으로
치달고 있다.

호텔산업은 본질적으로 장치산업이다.
건물과 각종 시설은 움직일 수 없고 손쉽게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없으며, 객실과
레스토랑, 바등의 수용인원은 결정되어
있어 이것을 그날 팔지 않으면 제로가
되는 장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텔이란 하루별이
장사의 연속으로 우선은 손님을 얼마나
끄는가에 달려있고, 당초 투입된 막대한
자본을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회수하는가,
하는 사업이며 이 기간이 빠를수록 좋은
셈이다.

대체적으로 자기자본인 경우, 개업하고
나서 4년정도 지나면 정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며 12,3년쯤 되면 투입자금이 모두
빠진다. 감가상각이 끝나고, 그러면서도
고급호텔의 이미지가 유지되고 손님의 수가
언제나 일정수준을 넘은 상태라면, 이처럼
안정된 사업도 없을 것이다.

점차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심의 특급호텔은 연회나 식당등 요식
계통의 매상고는 객실에서 들어오는 수입
보다 훨씬 높아가는 경향이다.

따라서 식료품이나 음료는 좋은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고 맛있게 조리하여 친절환
서비스를 하며 좋은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호텔영업상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호텔의 실내는 새로 꾸미면
적어도 3년은 별 지장없이 쓸 수 있지만,
음식이나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체인호텔왕이, 성그레고리
호텔에 들어서면서 첫인상에 뚝뚝하게
살이 켜 종업원이 많이 눈에 띄어 이것은
즉, 부정을 하는 종업원이 많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호텔의 경영상태는 좋지

않으리라는 감을 잡았다고 익살을 부린다.
바텐더는 손님에게 드리는 술의 양을
속여 부정수입을 올리고, 보이장은
「콜걸」을 불러들여 수입을 올리면서
호텔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부하직원을
시켜 교묘하게 이중으로 손님에게서 팁을
뜯어내, 횡령을 한다.

중년의 청소부는 주방에서 몰래 좋은
비프스테이크 고기를 훔쳐내어 시타구나에
테이프로봉쳐 감쪽같이 경비원의 눈을 속여
집으로 가져간 일이 수십번에 이르는데,
여태껏 한번도 들들나지 않았다.

경비주임은 호텔에 도둑이 잠입했는데도,
도박장에 출입하고 공작을 공작하고 그의
차를 멀리 딴 곳으로 옮기기 위해 4일간
어나 자기바음대로 결근하고 마침내 교통
순경에게 붙잡히고 만다.

주방장은 게으름을 피워 조퇴하기
일쑤이고, 값싼 조리기구로 말미암아
음식맛이 떨어진것도 모르고 있다. 또한
체대로 훈련되지 않은 멍청이 후르트 객실
담당은 부주의 탓으로 열쇠를 이용한 상습
절도범에게 그만 귀빈실의 열쇠를 내주어
마침내 그의 돈을 도난당하게 한다.

예산이 없어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달래어
가면서 쓰던중 마침내 추락하여 큰 사고를
빚으면서 이 소설은 막바지에 이른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종업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불성실하면 호텔은 결국
적자를 보고 마침내는 남의 손에 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그레고리호텔의 종업원들 모두가
불성실한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젊은 부지배인 「매그다못트」는 이러한
부정과 엉망인 기강을 파악하고, 호텔을
재건할 방안을 여러번 옷사람에게 제안
하지만 나이가 들어 무기력해진 건축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주방장 또한
주방시설의 혁신을 피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못한다.

저자인 「아더·헤일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호텔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그는 나중에 이 호텔을 인수하게되는
광신왕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나는 역사가 느껴지는 오래된 마을의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호텔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호텔은 좀 낡았지만
가정적인 정서가 있다. 어느 시대나 유행
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보라는듯이 비싸고 화려한 재료로
지장한 천편일률적인 호텔이 많으나, 세상

사람들은 곳 그런것에 싫증을 느끼고
오래된 정서적인 것을 동경하게 된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친절함등가,
개성, 분위기등 고마을과 환경에 어울리는
특색있는 호텔이 아쉽다.」

이말은 우리들의 주위에 세워진,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앞으로도 세워질 많은
호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로
들린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호텔이 유행만을
뒤쫓는 안이한 설계이고 돈은 비싸게
들인데 분위기는 값싸다.

차분히 가라앉은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 경박한 여자의
마음처럼 변하는 햇손의 냄새를 풍긴다.
바람이 불어와 은은히 느껴지는 목련의
꽃향기가 아니라 값싼 향수의 코를 찌르는
자극에 지나지 않는다. 성숙한 여인의
교양이 풍기는 매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값싼 옷과 장신구와 자극적인 화장으로
감싼 허상일 뿐이다.

대부분의 호텔에서 건축가가 참여하는
것은 고작 절반쯤이나 될까. 나머지는
인테리어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그리고
조경팀이 한몫들을 하게되는데, 이들은
애초에 세운 호텔의 이미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강그리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특히 로비나 레스토랑등 영업장부분은
오래 인테리어디자이너에게 맡겨지는데,
개성있는 공간을 꾸미는, 디자인보다는
값비싼 재료와 복잡한 상세와, 돈이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는 몰당과 호화로운
가구로 감싸 마치 디자인부채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호텔의 로고에서 싸인보드, 심지어는
타월, 메뉴, 영수증등 용지에 이르기까지
디자이너의 세심한 수준 높은 디자인이
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과 통일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또한
어설프다.

이러한 여러분야가 참가하여 하나의
뚜렷한 개성을 빚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호텔이 가장 힘든 설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건축주는 준공을 서두르기 때문에 오래
건축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설계를 갖고 우선 착공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우선 필요한
공사도면만을 그려주기도 바쁘다. 특히
지하층은 설비전기의 심장부이므로 치밀한
도면이 요구된다. 대체적으로 착공후

그동안 호텔이 많이 세워졌지만
장래의 전망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여 더 많이 지어야하고
호텔사업의 전망 또한 매우 밝다.
좀 더 차분한 계획아래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자랄할 수 있는
호텔의 탄생이 기다려진다.

약6개월간은 설계가 물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내장치와 관련된 도면의
수정이 기다린다.

건축주는 돈을 절약하려고 지배인이나
주방장, 기타 간부급 직원들을 호텔 open
6개월쯤 전에 비로소 채용하게 되고 이들
운영팀은 이미 쌓여져 있는 벽체마저 헐고
공사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번 호텔을 설계해 보았지만 처음
단계에 완성된 시공도면의 거의 80%가
수정되고 공사는 애당초 계획보다 50%
쯤은 늦어지고 공사에 또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호텔건축에서 오래히 일어나는
문제는 결국 첫째, 기본설계 단계에서
호텔운영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설계를 확정해야 한다.

둘째는 시공설계에 의해 착공하자 곧
인테리어디자이너를 참가시켜야한다.

또한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공사비
예산을 검토하고 외주해야할 기구, 집기,
비품등은 조기발주하여 예산이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기(工期) 지연을
사전에 막는 길이다.

호텔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호텔건축비를
알잡고 공기(工期) 또한 짧게 잡을 뿐더러
자기자본도 확보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남의 돈에 의지하여 지으려고 한다.
그 결과 자금계획과 공기(工期)에 차질을
빚어 애당초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은 한10%쯤이나 될까?

그동안 호텔이 많이 세워졌지만 장래의
전망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여 더 많이
지어야하고 호텔사업의 전망 또한 매우
밝다. 좀 더 차분한 계획아래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자랄할 수 있는 호텔의 탄생이
기다려진다.

의전행사와 호텔 시설

Special Edition

Ceremony and Hotel Facilities by Lim Byung Ho

1. 서 언

사회가 날로 전문화 되어가면서 각종 행사의 내용도 질적, 양적으로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다. 매일 매일 계속되는 여러가지 행사를 위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의전행사가 호텔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공공시설은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의전 절차를 다소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한다. 그럴때 마다 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또한 의전관계관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은 의전담당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의전상 곤란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말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의전업무의 특수성이 관련분야에 널리 홍보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은 너무나 세부적이고 관련분야의 재량행위(裁量行爲)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관계협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호텔시설이 먼저냐 의전절차가 먼저냐를 묻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호텔시설이 먼저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호텔은 제반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목적으로 설계된 건물이며 의전절차(儀典節次)는 기존시설에 특수행사를 관련시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시설과 특수행사의 연관성이 희박하여지면 행사주최측은 일시적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여타의 호텔기본업무를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행사주최자는 목적된 행사를 위하여 제2의 장소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을 찾아 헤매야만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호텔시설은 “발주자”와 “설계자”와 불특정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이용자”라는 삼위일체가 하모니를 이룰 때에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의전업무(儀典業務)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각도에서 정의되어질 수 있겠으나 일정한 행사와 관련된 주관자, 참석자, 시설 제공자, 그리고 행사와 무관한

제3의 호텔이용자 모두에 대한 최대의 즐거움과 최소의 불편을 목표로하여 목적된 행사를 기획, 실시, 통제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호텔시설과 의전절차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변천을 거듭하고 있으므로 점점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축사”지와 같은 전문지를 통하여 의전업무의 특징을 고찰하고 여러 의전경험자의 축적된 의견을 일부나마 대변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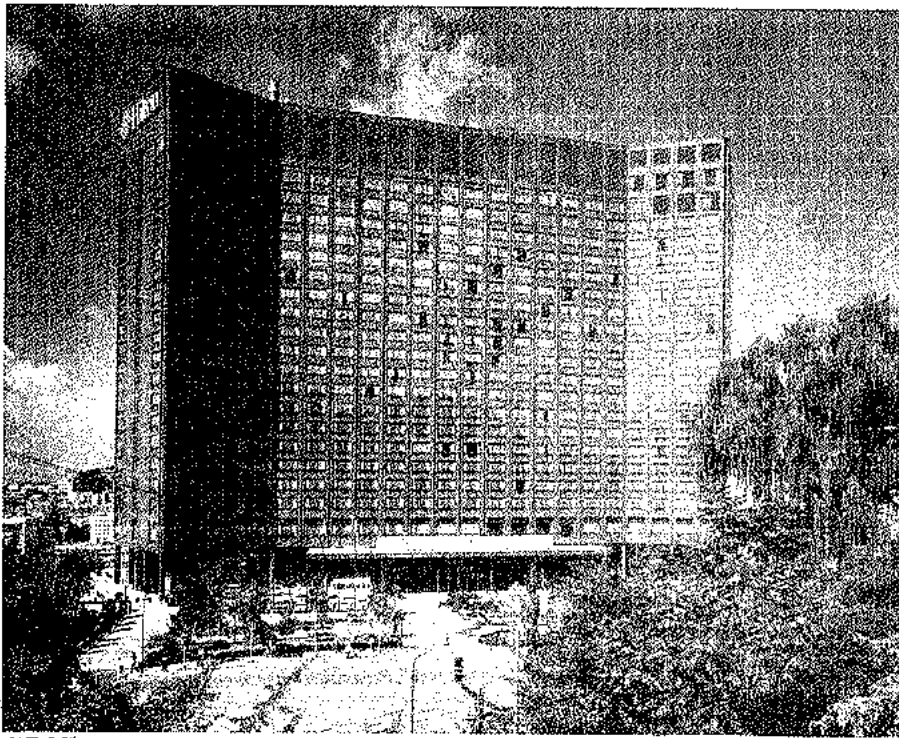
2. 의전업무와 호텔시설 이용경험

가. 비서업무와 의전업무

의전행사를 의뢰받는 호텔 등의 시설물 관리측은 어느때는 행사 주최측의 비서실로부터 행사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다른 때에는 의전담당관으로부터 행사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또 다른 어느 때에는 총무과와 같은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비서업무와 의전업무가 상호연관성을 갖는 특성이 있어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의(廣義)의 의전관계관은 비서실요원, 의전과요원, 총무과 요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수년 전에 S호텔에서 의전관계관을 위한 년말 파티가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서실과 의전과와 총무과 요원들이었던 기억이 있다.

순수한 비서업무는 기관장의 일정, 하부 기관의 보고 및 결재, 외부인사의 면담, 전화와 서신처리 등으로 분류되고, 순수한 의전업무는 기념행사, 각종연회, 대규모 회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분류되며 의전적 비서업무는 외빈접견, 소규모 회의, 식사 약속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비서업무중 특정업무가 대규모화되거나 격실화 되면 의전업무가 되고 의전업무 또한 소규모화되면 비서업무화되는 경향이 있다.

의전과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은 의전업무가 많은 기관이며 총무과에서 의전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비서실 규모로는 의전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의전행사를 많이하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의전업무와 비서업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처리



힐튼호텔

하고 있는 기관에는 의전비서실(儀典秘書室)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다.

고도의 의전절차가 필요한 의전업무에는 경호업무 또는 보안업무가 수반되고 있다. 의전업무와 경호업무는 성격상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의전절차와 경호절차에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의전업무는 공표될 수 있는 성질이 많은 반면에 경호업무와 보안업무는 공표되지 않아야 할 성질이 많다.

서울시내의 고급호텔에서는 관측부를 설치하여 의전담당부서와 기민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의전업무에 종사하면서 호텔측으로부터 호텔시설에 대한 설문을 받거나 종합적인 의견교환의 요청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 또한 의전담당관들은 업무성격상 기존시설에 맞추어 의전절차를 작성하면 그만이며 신축 또는 개축시설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한 기회도 거의 없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의전행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체험담을 열거해 보기로 하겠다.

나. 선배들의 체험담

어느 고참 의전관계관이 10여년전에 어느 외국호텔에서 연회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에 투숙하여 당일로 예정된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호텔구조가 낯설고 예정참석자도 많이 변경되어 마음이 답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찬 좌석표를 들고 황급히 뛰어가다가 연회장 입구에 있는 전면 투명 유리에 정면으로 충돌하여 유리가 깨어지고 얼굴에는 찰과상을 입고 오른팔 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호텔측은 물론 연회주최측에서도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노련했던 선배를 너무 침착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했었다.

그 뒤에 국내 어떤 공공기관의 대규모 식당에서 그와 동일한 사고를 목격했다. 어느 국무위원 주최로 국회의원 몇 사람과 점심약속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한사람이 참석이 늦어져서 K비서관은 급히 전화를 걸려고 뛰어나가다 전면 유리에 부딪쳐서 앞나가 부러져 버렸다. 그 식당은 K비서관에게 그렇게 낯선 장소도 아니었으며, 투명유리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다지 위협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한 사고가 난 며칠 후에 그 유리부근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추가시설을 해놓았다. 두번씩 같은 사고가 반복된 이후부터 급히 움직여야만 하는 의전관계관의 부주의도 원인이지만 의전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설물에도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겠끔 되었다.

비가 부슬부슬내리던 수년전 어느 여름 저녁에 모 경제부처의 C과장이 피곤한 몸으로 만찬이 끝날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찬이 개최되었던 건물은 전통적인 한옥

식당으로 여러 참석자들이 호평하던 보기 좋은 독립가옥이었으나 C과장에게는 지친 몸을 쉬 장소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끝날 시간도 멀었고 또한 만찬종료 시간이 임박하면 알려주는 사람도 있으니가 안심하고 뒷분 승용차의 뒷좌석에 걸게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잠깐 들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바로 그 승용차의 주인이 급한 일정이 있어서 도중에 실무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만찬장을 빠져 나와 승용차를 타려고 했다. 운전기사는 없고 비는 계속 내리기 때문에 아마도 승용차의 주인은 운전기사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연락을 받고 급히 오려니하고 생각했는지 승용차의 열려진 뒷좌석에 털썩 앉았는데 마침 거기에 누워있던 C과장의 안면에 날벼락을 내린 옷지못할 손국이 벌어졌다. 뒷사람도 깜짝 놀랐음은 물론 이고 C과장도 혼미백산하여 두고두고 기다릴 장소도 없었던 독립 한옥식당을 원망했다.

다. 필자의 체험담

70년대의 중반에는 서울시내에 고급 호텔이 몇개 없었다. 그리고 의전행사를 개최하는 호텔도 몇몇 호텔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중의 어느 호텔에는 현관 출입문에 회전문을 설치하여 놓았고 일부 사람들은 신기한듯 어색한 걸음걸이로 조심조심 드나들곤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되어서인지 2개의 회전문 옆에 조그마한 도어식 문이 있었으나 그것은 벨보이가 트렁크나 운반하는 문으로 쓰이고 있었다. 때마침 오찬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인사들의 출입을 도와주기 위하여 회전문을 밀어주고 있었다. 승용차 한대가 도착하고 두 사람의 참석자가 동시에 내려서 회전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필자의 실수로 회전문을 잘못 밀어서 한사람의 팔다리가 회전문에 완전히 걸리게 되었다. 그 참석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돌변했으며 필자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 몸둘 바를 몰랐다. 기분 좋게 오찬에 참석하는 사람의 기분을 참차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의전상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 의전이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이후로는 회전문만 보면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곤 한다. 회전문은 한사람씩 출입하는 관계로 행사 개최시 몇사람의 관계관이 동시에 뒤따라 가거나 급히

출입해야하는 경우 등에 많은 불편을 준다.

초년생 시절에 지방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호텔에 투숙을 해보니 스위트룸만 대여섯개가 죽 연결되어 있어서 실무자인 필자는 싱글룸으로 멀리 배치되어 있었다. 지방행사시에는 필수인원만 선발되므로 비서업무와 의전업무를 모두 맡은 필자는 수석귀빈 복도앞에서 계속 서성거려야만 했다. 모든 자료는 내가 가져다온 싱글룸에 있고 귀빈의 스위트룸으로부터 수시로 떨어지는 지시와 다른 객실로부터 수시로 올라오는 보고를 처리하자니 물 한모금 먹을 시간 없이 왔다갔다 뛰어 다녀야만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 몸살을 앓았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출장을 가기 전에 해당 지방에 있는 호텔 객실배치도를 사전에 입수하여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는 습성이 생겼다.

지면관계상 외국호텔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하겠다. 1985년 10월24일 뉴욕에는 제40차 유엔총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수뇌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호텔에도 각국의 국기가 서너개씩 게양되곤 하였다. 외전상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지라 마상한 관심을 갖고 투숙했던 플라자호텔의 현관과 로비와 연회장 부근을 관찰해 보았다. 어느날 거의 동일한 시각에 3개국의 수뇌가 회의를 향하여 호텔을 떠나야만 했다. 출발시간에 로비에서 살펴보니 A국 수상은 정현관으로, B국 수상은 동편 현관으로, C국 외상은 서편 현관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유유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플라자 호텔의 구조는 3면이 모두 도로와 접해 있었고 승강기도 3군데에 분산 설치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셰라톤 호텔에 연회가 있어서 그곳엘 가보았는데 셰라톤호텔 역시 플라자호텔과 마찬가지로 넓은 로비에 여러개의 출입문에 여러대의 승강기를 갖추고 있었다.

필자가 의전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을 맺은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다. 의전업무는 단순업무의 반복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장소를 기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게 된다.

3. 의전절차와 호텔시설에 대한 의견

가. 의전행사와 호텔시설의 관계
호텔은 최초에 고객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음식과 용역을 제공하여 대중에게는 휴양시설과 공공 장소를 제공하는 복합기업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호텔경영의 근간은 객실경영, 식당 경영 시설관리, 경영계산, 마케팅 등으로 대별되어진다.

호텔기업은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가 총자본에 대하여 가장 높은 사업이며 호텔영업의 결정적 역할을 주는 시설물의 조기노후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므로 설계단계나 개·보수단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객실과 식당과 집회장소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하여 다목적의 연구를 계속 한다는 것은 기업의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호텔 특히 관광호텔의 이용자가 주로 외국인이라는 고정된 관점에서 국한되어 일부에서는 호텔시설을 유럽식 호텔이나 미국식 호텔에서만 그 모델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음의 이유에서 다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국인 이용자 비율이라는 통계 숫자에는 내국인 주선이라는 중간단계가 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둘째, 외국인의 몸은 서구식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눈은 한국적 환경과 한국적 부대시설을 희망한다.

셋째, 호텔은 외국인 등을 위한 객실 기능 이외에도 내국인을 위한 공공 시설로서의 역할 등 부수기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행자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은 자연히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또한 지급능력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하게 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이용자의 범위는 엄격히 구분하면 일반적인 불특정 대중과는 다소 구분이 되어진다. 호텔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용자는 의전담당관이 대상으로 하는 주요인사와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호텔종사원과 의전담당관은 의전절차와 호텔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며 때로는 대립과 타협의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한점을 더 나아가서 신축호텔이나 개보수호텔의 시설관리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

최상급(最上級) 의전행사와 차상급(差上級) 의전행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차상급 의전행사는 최상급 의전행사를 위하여 의전절차상 많은 양보와 화생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2가지 행사의

규모나 임석귀빈들의 중요성에 별차이가 없을 때에는 최상급 의전행사도 의전절차상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차상급 의전행사의 규모가 아주 작을 때에는 의전절차상 일반 투숙객과 같은 범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전절차에 적합한 호텔 시설은 같은 시간에 개최되는 모든 의전 행사 또는 일반투숙객에게도 적합한 시설이 된다. 경호절차가 미치는 영향도 의전절차가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나. 의전행사에 따른 호텔시설의 분류

휴양호텔은 휴가를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신속성, 합리성, 연속성을 추구하는 의전업무와는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으므로 호텔시설에 의전절차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이 감소한다. 도시호텔중에서도 장기체재 호텔이나 아파트 호텔도 의전절차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의전절차와 관련성이 많은 호텔은 도시형 단기체재 호텔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전행사와 연결성이 많은 호텔은 고급호텔, 상업호텔, 회의용 호텔, 사업자호텔 등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겠다.

상기분류는 호텔시설의 주기능을 위주로 한 분류이므로 이러한 기능이 모두 종합된 호텔을 가산한 도시형 단기체재 호텔의 단위시설은 의전적인 관점과 관련하여 볼 때 환경시설, 로비시설, 객실시설, 식당시설, 연회시설, 집회시설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분류는 “관광호텔업 등급별 시설기준”과 상이하여 전형적인 설비라든지 비품은 제외하였으며 통행시설(通行施設)과 객실시설(客室施設)과 연회시설(宴會施設)을 주로 강조하였다.

다. 주차장 시설

호텔의 주차장 시설은 소규모 자본, 협소한 부지라는 제한때문에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부속주차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주차장을 좋아하는 의전 담당관들이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바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의전절차상 필요한 현관앞 차량이용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몇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

첫째로 의전행사시에는 주요인사 차량이 일반고객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5~10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될 수 있도록 특별 주차장이 가시거리 이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로, 현관앞 하차장에는 3~4의 차선 넓이에 해당되는 승하차 장소가 마련되어 제 1의 모터게이드(motorcade) 출발대기 상태하에 제 2의 모터게이드 또는 일반고객차량의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셋째로, 주차공간이 대단히 협소할 때에는 로비를 객실안내 등의 시설에 국한하고 지상 2층에 커피숍을 분산시켜 1층 건물속으로 하차선 및 특수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차장시설이 미비할수록 행사참석자의 도착 및 하차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나 특히 차량대기 및 승차 순간이 불편하며 행사 진행이 중단되거나 차량대열이 끊어지거나 연결된 행사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의전행사에서는 통행시설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 바로 주차장시설이다.

여의같은 차량이용시설 기준에 관하여 의전담당관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는 호텔이 서울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차량 이용이 극도로 불편한 호텔은 의전절차를 수반하는 일반적인 의전행사에서는 자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주차장 시설이 좋으면서도 의전행사가 적은 호텔은 지리적인 불리함이라던가 다른 시설이 의전절차에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

라. 현관 출입문

의전절차는 거처장스러운 것을 싫어하며 불호르듯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입문의 확보를 요구한다. 적은 수의 행사요원으로 제한된 출입문을 통제하려면 호텔종사자와 일반투숙객의 협조를 강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절차는 합리성의 결여로 행사자체에도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호텔측과 행사 주최측이 모두 싫어하는 절차이다.

현관출입문은 차량이용 시설과도 상호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하차선을 기준으로 하여 현관문이 2군데 이상되는 경우에는 의전절차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출입현관을 호텔 전면에 2개소를 설치 하거나 동서남북 4개 방향중 2~3개 방향으로 현관을 만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게 된다. 차량이용의 역사가 긴 대규모

국제도시에서는 이러한 호텔이 눈에 많이 띈다. 외국 어느호텔에서는 지형을 이용하여 지하로비층을 만들고 제 2의 현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의전행사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승, 하차선(下車線)과 현관 출입문이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생활을 달거나 정중한 안내를 하는 등 각종 영접과 전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영접절차나 전송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승, 하차 지점의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현관 출입문의 통행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현관 출입문의 갯수 이외에도 출입문의 형태가 중요시되고 있다. 의전행사에서는 회전식보다는 도어식 출입문이 선호된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회전문처럼 행사직전에 회전문의 날개를 접어 주어서 도어식 출입문보다는 부족하지만 수월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직하다. 회전식과 도어식을 병행하는 경우 중앙에는 개폐식도어를 양쪽에는 회전문을 설치하는 것이 귀빈 출입과 일반 출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배치방법이라할 수 있다. 도어식 현관문도 사람의 손으로 문을 잡거나 췌기를 막아서 문을 고정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있으므로 직각 이상으로 열었을 때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그러한 문이 의전행사에는 편리하다.

마. 로비층 시설

의전행사는 수시로 계획이 변동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최측의 연락과 관계관의 확인행위가 중요한 절차이며 항상 행사계획의 변화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행사통제 및 행사 실시의 교량적 장소를 한눈에 제공하는 로비층에는 많은 관계관이 집결하게 된다. 이러한 장소를 은밀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호텔을 행사관계관은 싫어하게 된다.

로비가 좁으면 주요인사들이 뿔뿔으로 부터 내려와 로비층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관을 통과하여 승차선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각종 의전절차에 수반되는 제반 준비사항도 급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차질을 가져오기 쉽다. 마찬가지로 하차선에서 승강기 앞까지 도달시간도 짧으므로 승강기 준비 등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된다.

의전절차에 적합한 호텔시설은 같은 시간에 개최되는 모든 의전행사 또는 일반투숙객에게도 적합한 시설이 된다. 경호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의전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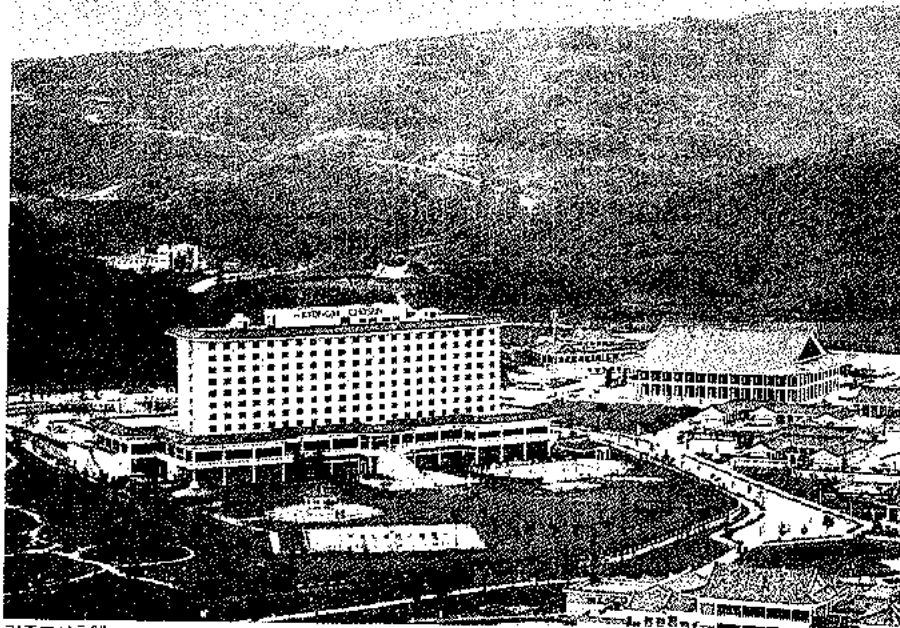
로비는 넓을수록 좋다. 휴양호텔에서는 관광매점용 로비층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의전행사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에는 로비층은 기급적 넓게하고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커피숍은 별도 장소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로비가 충분히 넓지 않다고 소파세트까지 없애는 것은 의전상 절대로 좋지 않다. 소파세트가 없으면 관계관이 은밀하게 대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호텔시설이 기본적으로 관계관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관계관의 진행없이 의전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통행과는 직접 관계는 없으나 로비층의 천정이 너무 낮으면 위엄성이 없고 답답하여 의전행사에서도 그러한 장소는 기급적 피하게 된다. 주차장과 현관 출입문과 로비층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설에는 비록 호텔시설은 아니지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과 중앙국립극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귀빈실도 잘 마련되어 있어 대규모 의전행사를 개최하는데에는 아주 편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호텔로비라던지 그랜드볼룸부근 시설도 이러한 시설을 참고로 한다면 공공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바. 승강기 시설

로비층에 연결되어 있는 통행시설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승강기 시설이다. 승강기의 크기와 갯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요인사가 동시에 이동하거나 의전관계관이 함께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저층호텔에서는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고층에서는 더욱 많은 인원이 동원되거나 무전기기를 이용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의전절차에서 승강기의 크기와 갯수가



경주조선포텔

적다는 것은 의전행사의 정확성, 신속성, 합리성, 엄숙성을 모두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나쁘다. 승강기는 많을수록 환영을 받고 적당히 분산되어 있으면서 귀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2개정도 따로 배치되어 일반투숙객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으면 더욱 좋다.

승강기 시설이 만족스러운 호텔도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 승강기 시설을 많게 하자면 다른 시설을 감축하거나 투자자본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승강기 시설이 적으면 여타 시설의 효용이 감소한다는 원칙이 망각되서는 곤란하다. S호텔과 L호텔은 승강기 시설은 만족스럽지 못하나 주차장시설과 로비층 시설이 비교적 양호하며 의전행사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사. 객실시설

휴양호텔은 원형, H자형, Y자형 등 멋과 낭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호텔 복도에서는 방향감각을 잃기 쉽고 미로를 헤매는 듯한 착각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의전행사에 적합한 모양은 一자형, 7자형, ㄷ자형 등 직선의 복도를 갖고 있는 호텔이 편리하다. 특히 원형호텔은 객실의 내부구조도 곡선을 이루어 혼란을 가져다 준다.

관광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서울과 부산의 경우 객실에 관한 한실 3실을 포함하여 50실 이상이면 특급으로

규정하여 무궁화 5개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전행사에는 단순한 객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서로 다른 크기의 스위트룸이 있어야 한다. 이때에 스위트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복도 한쪽 끝에 가장 큰 스위트룸이 한개, 다른 한쪽끝에 약간 작은 스위트 한개, 가장 큰 스위트룸 다음에 보통 스위트룸이 한개 정도 있으면 아주 좋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이던간에 수석귀빈(首席貴賓)과 차석귀빈(次席貴賓)이 있고 비서실 또는 의전요원이 그 부근에서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위트룸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의전행사에서는 가장 쓸모 없는 배치라고 할 수 있다.

스위트룸 한개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여기에도 많은 고려사항이 뒤따른다. 의전상 완벽한 형태의 스위트룸은 침실, 응접실, 식당, 회의실로 구성된다. 4개의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식당과 회의실이 일반 객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면 영업상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호텔시설은 경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과도하게 커다란 응접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기만 하다.

소규모 스위트룸의 경우에 침실과 응접실 사이에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객실이 있는데 이러한 스위트룸은 의전행사를 위한 시설로서는 별로 달갑지 아니하다. 관계관들이 자주 드나드는데는

침실 정돈을 위하여 누구인가 계속 신경을 써야되며 관계관들 또한 정돈인된 상태 하의 객실을 출입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기본업무에 어느 정도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의전행사시에는 단체투숙이 대부분이어서 항상 적절한 예산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트윈룸이 많은 것이 효과적이다. 싱글룸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외례히 보조침대를 요구하거나 다른 층을 희망하게 된다. 호텔객실이 의전행사만을 위하여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어렵게 되고 객실담당관과 의전관계관이 오랜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객실의 자물쇠는 투숙객의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어문을 닫고 나오면 저절로 잠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전행사를 위하여 투숙한 관계관들은 비뺄 움직이다 보면 열쇠를 놓고 다니는 일이 많으며 열쇠를 잊지않고 다녀내해도 일일히 열쇠를 사용하여 매번 도어문을 여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객실의 안전과 출입의 편리 모두 만족시켜주는 자물쇠의 전문용어는 모르겠으나 도어문을 열어 놓은 채로 인쪽에서 잠그면 도어문이 닫히지 않는 자물쇠가 좋다. 차선책으로는 도어문을 완전히 열어 놓으면 닫히지 않는 그러한 도어문도 편리하다.

외국인이 등장하는 의전행사에서도 객실의 기본원리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경비부담이 국내기관인 경우에는 침대의 갯수는 별문제가 안되는 반면에 호화스위트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양국간의 관계요원의 협조기능이 확대 되도록 관계요원의 투숙 객실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아. 식당시설

10명 이내의 소규모 식사는 호텔식당의 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교적 모임을 위해서는 좋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겠으나 은밀한 회합을 위해서는 조용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모두 일반화 이용자와 별실 이용자는 서로가 접촉이 안되도록 하면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 시설이 될 것이다.

호텔측에서는 객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식당이므로 객실과 식당이 대부분 이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의전관계관들은 객실에는 대체로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으나 식당은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당별실의 경우에도 몇가지 고려되어야할 요소가 있다.

식당별실에서 좌석배치를 하는 경우에 어느쪽을 상석(上席)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호텔측과 행사측이 논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텔측은 주로 경치가 좋거나 벽장식이 좋은 쪽을 상석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행사측에서는 출입이 용이하거나 출입구 쪽에서 먼쪽에서 출입구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상석으로 주장한다.

행사측에서는 실무자들이 출입구쪽에 앉아야 출입이 자유롭고 사진촬영을 지휘 통제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상석 뒷편에 병풍을 진열하거나 화분을 놓도록 요청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사전에 감안하여 설계하거나 벽장식을 한다면 양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기타의 연회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으나 특히 식당별실에서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식당별실에서 주요인사의 식사가 진행 되는 동안에 의전요원은 일반홀에서 식사할 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별실과 일반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식당에서는 의전행사를 회피하게 된다. 주요인사의 식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의전요원의 식사장소도 너무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 연회시설

대규모 리셉션이나 대규모 만찬을 위하여 커다란 호텔에는 대부분 그랜드 볼룸이 있으며 2~3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출입현관이 한 개인 경우에는 분할의 효용성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다. 의전담당관들은 커다란 연회가 같은 시간에 접치는가를 항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랜드 볼룸이 2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편리하다.

그랜드 볼룸은 최대면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정구획을 모두 점유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랜드 볼룸 앞에는 참석자에게 명찰을 교부하고 좌석배치도를 비치하고 기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1층 로비와

유사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넓은 복도가 필요하며 주요인사 휴게실이나 의전관계관의 집결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볼룸에는 넓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반면에 훌륭한 볼룸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빈대기실 등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행사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랜드 볼룸에는 국제회의나 공연이나 기념식이 개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단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그 연단을 필요에 따라 그 높이를 바닥까지 조정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강당처럼 연단을 고정시켜 놓을 경우에는 필요시에 완전차단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리셉션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대규모 만찬장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카테일 장소로 분할되거나 볼룸 앞의 넓은 복도를 카테일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어떠한 연회도 다 가능할 것이다. 그랜드 볼룸의 분할방법도 단순히 2등분 또는 3등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과 같이 다양성 있는 분할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차. 만찬시설

소규모 만찬(10명 이내)은 주로 식당별 또는 호화스위트를 응접실을 사용하고 대규모 만찬(100명 이상)은 볼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중규모만찬(30~40명)은 의외로 적당한 시설을 갖춘 호텔이 대단히 부족하다. 대규모 만찬시에는 테이블과 사람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실내장식이 미비해도 눈에 잘 띄이지 않으나 중규모 만찬시에는 실내장식은 물론 그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많다.

중규모 만찬시에는 첫째, 좌석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명조절이 자유스러워야 한다. 둘째, -자 테이블 배치 또는 U자 테이블 배치가 대부분이므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적절해야 한다. 셋째, 카테일 장소와 귀빈휴게실을 겸비하고 실무자가 진행을 보조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만찬시에도 엄숙하고 격조높은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중규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소에서 만찬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조건은 중규모 만찬시보다도 엄격하지 아니하다. 우선

여행자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은 자연히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또한 지금 능력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이용자의 범위는 엄격히 구분하면 일반적인 불특정 대중과는 다소 구분이 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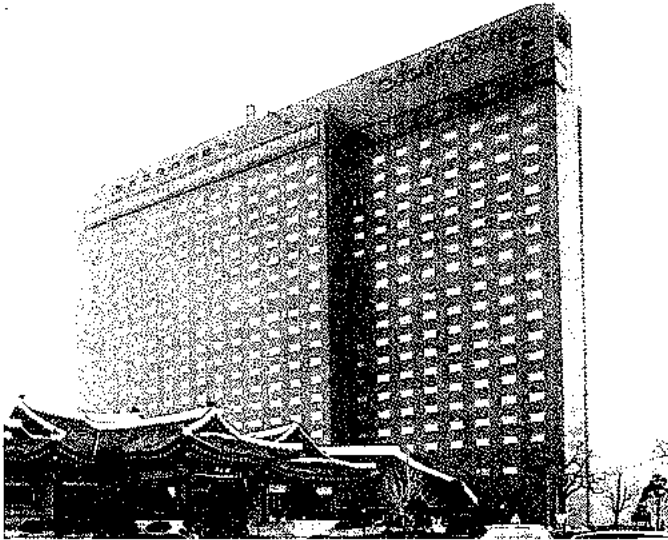
카테일 장소가 별도로 없으면 같은 장소에서 미니 배를 설치운영하면 된다. 좌석배치표를 별도로 세워놓을 필요성이 없이 테이블 위에 좌석표만 놓으면 되므로 그러한 공간이 불필요하다.

카. 공공건물의 설계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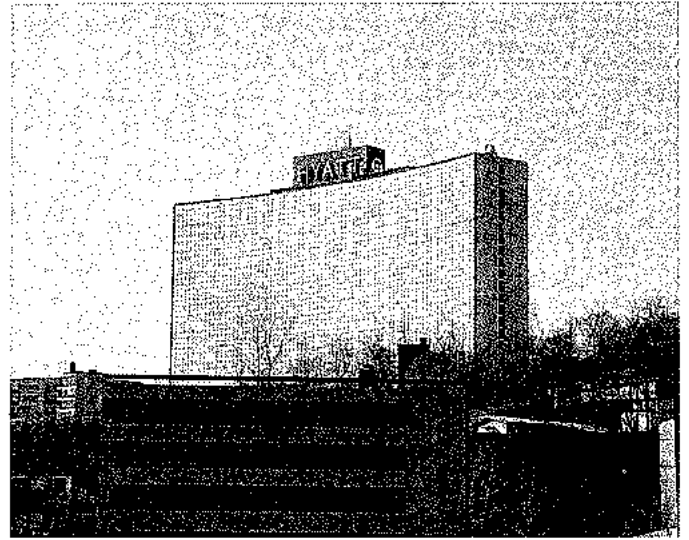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단계에서 귀빈 대기실과 귀빈식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관계관의 이해와 협조를 얻은 경험이 몇번 있다. 의전의 관점에서 사실물을 언급하자면 호텔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그 기본원리는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해 전에 전형적인 의전용 건물의 설계에 관련되었던 경험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 시설물은 그 당시에 이미 발주자와 설계인의 협조아래 모든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곧 시공에 들어 가려는 단계에 와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계획에 뒤늦게 관련되어 약 6개월 간에 걸쳐서 많은 토론이 수반되었다. 필자의 의견이 잘못되어 오히려 설득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의전적인 관점에서 공감을 얻어내어 기본계획은 많이 수정되었다.

첫째로, 전반적인 면적이 협소하여 건물을 대폭 확장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예산관계상 불가능하다 하여 의전상 필요한 단위시설의 최소면적을 추가하지는 선에서 합의가 끝났다.

둘째로, 건물의 방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기본계획에는 남향건물에 남쪽 출입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승차 및 하차의 위치와 다른 건물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남향건물에 동쪽 출입문이라는 특수 형태를 주장하였다. 많은 토론 끝에 승, 하차 시설과 조경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기본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으며 승, 하차를 위한 의전절차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신리호텔



하이얏호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셋째로, 현관 출입문과 로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계관단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과 화장실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십사리 동의를 얻어서 건물 뒷편으로 위치되었던 어느 사무실이 현관 출입문 옆으로 재배치 되었다.

넷째로, 퀸빈대기실과 접견실 출입문의 개수와 방향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제시하여 별문제점 없이 해결책을 찾았으나 그 면적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예산상의 이유로 하는 수 없이 기본 계획에 동의하였다.

다섯째로, 커다란 회의장시설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여 회의장 시설을 축소해서 연회장시설과 겸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그 옆에 주방시설을 추가하도록 주장하여 예산의 증가를 불구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결과적으로는 기본 계획보다 예산을 확대하여 단위시설의 추가 및 효율적인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설계기간의 연장으로 공기가 짧아져서 난방시설과 통신시설의 황급한 수정으로 약간의 결함을 노출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역시 건물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술한 호텔시설과 비교할 때 의전적 관점에서 공공시설에는 무엇이 중요시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의전행사에 필요한 호텔시설중 통행 시설과 객실시설과 연회시설의 기본조건을 간략하게 열거해 보았으나 전술한 내용을

모두 제대로 갖춘 호텔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각종 의전행사는 도처에서 개최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목적된 행사는 예정대로 거행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전담당관은 해당행사에 가장 부합되는 호텔시설에 행사장소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의전절차에 정답은 여러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나 고차적인 단계에서는 정하는게 의전이라는 이야기도 흔히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엄숙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를 치루어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의전행사의 장소를 결정하는데에 시설만이 전부는 물론 아니다. 호텔 위치는 물론이며 그 장소가 익숙한 장소인가,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은 어떠한가, 그리고 음식맛, 케이터링 주방시설, 관측활동, 보안성, 경호축전 등 장소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다. 또한 의전행사는 실무자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위사람의 기호에도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 등이 종합되기 때문에 의전업무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전담당관들 사이에는 어떤 행사는 어느 호텔이 적합하고 또 다른 행사는 어느 호텔이 편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주된 이유는 호텔시설의 우열에 근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리적으로 불리하지도 않고 호텔시설도 의전행사에 편리하면서도 의전행사가 자주 없는 호텔은 경영방침이나 기타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의전행사가 많은 호텔을 일류호텔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의전행사는 적어도

호텔영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훌륭한 기업도 있다. 따라서 의전행사가 많은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며 의전행사가 적은 호텔은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는 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별개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도시형 단기체제호텔의 단위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술하면서 의전행사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의전절차는 정확성, 신속성, 위엄성, 합리성을 구비해야 한다.
- 의전업무는 당사자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제3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의전행사는 물흐르듯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의전행사의 속성과 조건에 따라 호텔시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보면 호텔시설은 의전행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 임석퀸빈들의 통행과 휴식이 어색해지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의전관계관의 통제와 진행이 자유로운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 가시거리 이내에 넓은 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회합의 보안성과 참석자들의 경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일시적인 부대시설이나 장기적인 개축시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 의전행사에 적합한 시설은 일반 투숙객에게도 편리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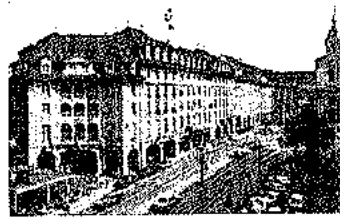
우리나라 호텔건축의 개선점

Special Edition/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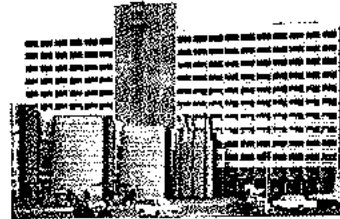
A Note for Improvement of Korean Hotel Design

by Hyun Young Jo

● 서구 Hotel 건축의 환경디자인의 비교



Switzerland, Bern의
Gauer Hotel Schweizerhof



Hungary, Budapest
Hotel Volga



France, Paris의
Novotel Hotel



Italy, Rome의
Hotel Bernini Bristol



Austria, Wien의
Hotel Bristol Wien

호텔건축의 방향

호텔의 성격

호텔은 Business, 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이러한 용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휴식, 건강, 식사, 오락, 회의 등등... 그밖에 서비스 시설을 수반한다.

호텔의 종류

일반적으로 City 호텔과 Resort 호텔로 대별할 수 있겠으나 요즈음에 와서 두가지 형태가 중복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하면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텔의 기능과 규모

기능면에서 사업관계로 이용할 경우와 관광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와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숙박, 휴식, 식사, 유희, 오락, 건강, 회의, 독서, 외식, 쇼핑 등등...을 치루기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 호텔도 있고 중·소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도 있지만 그 규모는 그 도시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고 반드시 크다고 좋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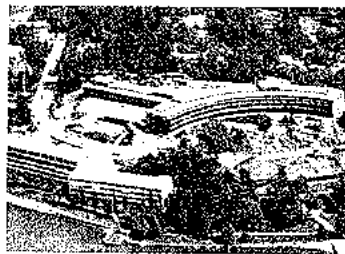
어떠한 규모가 적당한가를 각 나라별로 주요 호텔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면서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표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텔의 규모는 유럽형, 중동형, 아프리카형, 북미형, 남미형 그리고 아시아형의 형태들이 규모면에서 특징이 있다 하겠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 일본을 별도로 취급하여 우리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호텔 건축 방향은 어떠한가를 검토하고 86, 88 양대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준비(대책)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호텔건축의 방향과 개선책을 검토하면서 필자나름대로 개선책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규모면에서 혹자는 대규모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하고 자료를 통하여 보건대 가장 중요한 것은 Marketing이라고 생각한다. 호텔건축이란 상업건축일진대 Marketing을 무시한 설계는 그 자체가 아무리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호텔 건축의 규모는 그것이 세워지는 곳에서의 경제적인 영향영가를 하여야 한다.



Portugal, Lisbon의
Hotel Tivo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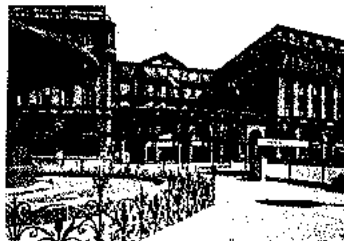
Finland, Helsinki의
Hotel Kalastajatorppa



Netherlands, Eindhoven의
Hotel Cocagne



Spain, Madrid의
Plaza Hotel



W. Germany, Frankfurt의
Steigenberger Hotel Frankfurter Hof



United Kingdom, London
The Tower Thistle Hotel



Brazil, Rio de Janeiro의
Rio Othon Palace Hotel

그렇게 함으로서 적정규모의 호텔건축의 형태가 정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호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정해지면 제일 중요하게 착안하여야 할 점이 관리라고 생각한다. 현대건축에 있어서 상업건축에 속하는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경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비부분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의미에선 호텔건축이란 건축보다도 교통(주차시설),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기타설비를 위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건축보다는 설비에 치중하고 실내디자인과 조경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건축물도 그렇긴하지만 호텔 건축물은 단순히 숙박시설을 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레저스포츠, 오락, 휴양, 집회 등의 커뮤니티의 장소로 보아야 한다. 유럽의 호텔은 소규모의 전통양식의 호텔이 많다. 그곳에선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아무리 작은 호텔이라고 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공간이 준비되어 있어 한결 아늑하고 정감이 넘친다. 그리고 건축물 자체는 낡았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히려 신축한 느낌보다는 고색창연한 인정이 묻어 있는 공간이다. 내부에도 식당과 주방, 화장실과 침실의

분위기 그리고 침대시트는 항상 정결하게 정리되어 있고 손님의 화물과 편의를 위하여 3~4층 미만의 소규모 호텔도 Lift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외부보다도 내부가 더 정감이 흐른다. 우리의 인접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서구분위기를 많이 닮아가고 있고, 또한 전통양식의 숙박시설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규모도 소형, 중형이 골고루 안배되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큰 국제대회가 있다하더라도 숙박시설이 한 건물에 모두 집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실제 선진국의 관광객은 조금 교통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단지 숙박시설의 내외부 환경의 쾌적도가 문제가 된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국의 호텔건축이 규모와 외형면에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해 지는 경향이 있다. 아젠 우리도 호텔 건축이 초보단계가 아니므로 우리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 관리와 서비스에 연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착각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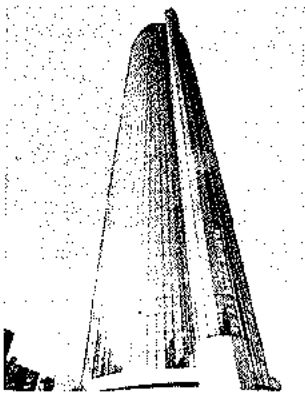
도시의 환경 자체가 개성이 없고 일본과 혼돈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디자인 감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호텔 건축은 일본의 그것과 물리적인 형태와 규모는 거의 비슷하나 상업적인 관리와 서비스 등에서는 뒤떨어져 있다. 대형숙박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 소규모의 호텔건축과 소위 "OO장"과 "OO여관" 등의 숙박시설은 관광객 유치보다는 그 도시인들의 퇴폐행위의 장소로 전용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고 무계획한 Sex-inn이 탄생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히려 얻는 것 보다는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됨으로서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개발에 악영향을 주어 도시 구석에 스텝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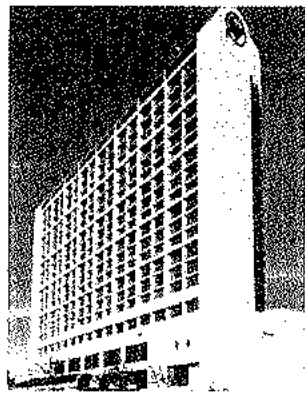
일본 호텔건축의 경향과 우리 호텔건축의 개선점

일본 호텔건축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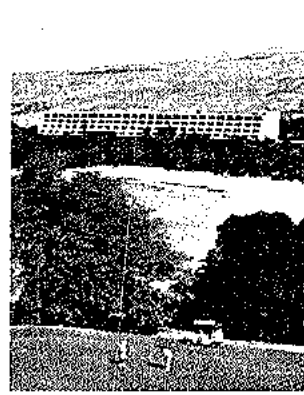
City 호텔의 기능과 Resort 호텔의 기능이 복합 보완되고 자연적인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Business와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교통, 통신을 전제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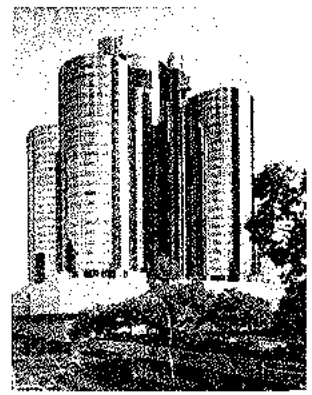
Atlanta, Georgia
The Westin
Peachtree Plaza
1, 078 Rooms



Dallas, Texas
The Westin Hotel, Galleria
430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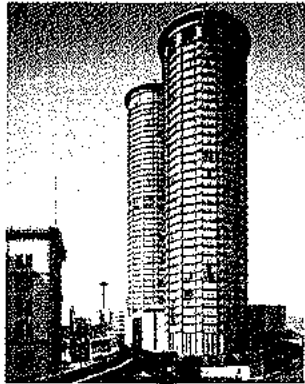
Hawaii, Island of Hawaii
The Westin Mauna Kea
310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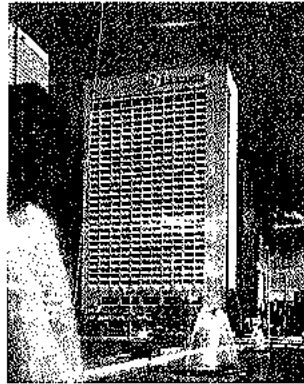
Los Angeles(Downtown),
California
The Westin Bonaventure
1, 474 R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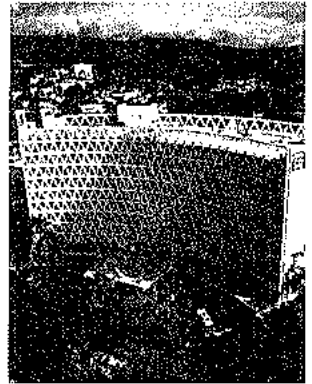
New York, New York
The Westin Plaza
835 Rooms



Seattle, Washington
The Westin Hotel
875 Rooms



Toronto, Ontario
The Westin Hotel
601 Rooms



Guatemala City
Camino Real
400 Rooms

United States(자료 : Westin Hotels Directory 1985)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까지
고객 유치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능면에서도 숙박, 휴양, 건강,
식도락, 모임, 레저스포츠, 국제회의 유치,
시험준비를 위한 장소 제공, 쇼핑 등으로
Marketing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Resort
호텔의 경우는 Seasonable한 사업이므로
전천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PLAN을
짜고 Schedule를 다양화함으로써 고객의
층을 두텁게 한다. 그리고 호텔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Chain화 하는 경향이다.

우리 호텔건축의 개선점

전달한 내용을 전제로 한마디로
Marketing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 방법으로서

첫째 물리적인 형태만 키울 것이 아니라,
둘째 건축물 내, 외부에 위생과
환경디자인에 최선을 다하고,

셋째 경제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설비를 성-에너지 System으로 보완하고,
네째, 의식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 등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호텔 산업과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유도하고,

다섯째 고객의 예약과 친절한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협력업종간에
체인화가 바람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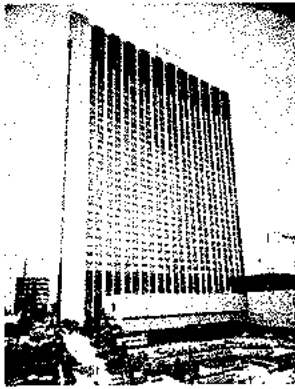
여섯째 인간관계면에서 훌륭한
커뮤니티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 필자의 제언

우리나라와 일본의 호텔의 추세

자료 : JAL PAK 와 SRS Hotel Directory 1985.

국 명	도시명	호 텔 명	규 모		비 고
			방 수	침대수	
한 국	서울	Hotel Lotte	1, 020	2, 000	
	서울	Hotel Silla	700	-	
	서울	Seoul Hilton international	712	-	
	서울	Seoul Praza Hotel	540	-	
	서울	The Westin Chosun	470	-	
	부산	The Westin Chosun beach	330	-	
	경주	경주 Tokyu Hotel	303	-	
	속초	낙산 beach Hotel	137	-	
일 본	동경	Imperial Hotel	1, 135	2, 100	
	동경	Akasaka Prince Hotel	761	-	
	동경	Tokyo Prince Hotel	484	-	
	오사카	Royal Hotel	1, 500	2, 500	
	교토	Kyoto Grand Hotel	577	1, 086	
	교오베	Potopia Hotel	5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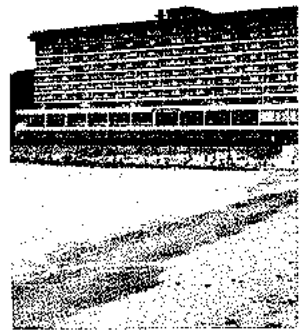
Hotel Lotte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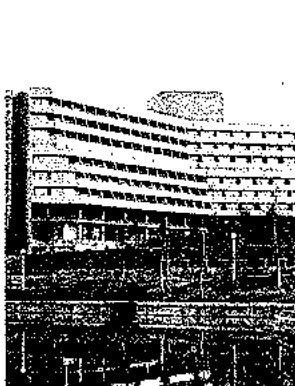
The Westin Chosu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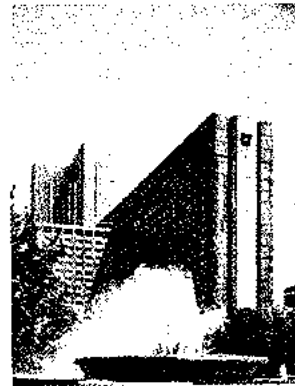
Hotel Silla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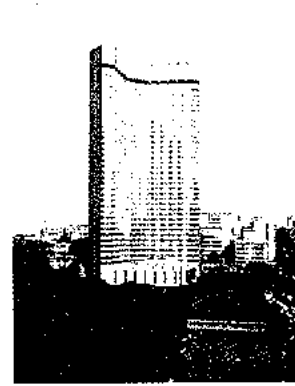
The Westin Chosun beach P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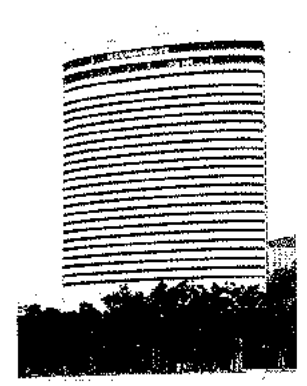
Tokyu Hotel Kyungju



Imperial Hotel Tokyo



Akasakaprinca Hotel Tokyo



Portopia Hotel Kobe



Royal Hotel Osaka



Kyoto Grand Hotel Kyoto

●한국과 일본의 경우(사례)

자료 : S. R. S Hotel Directory 1985
Westin Hotel Directory 1985
JALPAK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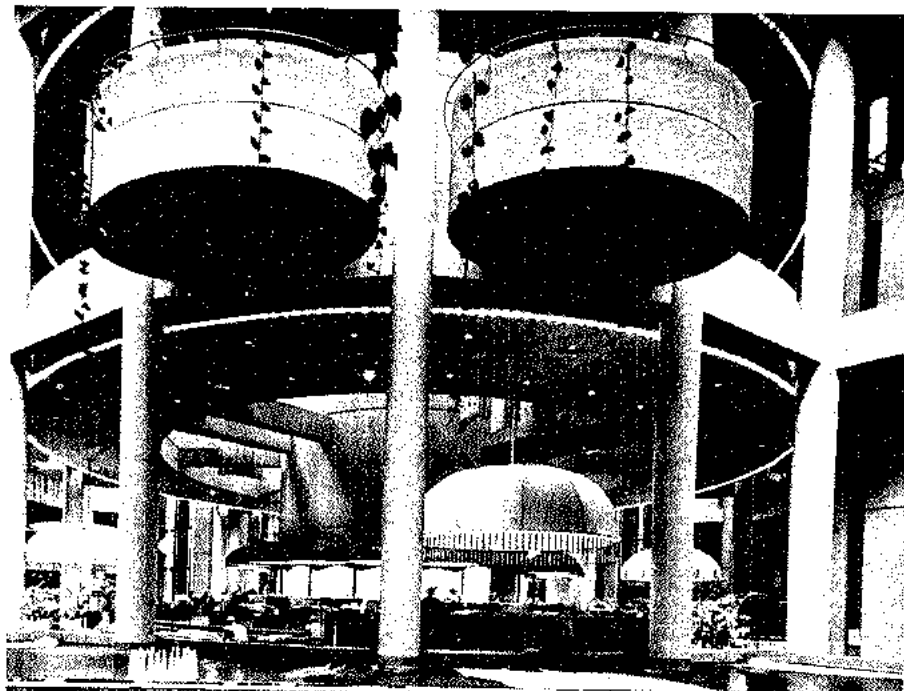
※ 외국의 경우(사례)

자료 : SRS Hotel Directory 1985, JALPAK 1985

지 역 별	국 명	도 시 명	호 텔 명	객 실 수		비 고
				방	침대수	
EUROPE	AUSTRIA	Innsbruck	Hotel Europa Tyrol	131	226	전통양식
		Salzburg	Hotel Österreichischer Hof	120	200	"
		Vienna	Hotel Bristol Wien	128	196	"
	BELGIUM	Antwerp	de Keyser Hotel	117	177	현대식
		Brussels	Royal Windsor Hotel	300	600	전통양식
	DENMARK	Copenhagen	SAS Scandinavia Hotel	550	1,100	현대식
			SAS Royal Hotel	300	500	"
	FINLAND	Helsinki	Hotel Kalastajatorppa	235	467	"
			Hotel Marski	164	297	"
	FRANCE	Deauville	Normandy Hotel	300	422	전통양식
		Nice	Hotel Negresco	158	250	"
		Paris	Le Bristol	237	338	"
	GERMANY	Berlin(West)	Montparnasse Park Hotel	950	1,589	현대식
			Normandy Hotel	120	232	전통양식
			Hotel Steigenberger	400	710	현대식
		Bonn	Savoy Hotel	115	175	"
			Steigenberger Hotel	160	320	"
			Steigenberger Airporthotel	350	520	"
			Steigenberger Hotel Frankfurter Hof	400	600	전통양식

지 역 별	국 명	도 시 명	호 텔 명	객 실 수		비 고
				방	침대수	
MIDDLE EAST	GREECE	Wiesbaden	Hotel Nassauer Hof	160	300	"
		Athens	Royal Olympic Hotel	310	560	현 대 식
		Budapest	Hotel Gellert	240	330	전통양식
	HUNGARY		Hotel Volga	310	728	현 대 식
		Florence	Hotel Villa Medici	100	180	전통양식
		Genoa	Hotel Savoia Majestic	120	200	"
		Naples	Hotel Vesuvio	170	270	현 대 식
		Rome	Hotel Quirinale	200	340	"
			Hotel Bernini Bristol	124	216	전통양식
		Venice	Hotel Bauer Grünwald & Grand Hotel	210	390	"
	LUXEMBOURG	Luxembourg	Grand Hotel Cravat	60	110	"
			Le Royal	170	235	현 대 식
			Grand Hotel Krasnapolsky	360	720	현 대 식
	NETHERLANDS	Amsterdam	Hotel Cocagne	207	312	"
		Eindhoven	Parkhotel	157	267	"
		Rotterdam	Hotel Norge	241	498	"
	NORWAY	Bergen	Grand Hotel	311	525	전통양식
		Oslo	Hotel Tivoli	344	500	현 대 식
	PORTUGAL	Lisbon	Casino Park Hotel	400	732	"
		Madeira (Funchal)	Plaza Hotel	300	580	"
	SPAIN	Madrid	Princesa Plaza Hotel	350	660	"
			Sara Hotel Europe	480	1,000	"
	SWEDEN	Gothenburg	Anglais Hotel	211	380	"
		Stockholm	Grand Hotel	352	535	"
			Gauer Hotel Schweizerhof	100	150	전통양식
	SWITZERLAND	Berne	Hotel International Zürich	350	700	현 대 식
		Zurich	Royal Horseguards Thistle Hotel	284	473	전통양식
	UNITED KINGDOM	London	Royal Westminster Thistle Hotel	136	252	현 대 식
			The Tower Thistle Hotel	826	1,500	"
			Gulf Hotel	240	293	"
			The Sinai	260	480	"
			The Regency Palace Hotel	300	500	"
AFRICA	BAHRAIN	Manama	Kuwait SAS Hotel	216	360	"
		Tel Aviv	Dhahran International Hotel	191	360	"
	ISRAEL	Amman	Red Sea Palace Hotel	270	540	"
		Jordan	The Al Khozama	190	350	현 대 식
	KUWAIT	Kuwait	The Heerengracht	210	310	"
		Dhahran	Protea Gardens	360	700	"
	SAUDI ARABIA	Jeddah	The Boston Park Plaza Hotel and Towers	882	1,318	"
		Riyadh	Ambassador East	278	372	"
	REPUBLIC of SOUTH AFRICA	Cape Town	Berkshire Place	415	500	"
		Johannesburg	The Plaza	900	-	"
NORTH AMERICA	USA	Boston	The May Adams	166	220	"
		Chicago	Claridge Hotel	180	390	전통양식
	ARGENTINE	New York	Hotel Eldorado	80	180	현 대 식
			Rio Othon Palace Hotel	569	1,111	"
	BOLIVIA		Othon Palace Hotel	253	400	"
			Hotel Carrera	324	533	"
	BRAZIL	São Paulo	Unihotel	77	114	"
			Gran Hotel Bolivar	250	480	전통양식
	CHILE	Santiago de Chile	The Hongkong Hotel	790	1,400	현 대 식
		Guayaquil	The Prince Hotel	402	600	"
CENTRAL/SOUTH AMERICA	PERU	Lima	Hotel Bail Beach	600	1,016	"
			Hotel Indonesia	666	973	"
	HONG KONG		The Manila Peninsula	537	804	"
			Goodwood Park Hotel	235	487	전통양식
	INDONESIA	Bail	York Hotel	400	642	현 대 식
		Jakarta	President Hotel	423	656	"
	PHILIPPINES	Manila	The Bangkok Peninsula	389	693	"
			Menzies at Rialto Hotel	243	298	전통양식
	SINGAPORE		The Menzies	441	701	현 대 식
ASIA	TAIWAN, R.o.C.	Taipei				
		Bangkok				
	THAILAND	Melbourne				
		Sydney				
AUSTRALIA	HONG KONG					
	INDONESIA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



천창 (Top vight) 부분까지 개방된 로비공간에서 메라닌층을 두고 발코니 형태의 휴식장을 배치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Bonaventure호텔. (John Portman설계)

Special Edition/Hotel

Interior Design for Hotels

by Cho Sung Ryul

1. 개관

1) 호텔의 새개념

호텔의 단순개념은 숙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기집 밖의 임시생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텔의 기원은 잠깐 묵어가는 나그네의 거처로서 잠을 자고 몇끼를 배우고 갈 수 있는 작은 건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주막, 사원, 여장 등이 그것이며, 서구적으로는 중세기의 바라크(barrack)숙사, 영국의 인(inn)같은 것이 여행자의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 근대 호텔은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다수객실의 확보와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호텔은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규모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의 호텔이 투숙객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개선이 과학적으로 해결되어 왔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숙박시설의 개념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그것에 비해 현대적 호텔은 더 많은 기능을 수용하고 시장확대를 해가고 있음을 보게된다. 즉 숙박, 식음료, 서비스 제공 이외에 도시민의 사교, 오락, 휴식, 업무, 회의, 축제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home away home"의 인간생활 환경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숙박과 식음료판매시설 이외에 시민 광장, 회의장, 유통시설, 점점장, 산책로, 축제장등의 시설이 호텔설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호텔이 기업으로서 재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와 판매증대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대호텔이 투숙객보다 도시민 이용의 비중을 높게 배정해야 하고, 객실로 수입보다 식음료 시설부분의 영업성파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것도 시장확대에 따른 이용패턴의 변화와 호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추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의 호텔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곳인가 하면 대규모 세일을 하는 유통행사장, 절기에 펼쳐지는 문화축제, 예술 공연장으로까지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더욱 시민생활과 근접되고있는 장소로 발전·변화되고 있다. 현대적 호텔은 투숙객 중심의 나그네를 위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쉬고, 즐기고, 일하는 인간생활 공간으로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개인과 소수, 그리고 집단의 새 이용패턴에 맞추어 설계해야하는 건축이 되었다.

2) 인테리어 디자인의 비중

호텔의 기능확대에 따른 실내건축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각 기능별 실내뿐만 아니라 호텔들의 경쟁에 따른 시설내용의 개성화 시대에 적응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용객의 증가와 개발 경쟁에 따른 호텔건축의 대형화와 건축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실내 건축은 더욱더 큰 비중을 갖게 되었다.

호텔건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양상은 업무의 비중, 예산의 배정, 디자인의 내용별로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다. 업무의 비중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3대 이미지의 설정이 일반화되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전문화 작업에 의해 해야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호텔영업에 미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영향이 큰것, 전체 면적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변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세부 업무의 확대등이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배정은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내 건축예산의 새로운 국면은 높은 예산의 배정이라는 것이다. 실내건축의 밀도를 강화해야하는 부분에는 건축설비예산보다 면적당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만 보아도 예산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게된다. 일반 상을 가진 실내의 공사비도 건축의 단가와 맞먹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과거에는 호텔건축예산배정에서 실내 건축은 항목조차 없었던 일이 많은 것에 비하면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달라진 셈이다. 실내건축의 예산배정은 이제 호텔 프로젝트의 기본계획단계에서 부터 취급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호텔실내건축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위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전문 사무실을 별도로 선정하는 경향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내용종류, 우수 디자인의 획득을 위해 전문화 작업방법을 택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전문분야의 세분화와 시스템화의 추세와 같은 것이다. 업무 내용을 충실하게 다져 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패션화 되고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패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 호텔이 생기면 지금까지 보아온것과 다른것이 나타난다. 오래된 호텔은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하여 새 면모를 보여야 하고 많은 호텔들이 빠른 주기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패션화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새 호텔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 한 예로 호텔 프로젝트의 초기에 결정된 실내건축의 기본설계가 공사도중 백지화된 경우가 있다. 전체건설의 공기지연으로 수년이 지나 실내건축을 하려고 보니 초기의 기본설계가 올드패션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는 디자인을 다시하여 새 패션으로 바꾸고 새 호텔 이미지를 살려 완성시킨일이 있다. 시대 감각에 뒤지고 패션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디자인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호텔실내건축이 패션화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것 같다. 첫째는 건축의 패션화에 영향을 받는 일이다. 호텔건축의 변화는 주로 이용계획과 기능종류라고 하는 현대건축의 큰 흐름속에서 조형적 탐구가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의 이해로 부터 시작되며 건축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건축이미지, 인테리어 이미지는 각기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나 궁극적으로는 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패션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중의 기호변화가 인테리어 디자인의 패션화를 촉진하고 있다.사람들은 때때로 살고 싶은 집의 형식과 유형에 대해 골똘히 생각을 한다. 숲속의 집이나 바다가 보이는 해변주택, 누구에게도 침해 받지않는 자기만의 폐쇄공간등으로 인간 생활공간에 대해 생각하는가 하면 건축 양식과 이즘(Ism), 색채와 재료의 변화에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봄의 유행, 가을 패션화는 식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의 빠른 변화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즐겨찾는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패션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2. 인테리어 디자인의 영역

1) 공용공간과 개인공간 (Public space & Room)

호텔건축은 블록플랜과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 그것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으로 나누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용시설과 관리시설부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차등은 공용시설중심부분으로서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호텔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공간이 대상으로 꼽히게 된다.

공용공간은 직접 영업시설과 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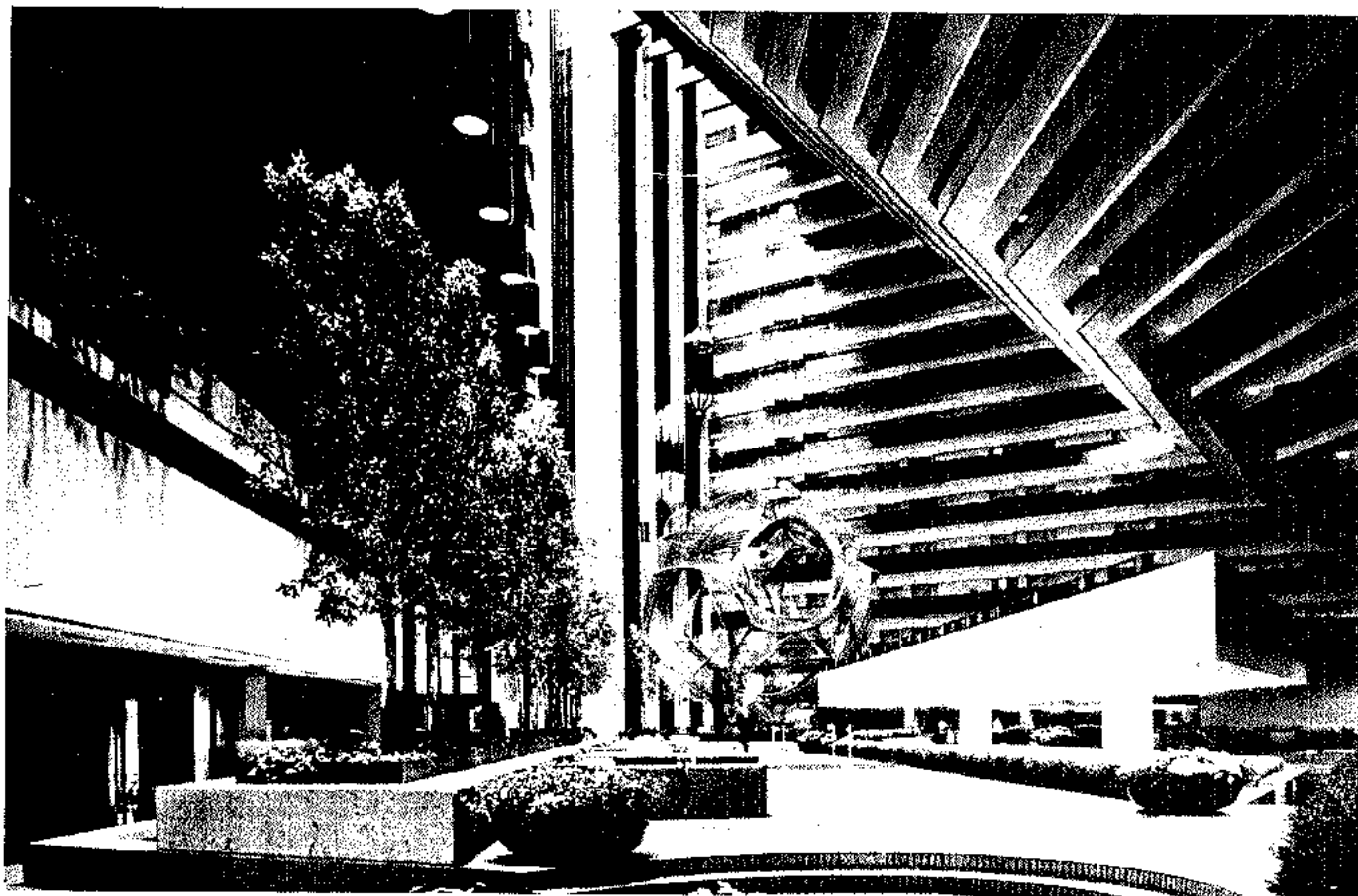
호텔건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양상은 업무의 비중, 예산의 배정, 디자인의 내용별로 각각 생각해볼 수 있다. 업무의 비중은 건축+인테리어 디자인+그래픽 디자인이라고하는 3대 이미지의 설정이 일반화되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로비 라운지, 커피숍, 레스토랑, 바, 연회장, 오락장, 이케이드, 헬스클럽, 사우나, 공연장, 화랑등의 영업장이 전자에 속하며 후자는 현관, 로비, 통로,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프런트 데스크, 벨보이 카운터 등을 포함한다. 부대공간은 직접 영업장 못지않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용공간의 실내건축은 방대한 면적과 그 큰 스케일로 인해 인테리어 매스 디자인으로부터 기능별 세부 공간에 이르기까지 짜임새있는 기본계획이 요구된다.

개인공간은 객실(Room)을 말한다. 블록 플랜(Block Plan)에서 객실부분은 객실시설부분과 분리계획을 하게된다. 객실동, 객실층으로 구분하여 수직, 수평동선을 독립시켜 개인영역을 구획화하는것이 보통이다. 객실동에서 복도, 엘리베이터 라운지, 층별 서비스홀등은 공공부분으로 디자인 하게 된다. 객실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별분류에 의한 유니트·룸(Unit Room)을 중심으로 한다. 즉 수십개 또는 수백 개의 객실을 방의 유형, 층별등으로 분류하여 모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객실의 유형은 싱글(Single), 더블(Double), 트윈룸(Twine Room), 스위트룸(Suit Room), 프레지덴셜룸(Presidential Room) 등이 있으며 그것을 다시 노말(Normal), 다럭스(Deluxe)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스위트룸(Suit Room)과 프레지덴셜룸(Presidential Room)은 면적, 내부시설의 등차를 두어 객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2) 옥외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의 손이 미쳐야할 호텔의 옥외공간은 실내의 연장인 테라스 공간, 야외공간에 배치되는 가든 레스토랑, 옥외공연장, 축제장등이며 나이트클럽,



수목, 흐르는 물, 조각들이 자연광선이 있는 인테리어 플라자에 배치되고 있다. (John Portman의 샌프란시스코 하이아트 리젠시 호텔)

방케트룸 등으로 통하는 외부의 도입 부분에도 흡인력을 갖는 특별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호텔의 옥외공간은 조경적 설계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나, 실내와의 유기적인 관계, 상업공간으로서의 시설충족 측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옥외 공간은 실상 실내공간에 준하는 특별한 설비와 장치가 되어야 하는 곳을 지칭한다. 실내와 연결되고 있는 테라스는 산책과 전망을 위한 곳도 있으나 리조트호텔과 상하(常夏)의 지역에서는 유리창을 열고 실내와의 구분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너 매력적인 공간이 된다. 가든 레스토랑은 특정한 구획을 조성하여 객실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곳이다. 그것들은 위생적이며 청결관리가 잘 될 수 있어야 하고 레스토랑으로서의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객용테이블, 파라솔, 서비스 테이블, 조리장, 편의공간이 필요하며, 조경환경과 조화되는 파고라, 사인, 출입구 형성이 디자인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3) 실내 연출

호텔의 실내연출은 개관시에 시작되어 영업중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의 업무이다. 미술품의 선정과 진열, 호텔행사를 위한 장치장식, 제철장식, 절기와 축제장식, 광고물의 배치, 객실의 표준장식, 테이블 데코레이션등의 업무가 실내연출에 해당한다. 실내연출의 주제 설정과 디자인, 제작 및 현장배치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업무가 전문화 작업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크게는 전체 분위기를 위한 색채계획, 가구집기류의 계획으로부터 세부적으로는 인쇄물, 촛대 등의 소품에까지 손이 미쳐야 한다.

전문분야로는 미술품, 조경 음악, 조명, 직물디자인, 디스플레이 기능이 참여 하는 폭넓은 안목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실내연출도 건축의 이미지, 인테리어 이미지와 깊은 관련을 가지며 전체의 조화를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환경디자인의 체계(Hierarchy)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 로비의 인테리어 디자인

1) 로비의 새개념

호텔이 숙박시설과 투숙객의 식음료제공 이라고 하는 단순기능을 가진 초기에는 로비의 역할도 그만큼 단순했다. 즉 출입구의 형성, 프론트 데스크, 적합한

대기공간의 확보로서 족했다. 로비의 기능 충족을 위한 최소공간, 잠깐 통과하는 작은 홀 이라고 하는 종래의 로비는 이제 전혀 생각할 수 없을만큼 그 개념이 달라졌다.

현대적 호텔의 로비가 보여주는 새 양상은 거대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좋은호텔, 최신의 호텔일수록 로비공간의 비중이 큰 현상을 보이고있다. 로비공간의 확대경향은 존·포트만(John Portman)의 건축에서 더욱 잘 간파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이아트 리젠시, 시카고 오페라(O'Hare)공항부근의 하이아트 리젠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Bonaventure Hotel은 포트만의 선각자적 구상을 실현한 곳으로서, 호텔 에서 로비의 새 개념을 구현한 표본이라고 하겠다. 현대적 호텔이 여행객 중심의 시설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이나 일반시민을 위한 휴식, 집회, 오락시설이라고 하는 새 의미를 호텔로비 에서 직감할 수 있게 계획한 것이다.

호텔의 로비는 호텔의 관문이자 광장 으로서 제반기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호텔의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중심이자 기능의 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적 로비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인테리어 플라자를 형성하고 나무들과 흐르는 물, 산책과 휴식장, 조각 전시장, 공연무대, 자연광선도입 등을 특별 시설로 하고있다. 호텔의 변화와 함께 호텔로비의 개념이 크게 달라졌으며 복합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로비는 찾아온 손님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호텔의 전체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계획이 요구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2) 로비의 기능

호텔의 기능적 영역은 공공부분, 숙박부분, 관리부분의 3가지로 분류된다. 호텔의 로비는 공공부분에 속하며 호텔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다. 로비의 기능은 복합적 특성을 갖고 세분화된다. 그러나 이것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출입: 주출입구, 부출입구, 각부분 출입구, 통로, 홀, 프론트 데스크, 서비스 카운터 등.
- ② 휴식: 로비라운지, 대기장, 접견장, 벤치, 산책로, 전시공간 등.
- ③ 식음료: 커피숍, 레스토랑, 비동.
- ④ 집회장: 리셉션홀, 공연무대.
- ⑤ 쇼핑: 상점, 이케이드, 쇼룸 등.

호텔로비의 기능은 블록플랜과 전체평면 계획에 따라 조금씩 배분을 달리할 수 있으나 넓은 공간에서 다기능의 수용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바람직하다. 로비가 호텔의 중심이 되고 로비에서 호텔의 제기능이 분화되는 현상은 7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호텔건축의 변모이다. 숙박과 같은 단순기능 이외의 모든 기능들이 로비와 그 주변에 배치 됨으로써 호텔이 활가에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3) 로비의 배치와 디자인

호텔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고층부에 숙박을, 저층부와 지하실에는 공공시설, 서비스 시설을 두고있다. 그것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동선의 문제와 큰 공간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텔의 위치와 환경에 따라 그 배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거대한 로비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고층부까지 로비공간을 확대하여 천창을 둘 경우 로비가 보다 쾌적한 플라자가 될 수 있으며, 진입부가 고지대에, 숙박부분이 낮은 대지에 배치될

때(비치호텔같은 경우)에는 로비공간이 상부에 배치되기도 한다. 저층부의 전개 방식에 따른 로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상향식: 메인로비를 중심으로 2층 또는 지하층에 또다른 로비(upper lobby, lower lobby)를 배치하여 2개층이 단일 공간의 효과가 생기도록 에스컬레이터 또는 장식적 계단을 두는 형식이다. 로비의 공간확대를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배치방법이다.

② 하향식: 메인로비 아래층에 저층로비(lower lobby)를 두는 형식으로서 저층에 대형 연회장, 아케이드, 식당들이 배치되는 경우에 유리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경사진 대지에서 진입부를 메인로비와 저층로비에 각각 따로둘때 적합한 배치유형이다.

③ 수평식: 로비의 형태가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방식으로서 단일층에 로비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모든 공공시설이 연결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출입구를 다방향으로 배치시켜 동선의 혼잡이 없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절충식: 다층 로비의 배치방식으로서 메인로비를 중심으로 그 상하층에 공공 시설이 전개된다. 로비는 각 층에서 분리되어 복층구조를 이루는가 하면 3개층이 개방되어 확산구조의 공간감이 생긴다. 제한된 건축면적안에서 토지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형, 도심형 호텔에 적합한 로비의 배치방식이다.

이상과 같은 로비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로비의 공간확대이다. 로비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넓고 트인 시원한 공간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착안해야 한다. 주어진 건축, 제한된 면적에서 공간을 확대하려면 개방공간을 생각해야 한다. 로비의 제기능 충족을 위해서 각기 차단벽을 둔다고 하면 답답한 실내가 될 수 밖에 없다. 공간의 확대는 기능의 통합을 통해 가능해진다. 로비의 제기능들을 몇개의 그룹으로 묶어 개방하여 통합공간화 함으로써 넓은 로비를 확보하게된다.

로비의 배치에서 두드러진 또하나의 경향은 옥외공간과 연결된 로비이다. 즉 로비공간을 준 옥외공간화 하여 쉬운 근접, 친밀감, 조경공간화, 대기권의 근접효과를 꾀하는 일이다. 로비를 글래스 하우스화 하여 대형 온실과 같이 디자인 하는 경우, 옥외정원이 실내에서 바로 보일 수 있는

호텔이 기능적 영역은 공공부분, 숙박부분, 관리부분의 3가지로 분류된다.

호텔의 로비는 공공부분에 속하며 호텔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된다. 로비의 기능은 복합적 특성을 갖고 세분화된다.

경관의 배려, 실내조경중심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도입한 로비등이 준 옥외공간화의 시도로 평가되는 방법이다. 옥외공간과 연결된 로비, 준옥외로 평가되는 로비는 다음 세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공간의 확대감이다. 대부분의 실내공간은 벽과 천정으로 막혀있는 차단공간으로 인식된다. 창과 개구부로 보이는 외부 공간은 그 제한성으로 인해 가슴을 펴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에 비해 대형창 또는 글래스하우스로된 로비는 바로 외부공간과 시각적 연결이 됨으로써 확대 공간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연환경의 확보이다. 대기권의 자연-하늘과 땅, 산과 바다, 나무와 돌, 눈과비-를 그대로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특성을 갖게된다. 호텔의 개인생활 영역인 룸에서 담담할때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한다. 현대적 호텔로비는 실내의 산책로가 되고 있다. 그것은 로비가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기때문이다.

세째는 특별한 경관을 조성하는 일이다. 개방화한 거대한 로비속에서 여기저기에 배치된 공공시설들과 오가는 사람들, 앉아서 담소하는 인간의 만남들이 로비의 경관요소가 되어 더욱 잘 채워진 인간생활 환경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로비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인간의 삶을 보다 값진 것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간욕구의 소재를 파악하여 기능적이며 감성적인 공간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4.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디자인

1) 커피숍

호텔의 커피숍은 투숙객외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항상 붐비는 장소로서 호텔객용시설의 중심이자 호텔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곳이다.

호텔의 커피숍은 일반커피숍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일반 커피숍들 가운데도 영업성격이나 객실구성, 인테리어, 객단가 등에 있어 서로 양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형분류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 커피숍들은 영업 형태나 그 기능에 있어 호텔 커피숍과는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반 커피숍들은 '커피숍'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표방하는 반면에 호텔의 커피숍은 그 구성 내용이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즉 호텔커피숍은 coffee shop, restaurant, bakery, cocktail, lounge 등의 역할을 해야하고, 영업시간도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하거나 혹은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또한 coffeeshop의 객단가도 호텔의 어느 시설보다 낮게 책정하여 객용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야하며 인테리어적 특성도 일반 커피숍과는 구분되는 '호텔커피숍'이 되어야 한다.

호텔커피숍의 인테리어 특징은 객용 시설의 중심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텔 커피숍은 원래 투숙객의 편의시설로 생긴 것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호텔시설의 필수조건이 되어, 매력적인 커피숍으로 꾸며 호텔의 이미지를 높이고 커피숍 자체의 판매고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호텔 커피숍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착안해야 한다.

첫째는 커피숍의 배치이다. 호텔 커피숍은 호텔내에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주출입구와 로비에 인접된 곳, 고층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홀과 가까운 곳, 객용시설이 레스토랑과 아케이드에 근접한 곳, 호텔 외부에서 독립된 출입구를 가질 수 있는 곳 등이 적합하다.

둘째는 커피숍의 평면구성이다. 호텔 커피숍의 평면은 복합적인 영업성격에 적합한 구성이어야 한다. 그 구성방법에는 손님인 위위적으로 구분하여 서브할 수 있도록 좌석을 따로 배치하는 방법과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coffee lounge와 bar counter를 restaurant과 분리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자는 코너 코너를 다양하게 원홀(circle hall)의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다. 또는 개방된 넓은 홀에서 공간별 격리가 없더라도 테이블 셋팅으로서 coffee shop과 restaurant을 자연스럽게 구분시킬 수 있다.

세째는 커피숍분위기에 있다. 커피숍 분위기의 특징은 개방형 실내와 부담을 주지않는 실내연출, 서비스 시스템의 능률성 배려 그리고 호텔 이미지와 격조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에서 찾게된다. 커피숍의 분위기는 호텔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호텔영업에서 주요한 판매소구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 분위기는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그 공간이 갖는 독특한 인테리어적 특성을 느낄 수 있어야겠다.

2) 한식당

기존의 한식당 이미지는 흔히 생각되는 좁고 답답한 집에 안방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양식당이나 중국식당과 마찬가지로 한식당도 서구적인 실내 분위기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식당 분위기에 있어서 국적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식당이 갖추어야 하는 본래의 환경을 만들고 현대인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적 홀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식당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식당으로서의 특징이 약하다는 점과 실내공조의 문제 등이 있다. 특히 호텔내의 한식당은 현대건축의 특성을 지닌 다른 실내공간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쳐 자칫 잘못하면 한식당인지 양식당인지 잘 구분이 안가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한식당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부딪치게 되는 난점은 한국건축미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또는 전통건축의 어떤 부분을 실내 연출의 모델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호텔 한식당에서 한옥 연출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마루방과 인돌, 안채, 사랑채 등을 실내의 모델로 삼고 거기에 덧붙여서 입식과 좌식의 정리, 실내조명과 장식 조명의 혼용, 창호에서 한지와 유리의 혼용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즉 호텔의 한식당은 우리전통음식을 서구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인 식당의 구비요건과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3) 중국식당

일반적으로 중국식당은 중국특유의 맛을 풍기는 개성이 강한 독특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인테리어는 강한 원색의 사용과 복잡한 고전문양, 동양화, 한자

등을 소재로 하여 실내를 구성하였으나 그 이미지는 현대인들에게 호응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이유는 그 소재가 낡은 유물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전문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음식점에 가보면 복잡한 문양에 화려찬란한 적색과 금박을 입힌 형태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현대인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에는 이미 낡은 것들이 되었다. 그리고 디자인의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중국 음식점들은 전문화 작업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식견과 안목에 의해 몇몇 기능공들이 꾸미기도 했었다. 따라서 중국음식점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혼란하고 조잡하여 사람들에게 어필(appeal)하지 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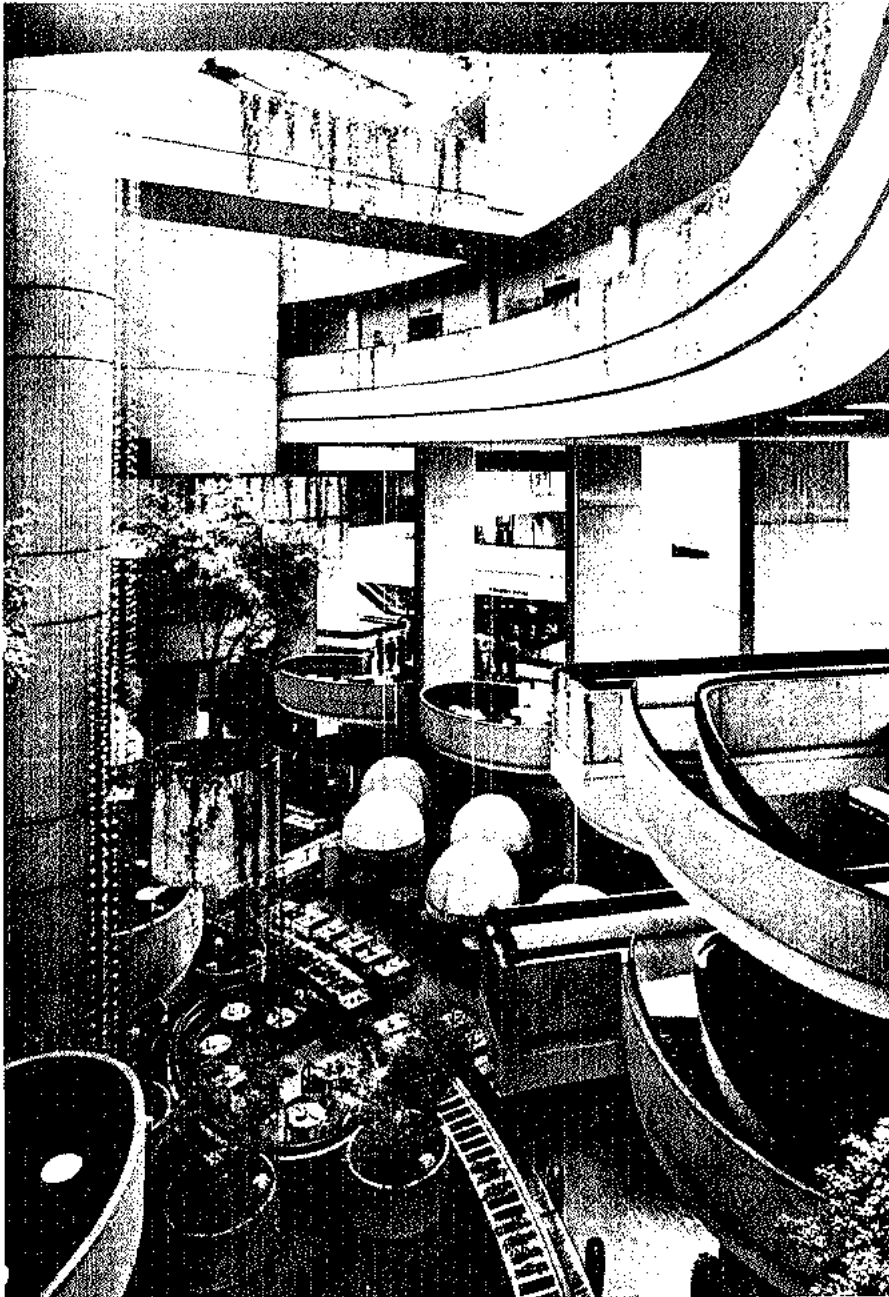
현대에 와서는 중국음식점들이 western restaurant 형태를 도입하여 두가지 양식이 혼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종전의 중국식당의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유념해야 할 것은 아무리 현대적인 중국 음식점이라해도 그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반드시 살려 전통성과 현대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현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야 하고 그안의 장식적인 요소에 그 나라 고유의 특성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일식당

호텔의 구성요건인 레스토랑을 잘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상품·서비스 등에 유념해야 한다. 일식당의 내부공간은 일본적인 진수를 표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비교적 쉽고 단순한 인테리어디자인으로 실내 이미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다른 레스토랑과 마찬가지로 일식당에서도 환경측면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건축의 전통미에 현대적인 인테리어감각을 가미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목재를 주내장재로 사용하고 창호·조명·도입부의 마감처리, 방의 구석과 그밖의 마감재료 등에 일본의 전통미를 살리도록 하고 바닥이나 천정, 간접조명방식, 넓은 전망창 등에는 현대적인 인테리어 요소를 적용시키는 것도 좋다.



원형의 개방공간에 군데군데 배치된 휴식장들이 전체의 경관을 이루게한 로스앤젤레스의 Bonaventure호텔 (John Portman 설계)

일식당의 평면구성은 크게 객실과 개실, 초밥카운터, 튀김코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식당의 주매뉴인 초밥과 오뎅류를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스탠드 코너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일식당 또한 이러한 인테리어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내환경이 좋고 인테리어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정갈스런 음식과 마음으로부터의 서비스가 없다면 식당의 분위기는 원이하게 달라진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4차원연출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5) 부페식당

부페(buffet)는 '손님이 손수 그릇에

담아먹는 간이식당'을 뜻하는 말로서 요즘 들어 가족의 외식장소로서 혹은 바쁜 도시민들에게 부담없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호텔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저마다 독특한 메뉴를 내세워 부페식 레스토랑을 마련하게 되었다. 독특한 메뉴란 주로 갈비와 불고기를 중심으로 한 한식부페와 양식부페, 멕시코와 이태리 요리를 결들인 부페, 그밖에 주력 메뉴만을 갖춘 간이식 부페 등 그 종류와 양상이 다양하다.

이러한 부페식 식당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형화한 일반음식점을 보다도 더 실리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페식 식당은 그리 고급스러운 곳이 아닌 대중

기호를 충족시켜 주는 실리적인 레스토랑이다.

그외 부페식 식당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란 식욕을 돋구는 음식의 진열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겠거니와 개인의 식성에 맞게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즐거움, 풍부한 음식을 봄으로써 얻는 만족감, 또한 자유롭게 음식을 가져다 먹는 self Service의 즐거움 등이 있다. 따라서 buffet식당을 계획하려면 위와 같은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는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리장과 즉석조리 서비스가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며, 객석과 음식차림대가 분리되면서 유기적인 동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리장과 차림대 사이에 조리사가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부페식당의 특징을 잘 대변해주는 요리의 진열효과이다. 진열효과는 진열대의 적합한 위치선정, 음식의 분류와 배치, 상차림의 연출효과등에서 얻을 수 있다. 특히 상차림을 할때 주위할 것은 찬 음식과 더운음식을 구분하여 원형보존하는 것과 즉석조리 서브장의 장식이다.

셋째는 부페식당의 분위기 조성이다. 부페식당은 호텔내에서도 그 비중이 높아져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화 작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분위기 또한 개성적이고 품위를 지닌 레스토랑으로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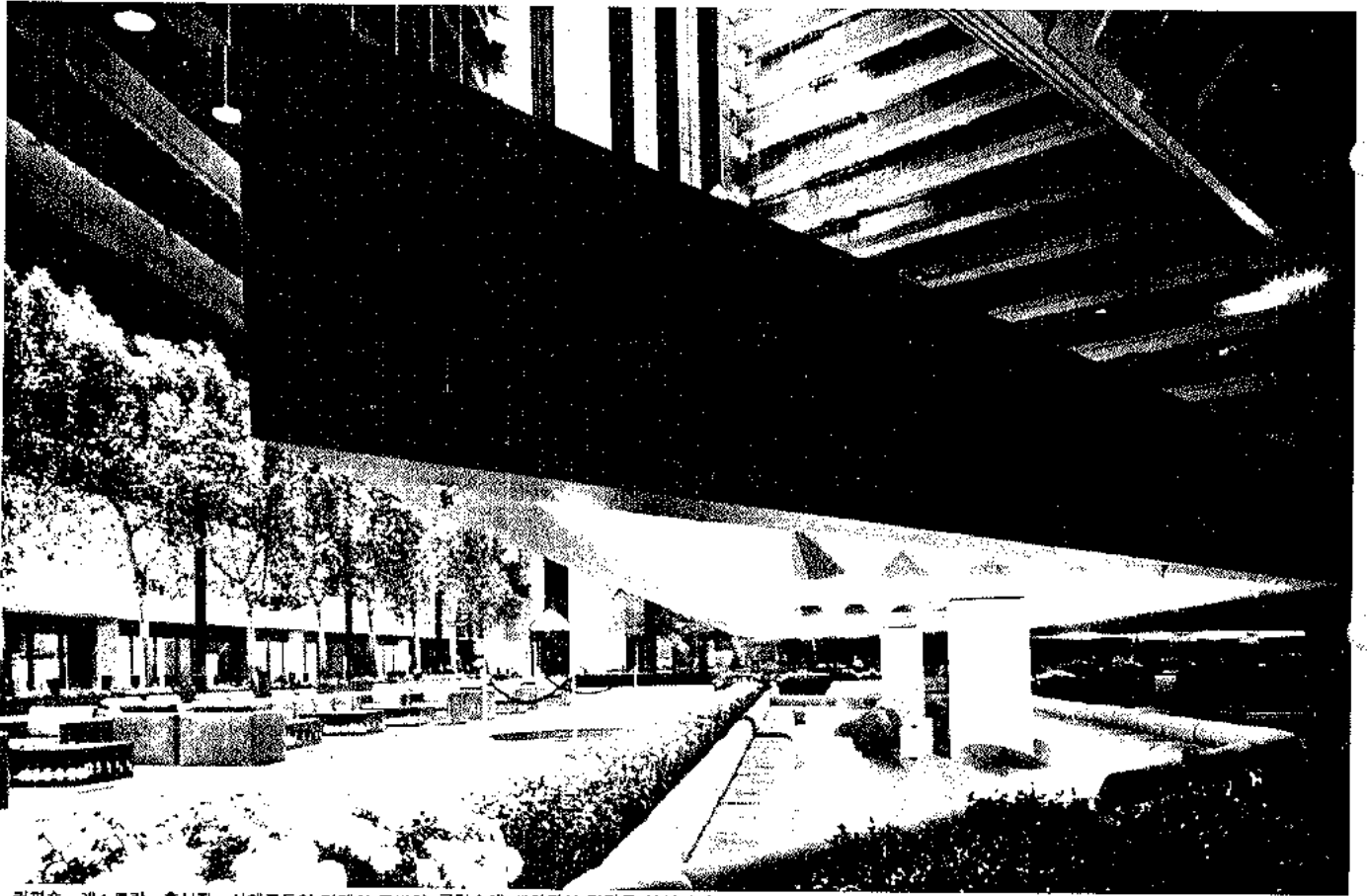
5. 상업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

1) 호텔속의 상점가

호텔에 속한 상점은 호텔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시작된 작은 집합상점은 것이었다. 그것이 치츰 발전되어 여러개의 상점으로 늘어났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상점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대호텔이 대형화되고, 복합건축으로 발전하면서 호텔속의 상점가는 주요유통 시설로 다루어지고 있다. 호텔사업일환으로 계획되는 아케이드가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효율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환경은 판매시스템과 소매업유형에 따른 특성을 각기 가지게 된다. 전문화 시대, 개성화시대, 대량판매에 적합한 판매장시설을 해야하는 것이다. 호텔의 아케이드, 판매정책에 따른 점적(store



커피숍, 레스토랑, 휴식장, 신책로등이 거대한 로비의 공간속에 배치되어 경관을 조성시키고 있다. (John Portman 설계, 샌프란시스코 하이아트 리젠시 호텔)

personality)과 형태(store image)의 특성을 갖게된다. 호텔사업자체가 지향하는 최고의 시설, 쾌적한 실내분위기, 서비스의 확충은 그것이 호텔의 아케이드에도 미치고 있다. 즉 판매환경시설의 고급화, 품질 중심의 상품, 친절한 서비스 등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호텔출입객이 아케이드의 객층형성을 한다는데서 A급 상업시설을 한다. 호텔 상점가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러한 호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업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
상점의 설계는 판매효율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한다. “매력적인 환경이 더많은 거래를 유도한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해주기 위한 많은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다. 또 “상업건축”중에서 가장 상업적인것은 상점(store)인데 그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상되고, 편성되며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점이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제임스·S. 혼백이 그의 저서「상업공간디자인」에서 쓴말이다. 상점설계의 직접목적은 판매증대에 있다. 문화생활권 형성은 간접목적에 해당된다. 호텔상점가 설계를 위한 판매증대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판매점의 근대경영정책

상점경영의 요건으로는 근대화(modern) 정책, 상품화(merchandising) 정책, 조직관리(methods)가 있으며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인적요소(man), 능률을 위한 기계화(machine)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자동화(store automatic)시대를 맞고있어 이에따른 상점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② 구매심리의 5단계: 상점의 설계와 진열에 있어서 AIDMA법칙을 생각해야 한다. 단계별 구매심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Attention. 주의

I: Interest · 흥미

D: Desire · 욕망

M: Memory · 기억

A: Action · 행동

③ 판매장 설계의 방침수립: 상점은 상품을 담은 그릇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은 요리가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좋은 상점은 상품을 돋보이게 하고 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상점은 단적으로 광고 매체가 된다. 광고매체로서 구매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시각요소들이 집결되도록 해야한다. 상호, 심볼, 로고타입, 판매 소구점제시등 상점설계를 위한 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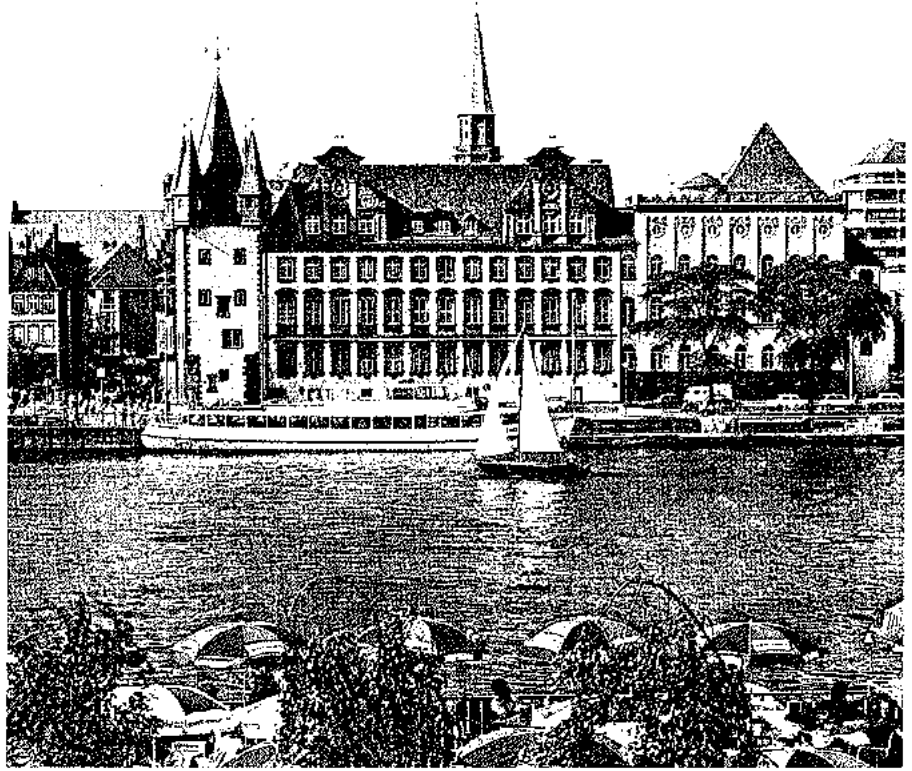
(design polish), 디자인 이미지를 정리해야한다.

④ 근접의 용이성: 판매와 연결시킬 수 있는 상점은 우선 쉽게 근접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방형 평면계획, 시각적 연결(open view), 노출진열의 경향은 손님과 상점사이를 좁히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상점의 인상에서 근친감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다.

⑤ 디자인의 시대성: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것이라 해도 그것이 유행도 패션이면 사람들이 외면하게 된다. 상점 디자인은 최소한 우리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보다 앞선것이 바람직하다.

⑥ 디자인의 통일성: 상점의 3대 이미지는 건축 이미지, 인테리어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이다. 상점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면 단순화원리, 일관성의 시각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형태, 색채, 재료 등의 디자인 요소가 정리되어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⑦ 동일성: 경영전략에 있어서 동일성 부여는 디자인 통합작업에 의해 하게된다. 다점화 하는 상점, 연쇄상점가등에서 시각 법칙에 따른 동일성이 쉽게 나타나도록 해야한다.



유럽기행

Around Europe

by Oh Jea Young

필자가 이곳 제주도에서 사무소를 개설한 때가 지난 '83년 8월 24일 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지부에서는 동남아지역 건축계 시찰을 위한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꼭 참여하고 싶은 필자의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으나 생소한 지역에서 개입한 때이라 주변부터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지부회원 13명 (홍진호 사무국장 동행)이 동남아 일대를 돌아보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필자는 이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꼭 한번쯤은 해외 나들이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이러한 바람은 현실로 나타났다. 제주지부에서는 유럽지역 건축계 시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86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8박 19일동안 지부회원 13명이 유럽지역 여행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나는 난생처음 해외 나들이에 긴장되고 가슴이 부풀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유럽 8개국 17개 도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 남의 나라를 부족한 영어실력과 식성 및 잠자리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장기여행을 보다 보람있고 추억에 남을 유익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2월 20일 오후 5시 4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안내원을 포함한 우리일행 15명을 탑승시킨 Air rance 소속 747 점보기의 육중한 기체가 하늘을 나르기 시작했다.

423명을 태우고 무려 20여 시간을 비행하며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2월 21일 새벽 5시(현지시간) 우리들의 첫번째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는 매혹과 향수의 도시 파리! 파리는 정녕 무한한 매력과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도시인 듯 하다. 오랜 역사적인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노블담을 비롯해서 피카소, 등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들이 창작을 나누며 대화를 즐기던 라르몽트 나방, 록센브르고, 공원, 솔본느대학, 땡배옹 성당, 일리리 공원, 나폴레옹 전승 기념탑, 마드레드 성당과 콩고드 광장,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이유 궁, 이방기르드가 설계한 현대건축물의 결정체 땡배두 국립예술문화센터, 프랑스 화가들의 광장이며 낭만이 깃든 몽마르트 언덕과 성심성당,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프랑스에는 건축문화를 비롯한 관광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을 비롯한 온갖 서구문명의 발원을 이루는 프랑스는 남쪽으로는 꿈과도 같은 지중해의 해변이 펼쳐 있고 북쪽으로는 영국과 마주한 도버해협이 프랑스의 비옥한 땅을 속속들이 적시고 있다.

프랑스는 옛것과 새로운 것, 가벼운 것과 심오한 것, 이 모든 것을 품안에 지니고 있는 파리의 모습에 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옛 것들 사이로 최첨단을 자랑하는 떼제베(T. G. V)가 달리고 초음속 비행기 “콩고드”기가 그 위 하늘을 자랑스럽게 날으는 파리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연출해 내는 예술행사가 수없이 열리고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격언들이 새삼 실감을 느낀다.

파리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두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으로 향했다.

2월23일 2시 55분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 정열의 나라라고 한다.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의 여름이라 건조하고 가뭄이 계속되며 맑은 하늘과 태양만이 내려 쏘인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철로 우기이다. 1년간 총 강우량이 70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물의 웅덩이라는 아랍어에서 근원된 것으로 지하수가 풍부하며 7년간 비가오지 않아도 수도를 걱정이 없다고 한다.

투우나 플라멩고 춤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것이다.

스페인 왕궁은 궁실이 1,250개나 되며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궁전은 바닥과 벽에는 1,280개나 되는 양탄자가 장식되어 있고 바탕 그림은 고아가 그랬다는 화려한 양탄자가 잘 보존되고 있었다. 각 방마다 순금으로 만든 금시계며 금과 그리고 3.8ton의 금을 녹여 만든 왕관형 탁, 수십만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구리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순금으로 만든 산데리아 등은 감탄사가 연발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스페인의 아름다운 행사는 고도 도레도성, 2000년전에 세워진 이 고도는 1516년부터 지금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800년동안 아랍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아랍문명의 영향을 받아 아랍형의 건축양식이 눈에 많이 띄었다.

2월25일 마드리드 공항을 출발 스위스 제네바 공항을 경유하여 세번째 방문국인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그리스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철학과 수학이 발달하였고 초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된 곳이다. 우리들은 고대문화의 발상지에 와서 2000년전 고대건축양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

있고 보람된 일임을 느꼈다.

올림피아 스타디움, 지파온,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신전과 아크로폴리스, 나이키 신전 등 고전도 섬의 고대건축물의 유적들을 돌아보고 그리스 건축시험회를 방문하여 영국 건축사업부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했고 그리스 건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리스에는 약 20,000명의 건축사가 있는데 그 절반이 여자건축사라고 한다. 그리스의 건축허가 절차는 설계착수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주위의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하고 건축심사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아테네의 건축색은 우선 느끼는 인상이 색채가 전체적으로 회색과 백색으로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안정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네번째 방문국인 영원한 문화유산의 도시 로마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었다. 이곳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베드로 성당이 우선 시야에 들어온다. 부라반테 라파넬, 시모네티 미켈란젤로 등이 설계한 이 건축물은 140년간에 걸쳐 완성된 건축물로 성당내부 길이가 186.36m 외부 전체길이가 200m가 넘으며 최상단의 높이가 140m, 돔의 직경 43m인 석조 건축물로서 성당 천정의 벽화는 미켈란젤로가 4년간 천정에 매달려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걸작품이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었다.

중세까지 모든 예술과 정치, 행정, 건축, 학문을 발기시키고 총집하였던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전세계를 통치하며 절대군주처럼 도도하고 오만했던 무적의 로마가 아닌가.

영화 “쿼바디스”에서 소개된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그 일부가 훼손되었음에도 그 웅장한 자태를 버티고 서 있다. 큰 직경이 188m, 작은 직경이 156m 주위가 527m 80개의 홍예문을 갖고 바깥 기둥의 높이가 57m나 되는 타원형 4층 원형경기장은 5만명에서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원형 경기장이며 천정은 햇빛 가리개용으로 비단천막까지 칠 수 있는 장치가 그당시 로마의 건축기술이 얼마나 웅대하고 뛰어



그리스에서 오른쪽이 필자

났는지 탄복할 뿐이다.

네로 황제가 즐겨 찾던 콜로세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의 예술적 정열과 진수가 응축된 산파에트로사원 로마의 열이 담긴 판테온,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거했던 지하묘지 카타콤베, 1,000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고대 로마의 목욕탕 카리칼라 욕장, 암마누엘 2세 기념관 네로황제 등 고대 로마 귀족들이 살았던 팔라티노 언덕, 그레고리피와 오드리헵번이 열연했던 “로마의 휴일”에서 나왔던 트레비 분수와 진실의 입 등 수많은 유적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과 같이 로마를 하루에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일행은 다시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는 나폴리를 둘러보고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고대도시 폼페이를 둘러보고 살렌토를 볼 예정이었으나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서운한 마음으로 속속인 VILLA PAMPHILI HOTEL로 돌아 왔다.

3월 1일 5번째 방문국 스위스로 향했다. 스위스에서 베덜란드까지는 전세 관광버스로 가게 되어 있었다.

3월2일 전세 관광버스로 해발 2,132m 정상에 오를 필라투스산을 향했다. 국민소득 1만 5천불이 넘는 스위스는 도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리히에서 약 80km 저점에 있는 필라투스산은 루체른에서 4인승 케이블카로 설정과 기암절벽을 따라 웅장한 올라가 현대기술의 대담성을 이용한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험한 암벽을 따라 정상에 오르게 된다. 정상에는

현대식 건물로 된 호텔과 레스토랑, 휴게소, 등을 갖춘 3층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돌아오는 길에는 루겐호수에 둘러 청동오리, 백조 등 수 많은 철새들이 놀고 있는 호수를 관광하고 주리하에 돌아와 한국인 교포가 경영하는 식당 서울집에서 불고기백반으로 저녁식사를 하다보니 고향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친다.

3월 3일 오늘은 스위스 3대 건축설계사무소의 하나인 "슈터슈터"라는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종업원이 670명이나 되고 6층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6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맡아 처리하는 아주 큰 설계사무소였다. 기계설비부에는 한국인 이종진씨가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서 소상하게 현황을 청취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고 앞으로 상호 기술협력과 정보교환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곳 설계사무소에서 마련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방문국 독일을 향해 버스는 달렸다. 라인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와 군데군데 높은 언덕에는 옛 성주들이 살던 고성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라인강의 물결을 가르며 화물선과

유조선들이 수없이 지나간다. 2차대전의 참패로 폐허가 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점으로 다시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발전한 독일! 단결심이 강하고 근면 검소한 독일민족! 또다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루 행사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에 들어 페테의 생가와 시가지를 돌아 보았다.

3월 5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 다시 7번째 방문국 네덜란드를 향해 버스는 달렸다. 6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며 독일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3월 6일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 도착하여 민속촌을 돌아보았는데 풍차와 네덜란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겨자, 치즈, 나막신을 만드는 수공업과 낙농인들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국립박물관과 바다를 막아 호수를 만든 어촌 마을을 돌아보고 운하를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암스텔담 시내를 둘러 보았다.

3월 7일 암스텔담을 출발 헤이그에 도착 이준열사의 묘지에 참배했다. 또한 이곳에는 네덜란드의 행정부가 있고 국제사법 재판소가 있어서인지 외국

망명객이 많은 도시였다. 여기서 다시 항구로 가서 런던을 왕대하는 호화여객선 웨리호를 타고 약 6시간을 항해하며 영국에 도착하였다.

3월 9일 영국에서의 행사는 67만명이나 되는 하이드 공원을 먼저 찾아왔다. 제1회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공의 동상이 있으며 알버트공이 통치할 때 세계의 4분지 1을 식민지화하여 대영제국을 이루었다.

버킹검궁을 돌아보고 템즈강변을 따라 영국시계탑 위터루 다리 등을 지나 런던성과 대영박물관을 둘러 보았다. 오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윈저궁을 방문하고 여행의 마지막 밤은 템즈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템즈강변의 런던 야경을 구경하였다.

3월 9일 아쉬움과 지루한 여행은 끝났다. 새벽 6시 런던공항을 출발 파리, 앙카라지, 동경을 거쳐 조국 서울에 도착하니 지난 몇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조국 서울의 거리 그리고 고층건물을 비롯한 모든 풍물들이 새롭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제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제 5 회 대한민국건축대전(1986년도) 작품공모 및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전시내용 및 출품기간

구 분	전 시 기 간	원 서 교 부	작품접수기간	접 수 시 간
초 대 전	86. 11. 25~12. 4	-	1986. 11. 23	10:00~18:00
일반공모전	86. 11. 25~12. 4	86. 6. 5~7. 5	1986. 11. 22	10:00~18:00

- 원서교부처 : 한국건축가협회사무국
- 작품 접수 : 한국현대미술관(동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5-1 덕수궁내
752-7206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동관)

출품자격 및 대상

- 대한민국국민
-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실내디자인·조경·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련되는 작

품을 포함) 이야기 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명의로는 3안을 초과할 수 없음.

작품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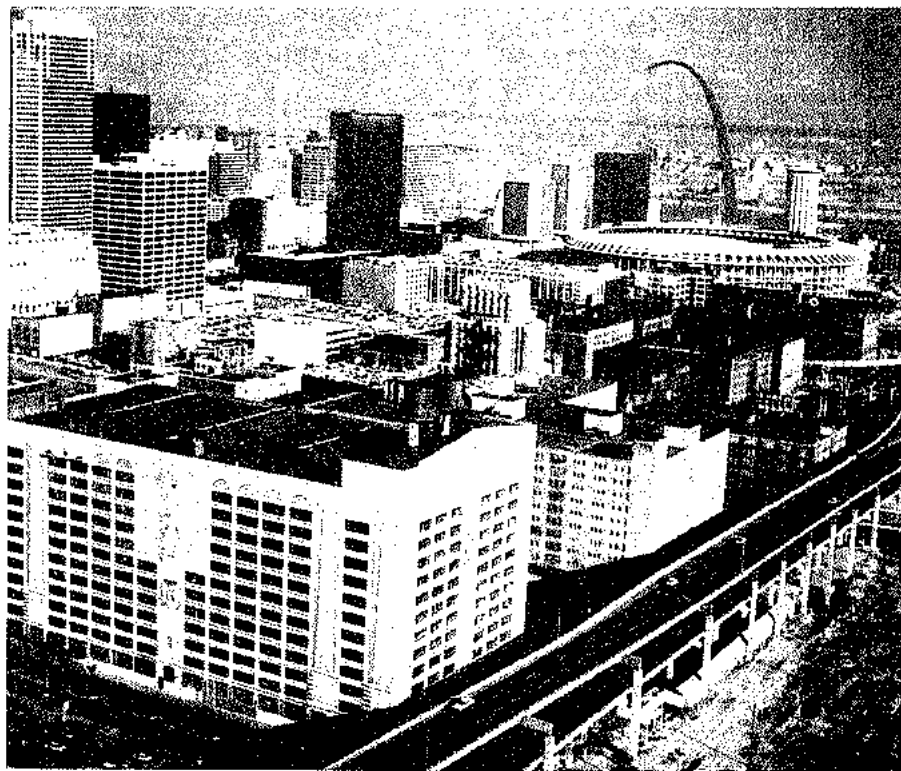
- 120cm×80cm 패널 4개(단 가로는 240cm를 초과하지 못함), 설계도 및 투시도와 간략한 작품설명서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 임의)

심사결과발표

- 1986년 11월24일 예정

출품원서대 : •10,000원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732-4613)에 문의 바람.



벽면회화건축

Painting Architecture On Buildings

by Yoo Kyung Chul

달동 위에 앉아 있는 St. Louis의 카타란상이 네명의 나신에 의해 높이 들려져 있다. 그녀는 평화의 표현으로서 양팔을 벌리고 있으며, 그 위로 속이 빈 지구의가 얹혀 있다. 이 작품은 도시벽화 전문가인 Richard Haas의 최근작으로서 아마 가장 뛰어난 대규모 작품일 것이다.

198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12명의 화가들이 완성한 이 벽화는 원래 황폐했던 창고건물(1926년 작)의 삼면에 걸쳐 있는데 110,000평방피트에 달하는 그림 면적을 마련하기 위해 약 200개의 창문을 골라 분석벽돌로 메꾸었다. 이 Edison Brothers Shoe Company 건물과 이 벽화는 서쪽 진입로의 VS 40에서 St. Louis 시내로 가다 보면 나타난다. 남쪽면 가까이 고가도로가 있으므로 그 위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두번째의 영웅상, 즉 달동 위에 앉아 있는 St. Louis를 재현한 그림을 보게 된다. 건물모서리에는 obelisk가 그려져 있고, 각 facade 상부 면에는 보다 강조된 환조형식의 석조상(환사상)들이 반복되어, 그럴듯하게 그린 반원창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내려 앉으며 건물에 등지를 틀고 있는 그림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도시환경이 갖는 그 고유한 단편들을 모아 그것을 거대규모의 사실주의로 해석해 내는 Haas는 St. Louis 시내에서 풍부한 소재들을 발견했다. 지구와



기마상을 포함해서 1904년에 열린 St. Louis 박람회를부터 많은 것들을 재해석 해냈으며, 또한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의 지붕이 있는 고층법원건물(1930년작)에서도 절충주의의 경이로움을 빌어 왔다. St. Louis 지역에는 많은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마도 천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본 그는 상업의 여신으로 출발해서 평화의 표상이 된 그 여인을 New York Studio에 근무하면서 그 모양을 본떴다고 한다(자유의 여신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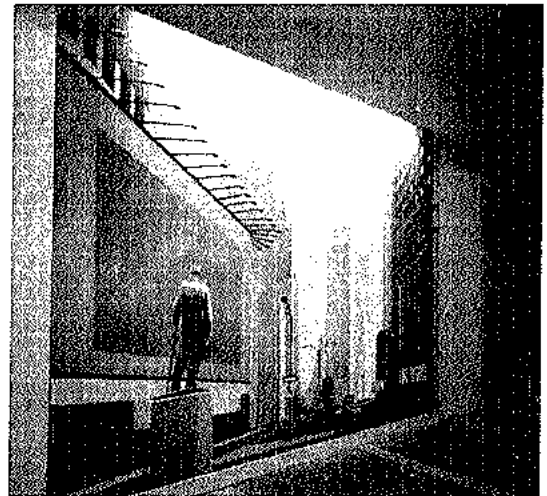
아직도 너저분한 의류판매지역의 West 36번가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New York City Studio 50층 위에 있음)에서 지난달(1985년 3월) Haas는 자신의 도시에



Corning N. Y. 에 있는 First Bank & Trust Co. of Corning "rusticated"(거친벽돌마감형태)로 된 주차장입구



Homewood III. 의 업무지구에 있는 건물회화



N. Y 대학의 Midtown Center에 그린 8 개의 Manhattan
경경중 Times Square 모습

대한 통찰력과 편견들을 어느정도 토로했다. 그는 말하길 "나는 그 통찰력과 편견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들을 좋아한다. 나는 혼잡과 혼란(거의 혼잡이지만),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도시의 존재들을 좋아한다. 미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그러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는 혼돈속의 보석과 같은 것들이다." 라고 외력했다.

"나는 최근에 처음으로 San Diego에 갔었다. 처음 내가 감명받은 것은 그 지역의 지형인데, 언덕에 위치하여 눈에 띄는 학교와 교회건물들이 어떻게 그 지형에 예민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쌍의 훌륭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Balboa Park는 그 도시를 극적으로 회생시켰다. 그것은 그 도시가 형성되던 초창기에 이상주의자들이 도시계획을 주도하면서 의도했던 결과였다."

"Houston 같은 다른 도시들은 여전히 자연상태 그대로 존재한다. 반대로 New York는 많은 발달단계를 거쳤는데 최근의 모습은 Robert Moses가 30년 동안 도시계획을 주도하면서 이룩해 놓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Moses는 많은 손실을 감수하였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상태로 끝나버렸을 것을 조화시켜 하나의 도시구조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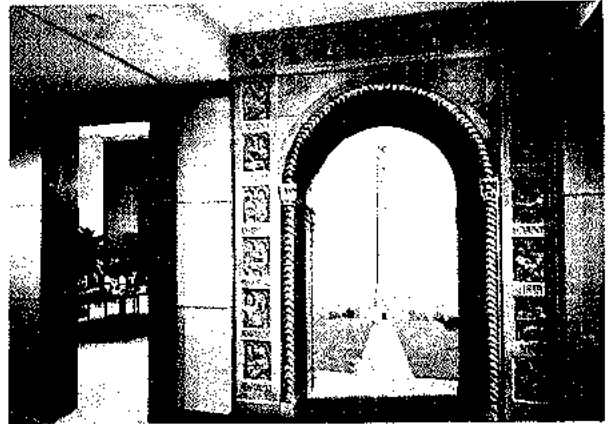
건축계획의 최근 방향을 살펴 볼 때 앞으로는 좀 더 흥미있는 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다른 Modernist 들의 견해를 분석해 보면, 건축과 도시계획 문제를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에 맞춰 해결하고자 하는 아심들은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좁은 견해로 비추어 볼 때, 이 혼돈(Chaos)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물론, 그 혼돈에 수반되는 것들 속에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혼돈은 보다 풍부하고 이질적이며 특이한, 그리고 지역주의에 맞게 유도되어 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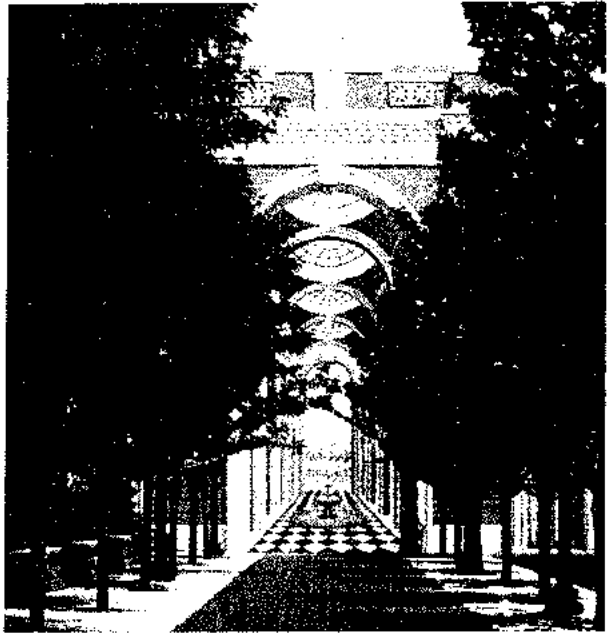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Postmodern 주의 건축들은 그 이전에 대두되었던 건물들 보다는 훨씬 더 흥미가 있지만 그 이전의 훌륭한 건물들과 잘 조화를



Boston 건축센터에 그린 그림 모습



Johnson/Burgess's Republic Bank Center의 로마네스크식 아치속에 Lone Star 탑을 그린 모습



N. J.의 New Brunswick에 있는 한 번전소 벽위에 그린 그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 논의는 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치하기로 한다.”

현재 48살인 Haas는 Wisconsin주 Spring Green에서 성장하면서 유년시절부터 위대한 건축물들과 직접 접해 왔으며, 그 후 2년동안 Taliesin에서 일했다.

“Frank Lloyd Wright는 Haas를 사로잡았던 영웅적인 인물이었다. “내가 처음 내 인생에 관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Wright의 일생과 작품에 몰두해 있었으며 내가 Taliesin에서 일하고 있던 당시에 Wright가 그린 drawing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후에 색연필로 그린 초창기 drawing 작품들은 심취할 만한 것들이었다.”

“Wright는 내가 건축에 바탕을 이루도록 해준 모체였지만, 나는 곧 Wright고유의 범주인 독단적인 편견을 탈피,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비록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의 작품에서 탈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Haas는 Middle West에 있는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수하며 그곳에서 생활했고, 1968년에는 New York시의 SoHo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1974년에 최초로 건물벽화를 그렸다. 그후 10년동안 그는 미국의 여러도시에서 수십개의 벽화를 그려왔다. 그의 작품은 글자 그대로 엄격한 건축적 SoHo 벽화에서부터 시작해 1977년에는 Boston 건축센터에, 과도기적 고전주의 양식을 빈 dome을 cutaway(속이 보이도록 일부를 잘라낸) 식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상적으로 용해된 벽돌과 조각상으로 바뀌어 왔다. 그는 스스로 평가하기는 “수십년을 거쳐 오면서 나의 idea는 점차 복잡해져 왔다. 그러는 동안 나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 한층 복잡한 것들을 다루게 될 때나, 창작해야될 상황에 닥쳤을 때도 예전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예술가로서 Haas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작품들은 폭넓게 보방되고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요구도 작품주제의 범위와 각 작품의 규모가 커지면서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기호가 변하고, 변덕스러운 비평적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작품을 충분히 아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육감에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작품을 하게 될 때 감이 잡히거나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은 일시적 유행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당신에게 있으며, 당신에게 부여된 각 작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각 작품에 당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축적되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품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그 작품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머릿글

건축과 조경이란 본래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건축가가 조경을 동시에 수행하는 말하자면 원시적인 토탈디자인(Total Design)적인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태초에 그것들이 발전되면서 같이 관련되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봄으로써 그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후에 서로 관련상관되는 「Theme」를 찾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본다면 건축에 있어서의 조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소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되어

(I)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1. 서양의 역사와 조경
2. 동양의 역사와 조경
3. 우리나라의 전통조경

(II) 건축에 있어서의 원론적 조경

1. 자연과 인간과 조경
2. 조경의 사회성
3. 조경계획과 건축

(III) 각론

1. 공업단지 조경
2. 집단주택지 조경
3. 스포츠·레저단지의 조경
4. 도시 재개발지역의 조경
5. 공원과 도시녹지
6. 사적지 조경
7. 기타(학교·병원·종교지역 공공시설 등)

이상의 대략 3개부분과 이를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 분야의 실무에서 20여년간 몸담아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는 본문이 건축사 제위의 업무에 일호의 조가 되었으면 다시없는 보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I.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1. 서양의 역사와 조경

① 고대에서 중세

신석기시대 이래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원시 야만인의 유랑생활에서 집단농경목축의 정착시대로 안정되고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과 축적은 문화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으며 통치자는 비로소 물질적 부를 축적하여 그들의 토속신앙을 숭상하기 위한 신전을

건립하였고 궁전을 축조하였으며 외적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성곽을 축조하게 됨으로써 건축과 조경의 역사는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되는 동안 인간에 의한 경관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신전과 궁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꾸미고 장식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보는 전문성을 가진 조경행위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 C. 2,000년경 전후에 새겨졌던 인류 최초의 기록물인 Uruk의 사제일왕인 Gilgamesh의 대서사시는 건축에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층계의 구조와 거리가 먼 채석장으로 부터 운반된 돌의 가공 건물의 토대에 방수처리를 위한 천연 역청의 사용기록 등 이런것들을 통해 그 당시 발달되었던 건축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유프라테스강변(The Euphrates River)에 번성하였던 수메르(Sumer)인의 수도 Uruk에는 이때 이미 거의 완벽한 관개시설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농업과 생활의 용수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Babylon)의 Nebuchadnezzar 왕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은 고고학적 관찰에 따르면 그 정원이 바빌론의 모레 평원에 세워진 수 에이커에 달하는 건축물로서 일종의 옥상정원과 비슷했다고 하며 나무의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흙을 충분히 얹은 지붕은 속이 빈 원형의 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었고 인근 성곽의 해자(Moat)로 부터 노예들이 물동으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고 한다.

나일(Nile)강의 범람은 이집트(Egypt) 삼각주에 기름진 토지를 주었고 강물을 언제나 수문을 갖춘 방상의 운하로 유도하여 강물을 이용한 수목원, 포도원, 채소원 등의 농업이 발달하였고 잦은 범람으로 땅의 유실이 잦음에 따라 측지술이 또한 발달되었다. 이와같은 측지측량술의 발달로 신전의 건설기술 등이 일찍 발달되어 Deir-el Bahari의 신전이 건설되고 신원인(Shrine Garden)이 이때부터 나타났고 스핑크스(Sphinx)와 피라미드(Pyramid)는 오늘날 까지도 영원히 풀 수 없는 인류의 불가사이이다.

한편 그리스(Greece) 문화를 주도한 에게(Aegean)해 문화는 그레타(Crete)와 마케네(Macenie)의 두 시대를 갈라 놓았음 볼 수 있다.

건축과 조경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WORKERS CARRYING INCENSE TREE
FROM THE LAND OF PUNT

그레타의 궁전 건축은 개방적으로 그 시대의 평화스러웠음을 볼 수 있고 미케네의 그것은 성채식위주로서 주위를 폐쇄시킨 Patio를 향해서만 창문이 개방되고 출입문 역시 Patio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B.C 5세기경 페르시아(Persia)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Greece)는 국력이 갑자기 늘어 많은 신전과 성람이 조성되었고 특히 아폴로(Apollo) 신전과 올림피아(Olympia)에 가까운 제우스(Zeus) 신전의 성람은 수많은 조상과 청동제 장식분이 나열되었던 탓으로 그 성람은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상의 숲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제우스 신전에서 거행되는 4년마다의 제시는 운동 경기를 개최하는 습관으로 변했고 이것이 동기로서 청소년 체육진흥과 「Gymnasium」 건설이 시작되었다. 집나지움의 주변을 프라타나스로 녹음을 만들어 마침내는 공개된 정원으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그곳의 명칭을 Academy 라고 했는데 그것은 Academos라는 영웅을 위한 경기가 진행되었던 성지에 체육장이 만들어진 연유였다고 하며 그곳에는 프라타나스의 열식수와 「철인의 원로」라고 부르는 관목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해 놓은 오솔길이 있고 여러곳의 제단, 주랑, 정자, 벤취 따위가 놓여지는 한편 그 일부에는 대리석으로 구획된 긴 타원형의 경주로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아테네를 거쳐 흘러 들어온 동방의 문화가 로마에 다달을 즈음 Tiber 강가의 미개한 농경민족이었던 라틴(Latin) 족들은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생각할 정도로 강대해져 있었고 그들은 그때 벌써 콘크리트(concrete)를 사용하여 공공의 건축물을 건축할 정도로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갖게 되었다. 공화시대의 로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도시를 14개로 구분하여 건물이 밀집된 제1지대, 다소 여유가 있는 제2지대, 그 외곽에는 규모가 큰 저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제3지대, 마지막으로 시외근교인 제4지대를 설정하여 제4지대는 별장을 건설 고대로마 특유의 별장 스타일을 넣었는데 전원식 별장으로서 「Villa rustica」와 도시 스타일의 별장인 「Villa Urbana」로 나눌 수가 있다.

로마에는 이때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구축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으며 콜로세움, 폼페이(Pompeii) 유적 등 많은 것이 당시 찬란했던 건축문화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림 2).

특히 흥미로운 것은 16세기 「Michelangelo」에 의해 건설된 Vatican의 St. Petro basilica(교회당)은 바로 그 자리가 AD 54~68년 악명 높았던 네로(Nero) 황제가 그에게 아첨하는 소인배들을 위하여 초인적인 규모로 건설하였던 호화스런 정원의 자리였으며 그때 그 정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집트(Egypt) 나일강에서 운반된 방첩탑(Obelisk)가 네로의 곡마 경기장 Spina(중앙분리지)에서 로마의 상징물이었으며 오늘날 「St. Petro」 앞 장엄한 「Bernini」 타원형 광장인 「elliptical plaza」의 초점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인간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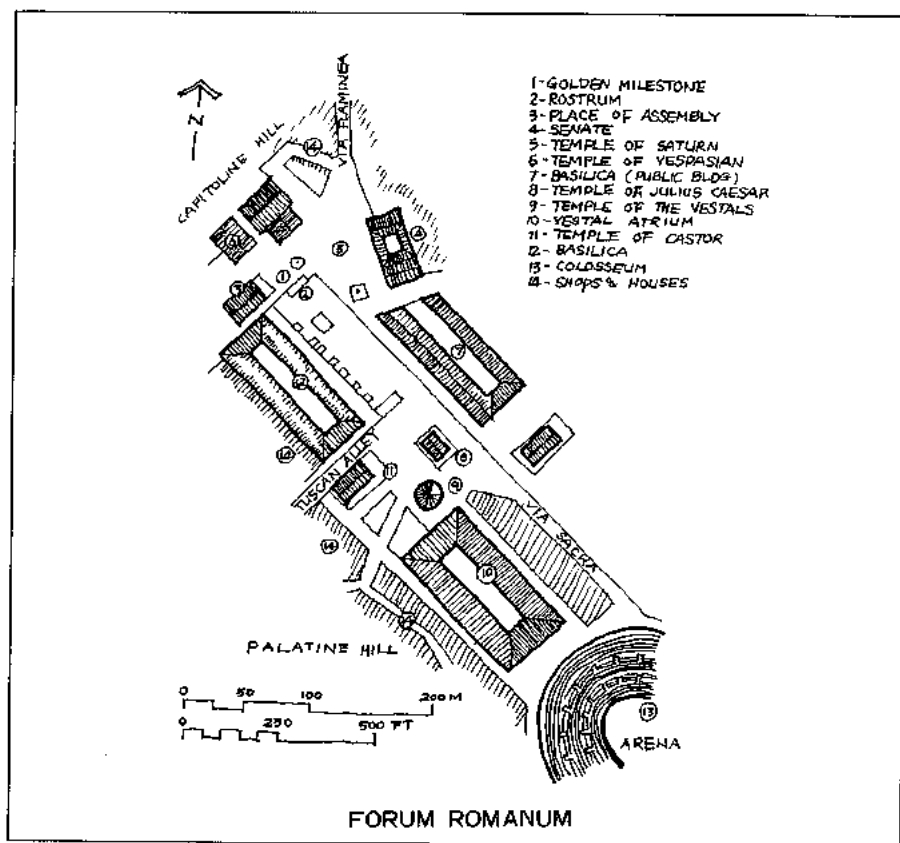
아이라니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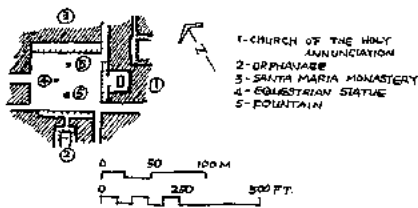
이처럼 많은 경관의 변천은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는 멸망하고 거의 10세기에 가까운 암흑의 역사, 중세가 시작되어 전쟁과 살상으로 얼룩지는 참혹한 인간사가 진행되어 갔다.

인간의 심성은 성곽 속의 생활, 절망의 생활에서 마음의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로 귀의하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로서 기독교 사상이 심화됨으로써 전쟁의 외중에서도 기독교 문화의 싹은 자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Monastery Garden」이 발생되어 실용적인 정원으로서는 약초원, 채소원이 발달하였다. 13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전란의 위협이 사라지고 향락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한편 십자군 원정의 영향을 받아 성곽의 형태와 구조가 큰 변화를 일으켜 방어개념의 구조에서 호사기들의 주거를 위한 주거의 개념으로 구조가 바뀌어지는 한편 위협적이던 외모는 일반저택에 가까운 것으로 면적도 확장되고 미구간, 과수원, 정원이 조성되는 등 건축과 조경은 항상 밀착되어 15세기말 경에는 성채이기는 하나 완전한 주거용인 성관(Chateau)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② 이슬람(Islam)의 조경

한편 불모의 사막을 주거지로 삼은 AD 570~632 아라비아(Arabia) 지역에서는 Mahomet이 나타나 이슬람의 교리로서 전





PIAZZA ANNUNZIATA - FIRENZE
(BRUNELLESCHI - 1419-24 A.D.)

Arab을 통일하고 사라센 제국을 일으켰는데 이의 세력이 7~8세기에 걸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부 아프리카 및 스페인 반도까지 장악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사라센 민족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를 급속히 흡수하여 그것을 자기문화와 융합시켜 독특한 문화를 건설했는데 스페인에서는 동방문화를 잘 살린 그라나다(Granada)의 Alhambra와 Generalife, 세빌리아의 Alcaraze의 궁원이 그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Spain-Salassen 문화의 한 유산이다. 인도의 고대 정원은 고대 인도쪽에 속하는 인도 아이리안(Aryan) 쪽이 인더스(Indus)강 지방에 살았으나 뒤에 갠지스(Ganges) 지방으로 이주하여 고대 인도문화의 꽃을 피웠으며 조정 또한 매우 발달하였다는 사실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 Ramayara와 Mahabarata가 전하고 있으나 그 유적은 현재 찾아 볼 길이 없고 역시 사라센의 침공으로 인한 회교왕조 뒤에 일어난 Mughal 왕조(1516-1761)대의 인도-사라센 문화의 소생인 "Nishat Bagh"와 "Taj-Mahal"이 그 대표적인 유물이다.

Nishat Bagh는 캐시미르(Kashmir) 지방의 경관이 수려한 역대왕조의 하계별장지로서 이 지방의 호수가에 자리 잡았다. 정원은 12개의 로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이 12궁을 본뜬 것이었다. 산 중턱에 구거를 설치하여 Cascade(물계단 장식)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곁들여 로단에는 각종의 화초를 심어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한다.

Taj-Mahal은 Sha-jahan의 부친 Mum Taj Mahal을 위하여 조성된 영조로서 인도 영조건축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높은 아치형 둥근지붕을 가진 문을 들어서면 방형의 심천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과 직각으로 구거가 교차하는 대정원이 전개되며 정원을 바라보면 백색의

대리석으로 건조된 영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연못의 수면위에 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물의 높이는 9m의 기단위에 69m의 높이로 세워졌는데 지붕은 사라센 특유의 둥근 원탑형이고 네 모퉁이는 첨탑(Minaret)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이 대칭적으로 꾸며진 것과 같이 조정도 건물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균형 잡힌 극히 단순한 의장으로 꾸며져 있다. 즉, 삼자형 구거에 의해서 4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심에는 원정 대신 흰 대리석으로 축조된 아름다운 분천지가 구거보다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는 한편, 너비 5m가 되는 구거속에는 간격 2.5m의 일렬 분천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과 직각으로 중앙 분천지에서 교차되는 또 하나의 구거 역시 같은 수법의 분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단부는 정원으로로서 끝난다. (그림 3)

③ Renaissance 조정

십자군의 원정 이후 교통, 정보, 무역의 발달로 이의 중심지였던 Firenze 지방에는 당시 해군력의 발달로 동방제국과의 무역이 번성해짐에 따라 모작물 공업이 발달하고 무역과 공업의 번창은 Firenze를 중심한 toscana 지방에 많은 신흥 부호를 탄생시켰다.

중세 암흑시대의 봉건적 종교사회로부터 모든 자원과 정치적 세력이 신흥세력인 지방제후의 손으로 넘어 오면서부터 예술, 문학, 국가 등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가 종교로부터 인간을 다시 찾는 인문주의 즉 Humanism이 제창됨으로써 고전의 재생과 현상의 신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Magaravate(독일식 정원)가 11세기 동안 Lombard 공작령이었던 Toscana 지방은 여러 소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가 Firenze의 Medici 공에 의하여 통일되어 되고 Medici가가 이 지방의 제후가 되면서 문학, 예술, 철학자들을 후원, 숭상함으로써 그 주위에는 이들 새로운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도시는 물론 문물 교역의 왕성한 발전이 계속되어 전유럽 지역에 Renaissance를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Casimo de Medici는 Brunellsch로 하여금 Santissima Anunziata의 교외에 고아원을 설립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 있던 광장이 오늘날까지 유럽도처에 남아 있는 르네상스 광장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Casimo는 자중해 연안의 특이한 기후로 인한 도시의 여름생활을 피하여 Michelozzo로 하여금 Fiesol의 언덕에 전원적인 별장을 설계하도록 하여 올리브 과수원과 포도원으로 덮힌 평화스런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사유지에 새로운 스타일의 별장을 세우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별장의 장식은 극도로 풍류가 있었으나 건물의 디자인은 단순하였는데 어떠한 금세기 초까지 지속되어온 양식이 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 볼 때 "고전적 사고"에 상당한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부지의 결정과 계획은 그 배경에 비해 독특하게 보였으나 당시 건축이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림 4)

그 당시 건축이론가 Alberti는 그의 저서 de re Aedificate를 출판했는데 Vitru Vius의 저서(기원전 1세기 후반과 기원후 1세기 전반에 Augustus 로마 황제의 토목, 건축, 담당고문이며 이론가인) De Architectura의 10권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건축과 부지 선택의 이론을 여기에 다시 열거하였던 것이다. 도시계획 건축자료, 사원과 그리스식 기둥양식, 공공건물과 개인 건물의 실내장식, 급수시설, Chronometer 도구 구조물과 군사용 기계장치 등에 관해 기술해 놓았다.

Alberti는 이 연구 논문에서 지금도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지계획에 관한 몇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배수가 잘되는 견고한 토지를 부지로 고를 것
2. 부지의 방향이 태양이 주는 수평 수직, 각도를 고려할 것
3.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람과 부지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
4. 물의 공급이 적절한가를 결정할 것
5. 구조물이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지방의 재료를 사용할 것

이와같은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제 1단계 초기 철학자의 정원에는 물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보잘것 없고 축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못이나 샘으로서 일괄히 사용되었고 15세기초 스페인왕 알폰소 5세는 나폴리에 거주하면서 그곳 정원에 무어인 방식으로(사라센) 물을 사적으로 교묘히 사용하였다.

그후 1549년 Cardinal Ippolito d'Este는 Tivoli의 통치자가 되면서 Sabine 산으로 향한 아름다운 언덕 위에

도시전체를 관망할 수 있도록 별장을 짓게 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Tivoli의 Villa d'Este인 것이다.

건축가 Pirro Ligorio와 수력기사 Olivieri는 Anio강 물을 끌어 들여 매우 효과적으로 교차시킴으로써 놀라울 정도로 간소하고 평범한 이 건물인 궁전을 조경처리의 다양성과 그 규모로 인해서 놀라움과 즐거움 회화를 맛볼 수 있게 해주었고 방문자로 하여금 주인의 외관상 부와 노력에 걸맞게 하면서도 회열감에 도취될 수 있도록 100여개의 분수, 산책로, 물의 분출, 물안개, 물방울 등 모든 것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르네상스의 건축과 조경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어 이태리 지형의 특성에 따른 노단식 별장, 건축과 축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별장, 정원의 조경적 처리기법은 르네상스 초기, 중기, 후기, 바로크식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곳곳에서 열화와 같은 사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피렌체 근교의 대표적 별장 조경으로서 「Villa Careggio」 「Villa Cafaggiuolo」 「Villa de Medici」 「Villa poggia caiano」 「Villa Salviati」를 들 수 있다. 중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Villa Franes」 「Villa d'Este」 「Villa Lante」 「Villa Castello」 「Giardino Boboli」 등이 있으며 특히 이중 「Villa Franes, Villa Lante, Villa d'Este」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 로마 3대 별장이라고 한다.

후기는 16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중심이 Firenze에서 로마로 옮겨져 이태리식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찬란한 조경 문화의 꽃을 피웠다.

조경이 최성기를 맞고 있을 이 시기에 건축과 조각은 이미 최성기를 지나 그 영향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크(Baroque)식으로 지칭되는 양식으로서 이 양식은 후기에 조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식물재료를 자연의 생김새대로 사용치 않고 수형을 피기하게 변형시켜 인공적으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후기의 대표적 작품으로서 Villa Lancelotti, Villa Isolabella, Villa Aldobrandini 등이 있다.

이와같이 이탈리아에서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봉건주의와 귀족과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과의 소위 100년 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어 혼란스런 무력충돌의 연속이었다. 프랑스도 이후 점차 전쟁이

뒤틀면서 이탈리아로 부터 불어오는 르네상스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 프랑스 1세 이후 궁정과 귀족의 Chateau 등이 정원을 확장하게 되는데 프랑스인은 보수적이어서 전제군주 정치가 절대화된 오랜세월 후에도 성과 해자(Moat)가 존속했고 이것이 종래에는 물을 사용하는 한 양식으로서 발전한다.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에 비하여 대서양 기후인 프랑스는 조경설계에 있어 꽃을 이용한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는 대개 도시국가들이 잡다하게 독립된 데 비하여 프랑스는 강력한 군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벨사유(Versailles) 궁전과 같은 엄청난 대단위의 정원을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루이 14세왕 Sun King(태양의 왕) 시대에 궁전 정원사의 아들인 Adre Le'Notre는 시공부에게서 미술공부를 사사받은 후 그의 아버지처럼 궁전 정원사가 되었다. 그는 루이 14세 왕을 위하여 Fontainebleau와 Tuileies의 개량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업적을 쌓았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루이왕의 신임을 크게 받지 못하여 이태리 여행길에 오르는데 이태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당시 루이왕의 재무장관인 Fouquet의 요청으로 파리(Paris) 근교(48km 지점) Melun에 그의 Chateau인 Vaux-Le Vi Conte(보르비콩테)를 건설케 되었고 방대한과 아름다움에 시기를 느낀 루이왕은 Fouquet를 투옥시키는 한편 르노뜨르(Le'Notre)를 불러 벨사유 궁전을 조경하게 했던 것이다.

본래 벨사유 궁원은 루이 14세 왕의 부왕인 13세 왕의 사냥터였는데 루이 14세 왕의 명을 받은 르노뜨르는 1661년부터 향후 25년에 걸쳐 당대의 역작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 궁원은 남쪽 화단말에 감굴원이 제일 처음 조성되었고 거대한 인조의 로단위에 백색의 찬란한 대리석 궁전이 세워지고 양쪽에 두개의 큰 연못을 만들어 그 연못에 궁전을 투영케 함으로써 장관을 이루었고 연못가에는 청동제로된 우아한 조각이 준비하게 배치되고 로단의 정면 아랫 쪽에 반원형을 이룬 비탈길과 그 전면 중앙에 화단을 결들인 연못이 배치 되어 있고 이 연못으로 부터 주축이 중앙로인 왕자의 가로수 길로 향해 뻗어간다.

벨사유 궁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지의 주축을 따라 축조되어진 대운하이다. 이것은 정원을 넓게 보이게 하는 한편 저습지의 배수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길이는 1.6km나 되며 두 지류로 분리시켜 십자형이 되게 해 놓았다. 물의 화단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라미드(Pyramid) 분천을 비롯 물의 원로 넘프의 연못, 용의 연못, 네프룬의 연못 등이 있고 각기 독특한 형태의 주상들이 반쳐든 수반형 분천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다.

운하의 지류 북단은 Grand Trianon 이라고 하는데 루이 14세 왕이 Montespan 부인을 위해 건조한 트리아논(Trianon) 자궁(寢宮)은 진기한 자궁이었다. 트리아논 중국식 건물로서 루이왕의 동양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정원에는 건물을 구성하는 청색과 백색의 도자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다채롭고 진귀한 화훼가 매우 많이 식재되었으며 그 강렬한 향기는 극에 달하였다고 한다. 루이 14세 왕의 빛나는 역사가 끝나고 섭정시대가 되면서 벨사유 궁전은 크게 황폐되었으나 1749년 종파루트 부인에 의해 다시 거의 복구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정교하고도 장엄한 벨사유 궁전은 당시 전 유럽에 파급되어 루이 14세 왕의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님페부르크, 쾰스부르크의 헬브론 포츠담의 Sans-Souci 비엔나 지방의 헨브론 궁원, 영국왕실의 Hampton Court, 러시아(Russia)의 레닌그라드,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북부 이태리 지역, 남쪽으로는 나폴리(Napoli) 부근의 Caserta에 지방 제후의 정원에도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가 조조지 워싱턴(Gorge Washington) 장군의 요청을 받은 Pierre L'Enfant는 워싱턴시의 도시계획에 벨사유 궁원의 재현을 시도하여 주요축선의 초점은 수직이고 작은 축선은 백악관을 끝에 두고 있다는 점이 뜻깊은 일이다. 많은 산책길은 르노뜨르의 tapis vert(녹색의 카펫)과 같고 거울같은 연못은 옛날의 대운하와 같으며 Lond's point에서 교차되는 대각석 도로형으로서 완전히 르노뜨르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은 당대 한 사람의 거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길이 기억되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호 계속)

판소리계소설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주택사상 홍부전을 중심으로

**Housing Philosophy of
Late Cho-Sun Dynasty
Through the PANSORI Novel**
by Han Dong Soo

1. 서론

지금까지 한국건축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거에 관한 연구는 인접분야-인류학, 고고학, 사회학, 생태학 등-의 도움으로 많은 진전을 가져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고 그림이나 사진 혹은 도면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불과 일이백년 전의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그나마도 많은 손질과 외국문물의 영향으로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후기 백성들의 정서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현재까지도 판소리로서 또는 소설로서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인 홍부전 속에 표출되고 있는 주택사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헌상에 보여지는 한국인의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주택의 모습과 주택사상을 찾아보아 한국주거연구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헌으로 찾아보는 주거연구는 김순일의 「燕行錄」을 통한 고찰¹⁾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찰에서는 주로 실학사상과 관련을 지어 주택개량이라든가 환경개선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당시 주거환경의 나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환경개선적인 측면이 아닌 서민들의 의식속에 반영된 상류주택의 모습과 서민들의 주택 즉 최하층 주거의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판소리계 소설의 가치

조선후기 는 봉건적인 농업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세적 신분제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로서 판소리는 이러한 시기에 탄생한 민중문학이다. 즉 조선후기에 민중문화가 크게 일어날 때 민중문화의 집약적 표현의 하나로서 판소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것이 나타난 시기로는 18세기초 숙종말 영조초 쯤이 아니었나 하나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²⁾ 한편 판소리는 민중문학이기 때문에 양반문학과 민중문학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문장체 소설에 큰 충격을 주어서 판소리계 소설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그 중심사상은 양반들의 관념적 인과론을 거부하고 서민들의 경험적 길들을 제시하여 기존사회의 불평등과 허위를 비판한

것이다. (표 1)

이러한 판소리는 설화, 또는 하나의 근원설화에서 판소리 한마당으로 발전되고 다시 대본으로서 정착하여 소설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³⁾ 이 소설화된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오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누적되고 경험된 사실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 일반 백성이 의식과 행동의 자각적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대의 판소리를 통해서 형성되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깊이 밀착되어 있어 서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현실 그 자체로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판소리는 위로는 국왕에서 아래로는 유랑천민까지를 청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반이라는 것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고 소설로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으로서의 판소리가 문자문학으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풍자적 성격이 강하여 언어로서 전달될 때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므로 노골적인 표현도 공연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가능 했겠지만 문자로 정착된 소설에서는 그 풍자성이 다분히 윤색되고 침착되어 고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무튼 조선후기의 판소리계 소설은 이 시대에 풍미된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서민소설의 출현, 서민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풍속화의 성행과 더불어⁴⁾ 유교적인 봉건사회의 낡은 질서를 거부하는 시대정신의 발로로 성장된 서민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판소리계 소설은 당시의 한국인의 의식 특히 서민의 의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3. 홍부전의 유래와 배경

홍부전은 다른 판소리계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자와 정확한 성립연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판소리의 발생기인 이조후기에 소설로 씌여져 정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야기를 소설로서 엮은 것으로 이웃

판소리계 소설은 오랜 시간적 흐름속에서 누적되고 경험된 사실들이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사회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고 일반백성이 의식과 행동의 자각적 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몽고에 도거의 같은 줄거리의 「박타는 처녀」라는 설화가 전하고 일본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것이 전하고 있다.⁶⁾ 따라서 흥부전은 일시에 일정한 장르로 창작된 작품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 장르를 거쳐 형성 변모되어 오다가 끝으로 소설로서 정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농촌의 역사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흥부전은 첫머리에 「화설경상전라량도다경에서시논사론이잇스나농부논형이오흥부논아이라」⁷⁾ 하고 또는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삼도가 잇닿은 어름에 사는 연생원이란 양반이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⁸⁾ 라고 되어 있듯이 중부지방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흥부와 놀부의 상반된 인간상과 무력한 농민과 교활한 부농을 대립시켜 당시의 시대상을 해학과 풍자로 엮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일관된 경제문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기된 것이기 보다 개인의 생활과 사회체제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절실하게 체험한 평민이 그들의 일상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부딪치는 심각한 경제문제로서 제기된 것이다. 조동일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물질적인 부가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이 시대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⁹⁾

(1) 경제적으로는 농업사회의 자연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상업사회의 화폐가 이에 대치되고 있다.

(2) 사회적으로는 신분적 연속관계가 흔들리고 경제적 고용관계가 이에 대치되고 있다.

(3) 사고적으로는 관념적 유교도덕이 흔들리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위주로한 사고가 이에 대치되고 있다.

4. 흥부전에 나타난 주택사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배경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당시의 주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두가지의 측면에서 보아질 수 있는데 하나는 서민들이 꿈꾸고 비라며 동경하는 이상적인 상류주택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말바닥 계층의 생활을 반영한 주택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흥부가 놀부의 집에서 쫓겨나와 기거할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빗대어 하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과 박을 타서 생기게 되는 집 차례에서이다. 그것을 보면

「... 만첩산천에 들어가서 크나큰 아름드리 나무를 와르렁 통탕 자끈둥 베어내어 안방, 대청, 중채, 사랑채를 네모 번듯이 입구(口)자로 짓되 선지추녀, 굽도리, 바리받침, 내외분합, 물림퇴에 살미살창, 가로단이, 분벽주란, 고대광실을 짓는 것이 아니더라...」¹⁰⁾

「... 일동 목수들과 갖가지 곡식들이 나을적에 목수들은 위선 명당을 가려 터를 닦고 집을 짓는데 안방, 대청, 행랑, 곳간, 선지추녀, 말굽추녀, 내외분합, 물림퇴와 살미살창 가로단이 입구(口)자로 지어놓고 앞뒤 동산에 기화요초를 난민하게 심어 놓고 양지에는 방이절고 음지에는 우물 파고 문전에는 버들심고 울 밖에는 원두놓고...」¹¹⁾

이상의 두 내용을 살펴보면 안채, 중채(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집채) 행랑채, 사랑채 등으로 구성되는 동경의 대상인 상류주택 배치가 입구(口)자형으로 되고 있음을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상류주택의 배치는 입구(口)자 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상류주택 배치의 정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같은 기록은 준향전에서

기생 준향이 살던 집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보여지고 있어¹²⁾ 이러한 형태의 주택모습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의 화려한 모습과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모습을 엿보게 한다. 또한 「...위선 명당을 가려 터를 닦고...」, 「... 앞뒤 동산에 奇花瑤草를...」에서 풍수지리 사상이 팽배되었던 당시의 한 단면이 표현되고 있어 택리지에 보이는

大抵卜居之地, 地理為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非樂土地¹³⁾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최하층의 주택실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건넌산 언덕밑에 가서 움을 파고 은 식솔이 모여앉아 밤을 새우고 곰곰히 생각하여도 갈 곳은 전혀 없으니 자리를 옮기지 말고 이곳에다 몇간짜리 초가집이라도 열기설기 짓고서 사는 수 밖에는 다른 변통은 없기에 집을 지으려 하더라... 낮 한지루 들게 갈아 지게에 꽃아 지고서 묵은 밭이라면 쫓아 다니며 수숫대와 뽕대(영거시피의 다년초, 산 들에서 나는데 높이 1.5m 두껍고 가지가 많음)를 낚날이 베어 짊어지고 돌아와서 비스듬한 언덕 위에 집터는 팽이로 깎아 다지고 집 한 채를 짓는 참이라 안방·대청·행랑의 몸채를 말집(추녀가 사방으로 뽕 돌아가게 지은 집)으로 열기설기 엮어서 한나절에 다 지어놓고 땀 씻으며 돌아보니... 안방을 들여다 보니 어찌나 너르던지 발을 뺀고 누워보면 발목은 벽 밖으로 나가는 지라 착고를 찬 놈이나 다름없고 방에서 땀 모르고 일어선면 모가지는 지붕 밖으로 나가는지라 회자수에 붙잡혀서 칼 쓴 놈이나 다름없고 잠결에 기지개를 켜면 발은 마당 밖으로 나가고 두 주먹은 두 벽으로 나가고 엉덩이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지라...」¹⁴⁾

〈표 1〉 판소리계 소설의 주제

	근원적 주제	실질적 주제	표피적 주제
출 향 가	남녀의 발말한 사람	신분제약으로 부터의 인간해방과 탐관오리 응징	烈
심 청 가	인과응보와 윤회사상	현세의 어두운 삶과 새 세상의 도래	孝
흥 부 가	관선징악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금전민중 풍토 반영	우애
토 벌 가	약자의 위기극복	지배층의 착취와 횡포에 대한 저항	아리서움경제, 충성
변강쇠가	인간본능의 욕망	유랑민의 고난과 생활상 묘사	음란함을 징계

「판소리계 소설 준향전의 주제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82, 金榮春, P. 14에서 전재함)

「... 이몸 팔자 이리 곤궁하여 말(斗) 만한 오막살이에 이 한 몸 몸담으니 지붕 마루로 벌이 되고 청천한운 세우시에 우대랑이 방중이(靑天寒雲細雨時 雨大郎房中)라 문밖에서 가랑비 내리면 방안에는 굵은 비오 앞문은 살이 없고 뒷문은 외(機)만 남아 동지선달 눈비람이 살 쏘듯이 들어오고...」¹⁵⁾ 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는 비록 과장된 표현이나 하층민의 주택사정의 극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는데 그들의 주택의 지붕 재료가 짚 뿐만 아니라 땃대같은 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안방·대청·행랑채이었음도 추측케 한다. 따라서 하층민의 주택에도 최소한 안방·대청 그리고 행랑채 정도는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류주택에서와 같이 지형을 살펴서 터를 잡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 풍수지리의 외식이 얼마만큼 뿌리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 산소글러 가난하면 어찌 큰덕은 잘 살고 우리는 가난할꼬? 장손만이 잘 되라는 산소던가? ...」 하며 한탄하는 홍부의 말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양택 뿐만 아니라 음택풍수도 팽배된 사실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하층민의 집이 움집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음도 다음 글귀에서 짐작케 한다. 「... 건넌산 언덕 밑에 가서 움집을 파고... 자리를 읊기지 말고 이곳에다 몇간짜리 초가집이라도 짓고서...」

그러면 당시의 서민들이 갖고 있던 주택에 관한 욕망은 어떠한가. 그것은 홍부의 막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살펴 보면

첫번째박 喚魂酒 開眼酒 蘇生酒 聽耳草 人參 熊胆 朱砂 등의 건강장수를 위한 각종 명약

두번째박 온갖세간과 각종 서책 문방집기, 각종 옷감.

세번째박 황금, 백금, 오금, 옥은, 밀화 호박 등의 각종 보석

네번째박 좋은집, 온갖곡식, 돈, 종 다섯번째박 미인첩

와 같이 주택의 소유는 네번째 즉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첫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약으로 오래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장 큰 것이고 다음이 공부 즉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들이 절실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래 살고 벼슬만 있으면 자연히 획득되는 보석과 집, 종, 미인의 첩이 그 뒤를 이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서민들의 주택사상을 요약해 보면

(1) 풍수지리사상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2) 최소한의 주택구성은 안방·대청·행랑채를 갖추고 있었다.

(3) 또한 신분적 지배관계가 흔들리고 경제적 고용관계의 등장으로 권력의 획득과 장수무병을 바라면서 주(住)에 대한 가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살펴본 홍부전은 조선후기의 경제사정을 홍부가 처한 처절한 궁핍을 통하여 의·식·주의 면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통해 비추어진 주생활적인 면만을 다루어 보았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고 판소리계 소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상호공통된 점을

건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표출한다는 이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적 행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을 구성하던 일부였다는 공시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작품의 분석을 통한 고찰은

추출하지 못함으로 하여 생기는 오류도 적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건축이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표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적 행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과 생활을 구성하던 일부였다는 공시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작품의 분석을 통한 고찰은 건축의 사회사적 배경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며 종래의 전통건축의 맥락을 형식적 측면에서 보아온 오류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건축의 전통과의 괴리라고 하는 면에서 그것은 판소리뿐만 아니라 가면극, 전통음악 등이 관련된 전통적 리듬감의 건축적 수용과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건축물들이 소유되어지기 위해 지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이 생활을 담기 위한 용기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만드는 용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주)

- 1) 金純一, 燕行錄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주택사상,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0.
- 2) 金純一, 조선후기의 주의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82, 2.
- 3) 趙東一, 金興圭, Op. Cit. P. 15
- 4) 이러한 단계의 설정은 金三과 金東旭이 주장하고 있다
- 5) 崔秀榮,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근대외식의萌芽,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3. P. 29
- 6) 대백과사전6, 학원사, 1969. P. 940

- 7) 崔昌善, 홍부전, 신문관, 大正 2년, P. 1
- 8) 張德順, 홍부전, 회망출판사, 1981. P. 7
- 9) 趙東一, 홍부전의 양면성, 채명논총제5집, 1968. P. 11~14
- 10) 張德順, Op. Cit. P. 10
- 11) 張德順, Op. Cit. P. 42
- 12) 「... 춘향의 집을 살펴보니 四面八作 입구(口)지로 고주대문 안사랑에 안락 중문 출행랑이 즐비하고...」
- 13) 李重煥, 택리지 李翼成역, 을유문화사, 1971. P. 325
- 14) 張德順, Op. Cit. P. 10

15) 張德順, Op. Cit. P. 10~11

〈참고문헌〉

- ① 홍부전 : 최창선 저작점 발행 신문관 大正 2년(한글)
- ② 홍부전 김성용, 田中梅吉共譯, 大阪屋號店 昭和 2년(일본어)
- ③ 홍부전 장덕순편 회망출판사, 1981(한글)

감리업무에 대한 소고

Views of Supervision

by Kang Ki Se

1. 머릿글

인간이 태어나 건강하게 오랜 수명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는 태아 때의 건강과 태어나서의 환경 및 관리에 따라 다르듯이 건축물도 생산과정에 따라 기능, 예술, 질 등의 측면에서 수명이 좌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인간의 수명을 넘어서 몇백년을 이용하고도 문화적 가치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개의 건축물의 존재 가치는 건축의 동기가 개인적인 소유와 국부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인류전체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개의 건축물이란 종합화된 건축물이란 간에 수명을 좌우하는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는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두뇌를 짜고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이며 각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자기 업무를 책임지고 상호간에 질서를 지켜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간의 질서와 책임이 불분명하게 진행되어 건축물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물의 수명이 20년도 못되는 실정이며 개인의 손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중 건설과정의 일부인 설계와 감리의 내용이 사회에서 이해가 잘 못되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건축물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요인의 일부가 되어 이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2. 설계와 감리의 구분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건축물의 구상을 기술적으로 도면에 표현할 수가 없어 도서로서 표기하는 내용은 적었고 시공과정을 통하여 구상자(설계자)가 공사현장에서 구상의 많은 부분을 발전시키고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서의 표현 기법이 정립되어 시공 착수전에 상당한 부분까지 도면과 문서로서 표현하고 시공과정에서는 설계도서를 약간 보완, 수정, 발전시켜 질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미케란제로는 그 당시 도면 몇매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였으나 지금 그러한 건물을 완성시키려면 수천매

이상의 도면과 시방서로서 건축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시공전 단계와 시공착수후 단계를 구분하여 전자를 편의상 "설계" 라고 후자를 "감리"라 표현하고 있으며 설계 작업량으로 설계 : 감리를 70 ~ 80% : 30 ~ 25%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란 건축주의 요구를 바탕으로 설계자가 국가가 제정한 각종 법규를 지켜 창작한 내용들을 도면에 표기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감리란 첫째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각종 관련법을 국가가 제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서 허가한 내용들을 시공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국가가 인정하는 설계자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는 일면이 있으며 이 과정은 건축주나 시공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요구하여 감리자가 행하여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다.

둘째로는 설계자가 저작권적 측면과 자기 창작물을 사랑하는 결과 설계도서를 시공과정에서 보완하고 수정, 발전시키며 시공자에게 수시로 도서를 설명하여 주고 건축이 지나는 감각적인 면을 전달하여야만 건축물의 질면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의 감리란 설계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건축주나, 시공자나, 설계자나 모두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이러한 감리과정이 제외된다면 설계가 중도에서 미완성 상태로 되는 격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설계도서를 보완, 수정, 발전시키는 감리과정은 설계도서로서는 설계자의 모든 구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숙명적인 행위이다. 감리란 의사가 수술후 환자를 회진하는 것과 의상 디자이너가 옷을 가봉하고 재봉사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는 신용사회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건설회사를 불신하여 이들의 시공과정을 감시하는 행위를 감리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회사는 시간내에 각 분야별 전문시공자를 통솔하고 감독하여 건축주에게 양질의 건축물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질이 저하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어 감시, 감독의 뜻이 포함된 감리과정이 있는 것이다.

건축주란 반드시 경제적으로 좋은

건축주는 설계자를 선정할 때부터
감리과정을 의식하고 설계를 의뢰하며
반드시 감리를 설계자에게 의뢰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며 경제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감리가アフター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므로 건축주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리자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물을 얻으려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는 좋은 작품을 얻으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제외한다든가,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다. 사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여도 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소형주택 이라든가 아파트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건축물과 단순한
공장, 창고 등은 누적된 경험과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두번째 내용의
감리과정을 설계자에게 반드시 의뢰하여야
한다는 공식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의
연장 의미를 갖는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주가 감리자와 시공자간에 협동체제를
갖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조성하여 줌으로써 양질의 건축물을 얻게
된다.

건축주는 설계자를 선정할 때 부터
감리과정을 의식하고 설계를 의뢰하며
반드시 감리를 설계자에게 의뢰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며 경제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감리가アフター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므로 건축주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감리자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3. 감리의 구체적 내용

- 건축사법의 감리내용
- 건축법의 감리내용
- 대통령령의 감리규정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상기의 내용들을 분석하면 전항에서
설명한 첫째의 감리내용과 둘째의
감리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나 이들은
마치 설계도서가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공과정에서는 설계의 연장적 의미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현재
사회에서 설계내용이 완성이나 미완성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정의 감리내용과 설계자의
설계연장의 의미가 부여된 자발적인 의욕을
충족하려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몇명으로
부터 몇십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원들이 참여되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리의 내용을
열거하면,

- 1) 허가된 신축 또는 대수선의 건축물의
제반 관련법규를 확인하며,
- 2)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를 현장 여건을
참작하여 설계내용을 보완·수정·
발전시키며,
- 3)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중에 건축
설계가 지닌 감각적인 분야를 시공자에게
전달하며,
- 4) 시공자가 사공하려는 내용들이
설계자가 의도한 방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예 : 시공도면 승인,
사용자재의 승인,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등)
- 5)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 6) 시공계획의 검토
- 7) 안전판리의 지도
- 8) 준공도면의 검토
- 9) 공정 및 기성고 사정
-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1) 각종 계약서의 첨부된 도급내역서의
검토
- 12) 시공과정의 감독
- 13) 새로운 공법의 제시
-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법을 지키는 일과
건축이 갖는 섬세성, 조화성, 상세성, 색감,
공간감 등 design quality를 찾는

일, 그리고 건물의 안전성과 수명이
관련된 construction quality를
추구하는 것으로 대별되며 후자의
quality를 확보하려면 건물규모에 따라
전문가들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감리 내용과 감리비

전항의 감리내용들을 전부 이행하려면
인건비 및 기타비용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와 비용을 건축주가 실비로
보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축분야에서는 이 방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공사비의 요율에 의한
비용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비용으로는
전항의 감리내용을 충실히 할 수 없어
설계자들이 감리과정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비용으로 감수한다면 충실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를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격식을 갖춘 감리비용을 계산하면 최소한
설계비 정도의 감리비용이 발생된다.

즉 설계비와 감리비 비율이 건축사
설계보수율의 75:25로 되어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최소한 75:25의 비율로
계산하면 50%(설계 및 감리비를 100%로
가정하면) 정도의 비용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사 보수율에
나타난 75:25 중 25의 감리내용이란
법규를 확인하는 업무와 design quality를
추구하는 업무내용으로 국한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construction quality를
위한 비용은 건축주가 별도의 인력과
조직으로 추진하든가 설계자에게 별도의
비용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5. 맺는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설계와 감리는
별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으며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일 내용의
업무라 할 수 있다.

또한 감리란 시공과정에서 찾는 design
quality와 construction quality로 대별
할 수 있으며 전자는 건축사가 감당하고
후자는 분야별 기술자들이 감당하며
전자는 반드시 설계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자는 설계자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분리하여도 무방하다.

미국 콘크리트 연구원(ACI) 총회참관기



ACI 총회장에서 : (좌로부터) 가르시아씨, 스콧 전회장, 필자

(I). 「한국분회」의 준비

지난 3월 17일부터 한주일동안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의 춘계 연례총회가 미국 San Francisco의 Hyatt Regency Hotel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를 비롯한 다섯명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미국인을 위시한 세계 20여개국으로부터 각 부문별로 모인 ACI회원들에게 한국 콘크리트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1982년 4월에 창립된 ACI한국분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던 재미교포 두분의 권유로 ACI총회에서 한국분회가 주관하여 Korea Session을 설정할 것을 결정하고, ACI본부에 그 뜻을 전달하였던 바, 1984년 9월에 International Activities Committee의 의결을 거쳐 한국분회 시간이 1986년 춘계총회에 배정되었다. 아울러서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일주간의 예정기간도 알려졌다.

한국분회로서는 이미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할 것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ACI총회에는 미국내의 회원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학계, 설계용역업체 및 건설업 기타 여러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유수한 지식인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로서 최근의 한국을 소개함으로써 발전하는 한국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다.

1984년 말의 모임에서, 필자가 준비

책임자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변근주교수가 부책임자로 위촉받았다. 여기서 필자는 1984년도의 한국분회장직을 현재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문제길박사에게 인계하였다.

1985년의 여러차례의 모임에서 Korea Session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해당기관, 기업체에 알리고, 원고작성 및 발표자과정을 의뢰하였다.

- ㉠. 국내의 건설공사현황 : 현대건설 주식회사
- ㉡.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교량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댐공사 : 산업기지개발공사
- ㉣. 시멘트제조 및 연구시설 :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 ㉤. Precast Concrete System : 우림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 ㉥. 일반건축물 : 필자

이상과같은 주제로 각 기업체에 협조를 의뢰하였고, 각 기업체로부터 호응하여줄 것을 다짐받아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1985년 9월에 ACI본부에 한국분회에서 발표예정인 내용과 발표자의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매일 발간되는 "Concrete International"지에 ACI총회개최 공고와 더불어 한국분회의 발표예정주제가 게재되었다.

발표자료는 슬라이드 필름을 이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각 기업체는 1985년 6월 경부터 실무 담당자를 선정하고, 발표자료를 수집, 정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부 기업체에서는 총회참가예정자로 하여금 자료

Introduce to ACI
by Ahn Son Ku

수집을 전담케한 곳도 있었다.

1년 가까운 준비작업 기간에, 각기업체 담당자와 필자, 또는 연세대 변근주 교수와의 여러차례의 회합에서 발표원고의 검토,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1986년 2월말의 ACI한국분회의 이사회 및 주제발표 예정자의 모임에서 종합적으로 슬라이드와 설명내용이 공개되어, 참석자들 사이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ACI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1. 현대건설주식회사: 허영철씨
San Francisco 주재 Hyundai America Corporation 부장.

2. 한국도로공사: 권영원씨
한국도로공사 연구소 과장.

3. 산업기지개발공사: 염종수씨
산업기지개발공사 건설 1부 토목과장.

4.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최 탄씨
동회사 이사.

5. 우링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필자

6. 일반건축물: 필자

이상의 참석예정자외에 (주)유공 토건부에 근무하는 박현종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미국 Utah대학에서 연구 중인 유경수씨가 함께 참가하였다.

이밖에 미국상무성 National Standard Bureau에 근무하는 유해상박사, 텍사스주 델라시에서 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이동우박사, James Instruments Inc.의 최기호부사장도 Korea Session에 참석하였다.

이분들은 오래전 부터 ACI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터이어서 모두 소속 Committee의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orea Session의 진행을 지켜 보아 주었다.

이외에 십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할 뜻을 갖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대학에 재직중인 분들로 학년초의 해외출장에 어려움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II) 한국분회의 개최

Korea Session은 1986년 3월 18일 오전 시간에 배정되었다.

Hyatt Regency Hotel의 두개의 대회의실 중의 하나를 쓰게 되었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분들은 각기 개별 적으로 San Francisco로 향하여 3월 17일저녁, 늦어도 3월 18일 오전 8시까지

Hyatt Regency Hotel에 모이기로 하고, 현지의 연락처로서 Hyundai America Corporation에 근무하는 허영철부장 사무실을 정하였다.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의 최탄 이사는 3월 16일 San Francisco에 도착하여 허영철부장과의 연락이 닿았고, 필자는 3월 17일 오후 6시 San Francisco에 도착 하여, 허영철부장 및 최탄이사와 전화 연락이 이루어졌다.

3월 17일 저녁에 ACI회장 주치의 Reception에 참석하여 여러회원들과 인사 나눌 기회를 가졌다.

1985년 11월초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85년도 ACI회장인 Mr. Emery Farkas, 83년도 ACI회장이었던 Mr. Norman L. Scott와 ACI사무국장인 William R. Tolley 내외들이 필자를 매우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다. 이들은 ACI에서 3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해외분회의 방문 및 강연회개최 기간중에 한국을 방문하여 300여명의 청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던 지난해의 모임을 잊지못하고 있는듯 하였다.

이 Reception에서 2년전에 만나보았던 Washington대학의 Mattock교수 와 Tacoma소재 Concrete Technology Institute의 Karl Anderson부사장등 구면인 분들, 또는 처음 소개받는 ACI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은 전부터 Korea Session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서 멀리서 온 필자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으며,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바라며, 각기 소속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Korea Session에 참석 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른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돌려주었다.

3월 17일 저녁 늦게 각 기업체에서 파견된 분들이 San Francisco에 도착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월 18일 일찌기 Hyatt Regency Hotel에 집합하여, 각자가 준비해 간 슬라이드 필름과 설명자료를 정리하였다.

ACI총회에서의 주제발표회나 각 분과위원회의 모임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9시 정각에 유해상박사의 개회인사로 분회가 시작되었고, 이어 83년도 ACI회장 이었던 Mr. Norman Scott의 환영사가 있었다.

며칠동안 총회의 여러모임에 참석하면서,

다른 모임에서는 현회장 또는 전회장의 인사말은 없었던것으로 보아, ACI본부에서도 Korea Session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으며, 깊은 호의로 대해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Mr. Scott는 그 자리에서 "멀리서 온 여러 한국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ACI한국분회의 활발한 활동과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열의에 찬 강연청취 태도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의 바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다시 유해상박사가 본 Korea Session의 준비책임자로 일해 온 필자를 소개하였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첫째: 근래의 한국에 대한 간략한 소개

둘째: 현대건설주식회사의 국내 및

해외공사 시공사진과 함께 공사규모 설명

세째: 한국도로공사: 최근에 시공한

콘크리트로 포장된 고속도로 시공과정 및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된 교량에 대한 설명

네째: 산업기지개발공사: 1985년 말에

준공된 충주댐을 주로한 현재 진행 중인

댐에 대한 설명

다섯째: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시멘트

생산 시설규모 및 연구소에 대한 설명

여섯째: 일반건축물 및 Precast Concrete

System에 의한 건물건립과정 설명

부분별 설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래의 한국소개

일본의 통치를 받아왔던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북위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 6월의 북한의 남한 침공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가져오게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의 자유 우방국으로부터 병력과 장비의 파견지원을 얻어 북한군에게 잃었던 땅은 회복할 수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다.

아미도 이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50대가 넘는 분들 중에는 한국전에 참가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한국은 되살아 나고 오늘날과 같이 각계각분야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발전된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한국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의 규모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이지만 우리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할 것이다. 아울러 86년의 아시안경기대회와 88년의 올림픽 대회 개최에 대비한 시설물, 기타의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여러분의 참가 및 참관을 기다리고 있으며 ACI회원 여러분들에서 한국에 올 기회가 있는 분은 ACI한국 분회에서 적절히 안내해 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편 한국소개의 끝부분으로 대한 건축사협회 기술부에서 제공받은 여러장의 서울올림픽경기장의 사진을 공개하였다.

2. 국내 및 해외건설사업

현대건설(주)이 최근 시공한 건축물 및 광토목공사의 시공장면이 소개되었다.

국내건설로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 상하수도시설, 조선소, 제철공장, 항만시설, 공항시설, 고층아파트, 고속도로, 교량공사, 간척지사업등이 소개되었고, 해외건설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 사업이 소개되었다.

바레인의 조선소시설, 주베일의 항만시설사업, 원유선적시설, 알코바 및 제다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쿠웨이트의 항만확장사업, 알코바의 정수시설, 쿠웨이트의 폐수처리시설, 이라크수도인 바그다드의 병원, 이라크의 대단위 주택단지사업 및 철도부설사업, 말레이시아의 페낭의 교량건설, 싱가포르의 호텔건설등이 사진으로 설명되었다.

3.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의 권영원과장과 Utah대학에 유학중인 유경수씨가 수고하였다.

한국의 국토 및 지방도로의 현황과 아스팔트포장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뀌어진 배경이 먼저 설명되었다.

이어서 콘크리트 포장된 88올림픽 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장이 소개되었다. 이에는 콘크리트 시공 기자재와 양생장면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콘크리트 구조로 된 교량의 일부도 소개되었다.

한편, 장(長)스판의 교량이 철골구조가 아닌 P.C. Beam으로 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근에 완성된 한강강변도로가운데 노랑대교의 시공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4. 산업기지개발공사

건설 1부 토목과의 강종수과장이 84년 말에 완공된 충주댐의 전모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댐 자체의 규모 뿐만 아니라

발전용량, 저수용량과 저수지류역의 여러 가지 자료 및 저수지축조가 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입된 주요 자재수량, 작업정인원, 시공장비, 공사소요 기간등이 소개되었다.

이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협천댐의 규모와 공사과정 및 부산시 서부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언댐의 건설현장사진이 여러 장면 소개되었다.

5.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동사의 최만 이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시멘트생산공장의 연혁, 생산 시설의 증가추세 및 현재의 생산총량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내수와 수출용제품의 수효 및 공급량등이 도표로 소개되었다. 또한 쌍용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의 종류와 연구소도 소개하였다. 연구소운영에 대한 자료가 상세히 소개되었다.

6. 일반건축물 및

Precast Concrete System

이 주제는 필자가 담당하였다.

우리나라 건물의 독특한 목조 양식 건물로서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의 정면과 석축 및 석조계단과 그 위에 축조된 회랑을 한국건축의 특징으로서 소개하였다.

이어서 근래에 건립된 건물로 콘크리트 구조로서 목조구조와 흡사한 구조물을 축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몇 군데의 건물을 소개하였다. 경주국립 박물관의 지붕모양, 경주 남산에 자리한 통일전(統一殿) 등이 그 예로 소개되었다.

이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건물들을 소개하였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여러 건물과 대학병원의 본관, 여의도에 있는 몇개의 고층사무실건물, 및 김포공항의 국제선여객청사, 경남지역에 건립된 여러개의 건물들이다.

한편 우림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필람은, Precast System 공법에 의하여 제작된 벽판, 바닥판과, 기둥 및 보, 바닥의 이음부분이 상세히 제시되었다.

이상과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주로한 시설물을 소개, 설명하였던 바,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이들이 한국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orea Session을 끝내면서, 세시간동안

진지하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헤어졌다.

Korea Session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준 유해상박사를 비롯하여 Michigan에 거주하는 최기호씨와 각 부문별로 애써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점심을 들면서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일, 서울을 떠나서 San Francisco에 도착하여 Hyatt Regency Hotel에 모일 때까지 일어났던 일 등을 주고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과 훗날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Ⅲ) ACI 소개

다음으로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의 활동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ACI는 1905년에 미국에서 창립되었다.

여러 지역에 분회가 있으며 구라파, 중남미, 아세아지역의 20개 분회를 포함하여 1986년 3월 현재 71개의 분회에 단체 또는 업체 및 개인등 약 19,000명의 회원이 있다.

회원은 건축, 토목을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에 관한 기계설비를 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시멘트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교육기관, 설계용역, 건설업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관계 업체들이다. ACI본부의 1년간 집행예산은 약 6백 만불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ACI총회는 1년에 두번 개최된다.

봄과 가을에 개최되며, 북미주지역 (미국 및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데 총회개최 예정기간 및 장소는 2년전부터 정해진다.

ACI본부는 170여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 구조물설계, 시공문제등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다.

일반회원은 연례회비를 납부하나 학생회원은 집회원으로서는 회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소득이 극히 낮은 나라의 회원은 회비를 감액하여 받고 있다.

총회개최때에는 액수는 밝혀지지 않으나 여러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으며, 이들의 명단이 총회때 공개된다.

개인의 참가회비는 총회개최전의

남부액과 총회기간중의 남부액이 다르며 전자가 약 10% 싸다. 총회개최전에 등록된 회원들의 명단이 인쇄되어 배포된다.

금년 봄 총회에 참석한 인원 약 1,300명 중 850명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금년 총회의 주제는 지진에 관한 것이었으며, 5일간의 오전, 오후에 걸쳐서 기존 구조물의 지진경향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구조물의 보수, 보강설계 및 지진력에 의한 취약부의 진단, 구조물의 내진 평가 및 절차등이 논의되었고, 신규 구조물 축조시 내진구조로 설계하는 경우의 설계고중 선정 및 구조물의 보강등, 지내력 산정에 의한 동력학 및 정력학적 방법의 고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멕시코 및

칠레의 지진에 의한 피해상황 및 앞으로의 내진 대책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Ⅳ) 후기

국내시설물 뿐만 아니라, 해외공사설계 및 시공시에 널리 준용되고 있는 ACI의 설계기준, 시공기준확립 및 개선, 품질관리 규정, 기술분석 및 교육훈련지침 등을 깊이 익힘으로써, 구조물설계,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할것임은 물론 미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서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자료 등을 교환함으로써 개개인의 활동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서로의 친분을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능한한 여러사람들이 자주 국제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끝으로 이번의 KOREA SESSION에 참가하기 위하여 자료를 작성, 정리한 여러분과 이들의 참가를 허락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었던 여러 기관, 업체의 책임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정부기관 및 사전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한건축사 협회에 감사드리며, 늘 염려하여주고 격려하여 준 ACI한국분회 회원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신임회원



□權 春 植
1922. 12. 20
서울
경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계림건축사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92-12
922-5194



□金 昌 根
1954. 8. 4
전남
전남대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2-1
354-3966



□曹 源 根
1931. 3. 3
서울
서울대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
은평구 녹번동 82-1
354-3966



□李 在 峯
1955. 8. 27
부산
서울시립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부산시 동구 초량3 동 1161-9
462-4711



□許 保
1949. 1. 28
서울
한양대학교 건축과
신문화 건축사사무소
서대문구 연희동 169-4
324-5432



□方 淳 弼
1955. 8. 15
충남
경기대학교 건축과
삼우 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구 주안1동 201-7
864-1040



□崔 丙 讚
1949. 6. 15
충남
한양대학교 건축과
(주)한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9-21
546-2806



□金 容 喆
1956. 5. 9
조선대학교 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대영 건축사사무소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203-19
864-5749



제7회 이사회 개최

제7회 이사회가 5월30일 오후 3시부터 오용석 회장 주재하에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 이사회는 전회 회의록의 승인, 주요업무 보고, 부의사항, 협의사항, 기타사항 협의의 순서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요부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소관할구역 변경승인의 건

경기도 지부장으로부터 분소 관할구역 변경요청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김포 강화 용진군을 고양분소 관할로 편입토록 요청, 이사회에서 승인한 시기가 얼마되지 않으므로 좀 더 시행하면서 소속회원들에 대한 문제 발생 여부를 예의 검토한 후 그 결과 분석에 따라 재협의하도록 본이사회에서의 심의를 일단 유보함.

건축 3단체 실무위원 선임의 건

건축 3단체에서 협의할 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3단체에서 실무위원 1명씩을 선임토록 협의한 바에 따라 본 협회 실무위원 1명을 선임해야 하는 바

본건은 오용석 회장이 선임토록 위임함.

국전운영위원 선임의 건

대한민국건축대전의 운영을 위한 본협회측 운영위원을 원안대로 승인, 추천함.

성명	사무소	비고
김지태	삼이건축사무소	전회장
이준상	종합건축사무소 심원·신양	서울지부장

(기타사항)

미관심의용 도서에 도서신고필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

K사의 경우 미관심의용 도서신고시 도서신고를 필하여 제출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이영일 이사가 건의한 바, 이에 대하여는 사무처가 사례를 수집, 설계감리분과위원회에 자료를 제공, 연구 검토하여 개선함과 아울러 계획설계에 의한 도서신고의 경우 전국 시도지부가 일관성 있게 계획설계비에 대한 실적회비를 징수하도록 그 방안을 검토 제출케 함.

아카시아 회장 내방

아카시아(ARCASIA 아시아지역건축사회) 회장 멘도자(Mendoza)씨가 본 협회 초청에 따라 고문 로널드·푼(Ronald

Poon) 씨와 함께 5월20일 내한,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5월25일 귀국하였다. 멘도자 회장은 방한중 본협회

역대회장·임원들과 환담을 가졌으며 자연형 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 주택설계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행하고 본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86건축사 연수교육을 참관 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한 견학도 실시, 88올림픽 시설물, 고궁, 박물관 등을 참관 하였으며 현대 건축물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멘도자 회장은 본협회의 조직과 활동상, 서울시에 임립(林立)해 있는 각종 현대 건축물을 통해 받는 인상이 각별한듯 하였으며 특히 선진국 대열에 다가서고 있는 경제력을 실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멘도자 회장은 본협회와 아카시아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국제간 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88년 아카시아 총회(ACA-Ⅲ)를 한국에서 개최토록 강력히 희망하기도 했는데 멘도자 회장이 우리나라 국력을 깊이 신뢰 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저력있는 단체임을 확신하는 신호라고 풀이되고 있다.

멘도자 회장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 풀에서 10월9일~13일의 5일간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the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에 한국의 많은 건축사들이 참가해 줄 것을 바라고 한국건축사의 건승을 기원하며 5월25일 출국하였다.

태양에너지 학술발표회

5월10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양에너지학회(회장 이명호) 주최 태양 에너지 학술발표회가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협회에서는 지방회원 56명 포함, 1백 4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의 고조현상을 여실히 반영하였는데 동 발표회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86건축사 연수에 1일간 참석한 것으로 환산토록 하였다.

이날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정책방향... 장석전(동자부 자원개발국장)

●복토주택의 심리를 통한 에너지측정 연구... 이시웅(대전개발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절약연구... 박효순(동력지원부 연구소)

●에너지절약형 태양열아파트... 오정무
(동력자원연구소)

●축열체가 건물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김광우(승전대)

●플라스틱온실의 일사량분석 및 열적
환경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박재복
(서울대)

●유동층의 온도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백고길(대전개방대)

●단일 수직한 축방향의 판을 가진 수평
전도판으로 부터의 자연 대류... 정한식
(동아대)

●나선형 그루브—금강의 복합벽을 갖는
히트파이프 열회수 효과에 관한 연구...
장영석(경남공업전문대)

●안공 태양 일사 강도의 균일성 향상에
관한 연구... 배강(동력자원연구소)

●스케일 모델을 이용한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성능 분석... 김정중(중앙대)

●그린하우스용 합성수지의 분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정현채(경희대)

●자연형 태양열 국민학교 효율 분석에
관한 연구... 조일식(동자연)

제2회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 개최

The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9th Oct. ~ 13th Oct.

제2회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the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가 10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제2회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건축사회이사회(ARCASIA)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회원국
총회로 구성된다.

회의주제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문업을
위한 전략(Strateg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sia)——. 주제가 암시하는
바처럼 회원국 총회에서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문업의 경향 등 모든

●자연형 태양열 조립식 주택에 적용한
태의 열적 성능 실험... 이정희(연세대)

상황의 정보교환을 위한 공개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3일간의 회원국총회기간 중에는
특히 아시아의 건축물에 설정해야 할 방향
(Directions in Asian Architecture)
이라는 주제로 건축설계추세에 논급하는
공개토론회가 하루 포함된다.

아시아 국가 건축사들 모두가 동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국가 건축사도 환영 한다.

본협회에서는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의
회원국총회 참관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총회
참관 등 두 경로(經路)를 패키지로 하는
참관단을 모집하고 있는 바 자세한 문의는
본협회 기획관리실이나 소속지부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측에 의한 국내 일사량 자료의
재평가... 오정무(동자연) (동자연)

●일체식 다목적 집열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 수영장 설계... 이종호(동자연)

진물소방교육 실시

본협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 소방서
에서 5월7일 협회회관의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5월17일에는 본부와 서울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요인 및 소화
요령에 대한 슬라이드 교육을 실시하였다.

'86 건축사연수 실시

'86건축사 제1차연수가 5월22일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 올해 건축사연수의 막을
올렸다.

제1차 연수는 5기에 걸쳐 6월19일까지
2천4백29명의 회원 전원에게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연수는 9월중 서울, 대전,
전주, 부산, 대구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연수일정과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양에너지 학술발표회



86년도 건축사연수

제1차 연수 일정 및 내용

기 별	제 1기	제 2기	제 3기	제 4기	제 5기	계
일 정	'86 5. 22 - 23	5. 28 - 29	6. 4 - 5	6. 11 - 12	6. 18 - 19	
인 원	485	486	486	486	486	2, 429
연 수 내 용	제 1 일 설 비 심포지움	사공재료 심포지움	실 내 디 자 인 심포지움	현장답사	도시환경 심포지움	
	제 2 일 구 조 심포지움	현장답사	현장답사	건축관계법	현장답사	

1차시험 합격자 현황

	일 반	특 별			계
		공 무 원	비 회 원	회 원	
응 시 자	2, 954		560		3, 514
합 격 자	1, 303	270	18	47	1638
합 격 률	44%		59%		46%

건축사 1차합격자 발표

86년도 건축사 1차시험 합격자가 5월7일 발표되었다. 집계된 합격자 수는 위의 표와 같다.

신인및학생 응모기간 연장

신인 및 학생건축설계 작품전시회 응모 신청기간을 5월10일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 더욱 많은 신인과 학생이 응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소식

연합회연구위원회

연합회연구위원회(위원장 유경철)는 4월22일 제4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독립 예산제도에 관한 각지부 의견 검토, 독립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방향 설정 등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독립예산제도에 관한 지부 의견 검토는 아직 의견을 내지 못한 지부가 있고 또한 제출된 의견중에도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어 4월말까지 보완 취합한 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독립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방향설정

연구하여야 할 분야별로 담당 연구위원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연구 분야별 담당위원은 다음과 같다.

유경철...정관 및 규정개정(안) 작성
윤봉원...예산부문 연구
민영기...재산권 처분문제 연구
의 주...외국자료 번역

세무연구위원회

세무연구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5월 12일 제3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득 표준을 인하조정건의〉〈보험 및 금융지원 제도에 관한 협의〉등 안건을 심의 하였다.

소득표준을 인하조정 건의는 86년도 소득표준을 심의 전에 조정건의서를 제출 토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험·금융지원 제도에 관해서는 시중은행중 국민은행과 협의하되 김충진 위원이 전담기로 하였다.

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송기덕)는 5월14일 제4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카시아 (ARCASIA) 회장 초청, AIA총회 참석, 아카시아 총회 및 일본 건축사회연합회총회 참관단 구성 등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아카시아 회장 초청은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맨도자 회장이 5월20일

내한, 5월25일 이한하는 일정으로 초청 행사를 시행하였으며(협회소식 참조) AIA 총회참석에는 희망회원만 참관하기로 협의하였다.

아카시아 총회 및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총회 참관단 구성에 관하여서는, 총회참관 후 방문국을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정하여 세부 일정을 수립, 각 지부에 통보키로 하였으며

상세한 것은 각지부나 본부기획관리실에 문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규위원회

법규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5월15일 제4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사 보수 교육에 따른 건축관계 법규 심포지움 개최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본 협의를 통하여 주제발표자를 동국대학교 이문보 교수, 주택공사 한규봉 건설본부장으로 결정 하였으며 주제 및 발표시간은 주제발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장동찬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법규위원회는 또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추대회원 선정규정(안)을 심의하였으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회(안)을 확정,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다.

기타 법규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협의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 건축관계 법령 및 그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 책자로 발간.

●질의응답을 내용별로 분류, 카드화하여 비치함으로써 응답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

●건축사 설계업무 보수는 본협회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적용토록 행정기관에 건의키로 협의.

도서신고 연구위원회

도서신고 연구위원회(위원장 박성규)는 5월20일 제3회 위원회를 개최, 연구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취합, 그에 따라 보고서를 다시 수정·보완하기로 하였다.



건축물시공현장견학단 / 서울지부



자매결연마을 대표에게 성품 전달 / 충북지부

지역단위건축사체육대회 / 서울지부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이춘상)

건축물 시공현장 견학

서울지부는 5월27일, 여의도 럭키 그룹 사옥 신축 시공현장 견학단을 구성, 견학을 실시하였다. 2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견학단은 현장에서 럭키 개발 황상모 건축본부장으로부터 동건축물의 공법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회원들은 견학을 통해 업무에 크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위 건축사 체육대회 개최

서울지부는 5월24일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고등학교 교정에서 강남, 강동, 성동구 소속 건축사와 관내 구청 건축과 직원과 더불어 심산단원을 겸한 상호친목 체육대회(축구)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이날 우승은 강동 구청 건축과팀이 차지하였다.

충청북도지부

(지부장 연관흥)

도민한마음운동 실천결의대회

지부소식

충북지부는 5월15일 회원31명, 유관기관인사 4명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제반업무추진에 상호 이해하고 협조키로 하였다. 또한 도(道)에서 벌이고 있는 <도민한마음 운동>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문을 채택, 회원간에도 한마음이 될것을 다짐하였다.

회원친선골프대회 개최

충북지부는 5월23일 유성 컨트리클럽에서 제2회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부소속 골프동호회원 12명이 모여 실시한 이번 대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회원들의 취미생활을 통해 지부업무의 활성화를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충북지부는 앞으로 바둑대회, 낚시대회도 개최하며 소속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교육 실시

충북지부는 5월28일 지부임직원과 건축사보 등 54명을 대상으로 지부회의실에서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화를 상영하였다.

충청남도지부

(지부장 민영기)

범직없는 마을과 자매결연

충남지부는 5월20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범직없는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현판식에는 민영기 충남지부장과 지부 임원, 관내 기관장,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며, 민영기 지부장은 마을 대표 김성태씨에게 결연선물로 병풍 5폭, 타올 1백장 등 39만 5천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하였다.

전라남도지부

(지부장 조준원)

전남지부는 5월30일 전라남도 체육회를 방문하고 도지부 전회원으로부터 각출한 성금 50만원을 자매결연단체인 전라남도 체육회 조정경기단체의 대표선수 훈련 강화를 위해 쓰도록 전달하였다.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1.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 3.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품질시험(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품질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시험"이라 함은 선정시험·관리시험 및 검사시험을 말한다.
2. "선정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시험(토질조사시험·유기물함량시험·굴재원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을 말한다.
3. "관리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계법령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4. "검사시험"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제3조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등) ① 건설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3.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특수공사
4.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그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시험의 실시외)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실시대행자 또는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건설공사용 재료의 품질에 관한 시험과 검사시험은 제외한다)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를 의뢰한 품질시험의 성과는 당해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와 품질시험실시대행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선정시험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공신품품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선정시험성과의 이용)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선정시험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토질조사시험을 실시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과를 국립건설시험장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국립건설시험소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토질조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시험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실시하는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 공신품품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지정된 상품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따로 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관·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관리시험의 담당) 관리시험을 실시하는 건설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관리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시험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발주자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검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사시험의 방법 기타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의 참여하에 검사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검사시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검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시험성과총괄표의 제출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제출받은 당해 건설공사의 검사권자는 품질시험성과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의 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의 비용) ① 품질시험의 실시비용은 발주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받은 자는 시험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시험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착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신고를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공品质시험규정 제정이유

건설부장관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品质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이 개정 (1984. 12. 31, 법률 제3765호)됨에 따라 건설공品质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설공品质시험을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사 등을 위한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관리시험과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시험의 3종으로 구분함(영 제2조제1호)

나. 건설공品质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종류를 정함(영 제3조)
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국·공립시험기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실시대행자 또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게 함(영 제4조제1항)
라. 선정시험 및 검사시험은 발주자가 관리시험은 건설업자가 실시하되, 민간인발주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선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마.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성과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건설부령제401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개정령

1986. 5. 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독신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는 이를 세대주로 본다.

7.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제6호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중 “기자단의 숙박용시설”을 “기자단 등의 숙박용시설”로 한다.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 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 및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로 하되, 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발표하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주체는 당해 분양대상인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분양계약 개시일로 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입주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13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1년에 12층을 넘은 매층당 1월을 더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입주일자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과 본문중 “국민주택”을 각각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주택은행(신청서의 접수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중 매월 5만5천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납입한 자가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량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8.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의 월평균소득을 입증하는 서류(국민주택중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 및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일전 3개월 내에 발행한 것)
2.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독신자에 한한다)
 -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기타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옥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무허가 건물에 한한다)
2.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임이 명시된 것에 한한다)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3.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④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제15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부장관의 인정서(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철거증명서(제15조제3항제1호 해당자에 한한다)
5. 예금가입증명서(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 중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
6. 노동부장관 또는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서(제15조제3항제2호 해당자 중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에 한한다)

⑤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사본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
3.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소득 이하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13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본문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하며, 동목(2)중 “44세”를 “34세”로 하고, 동목(3)중 “장기저축자”를 “납입 회수가 많은 자”로 하며, 동호나목 본문중 “60제곱미터”를 “40제곱미터”로 하고, 동목(2)중 “장기저축자”를 “납입회수가 많은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군인으로서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전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귀국한 자 또는 10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전가족이 당해 근무지로 이전(전가족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의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제2항중 “원호처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20인”을 각각 “10인”으로, “20세대”를 “10세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체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부산직할시 주택건설지역 및 대구직할시 주택건설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동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중 제3조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이하 “당첨자”라 한다)의 명단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택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은행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10년 이내에 1회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5년 이내에 1회이상 국민주택등 또는 민영주택의 당첨자로 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체 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부장관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첨자를 그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중 “해약한 자”를 “해약한 자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체(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가 작성하는 임대주택명도확인서

제19조제1항 및 제5항중 “국민주택”을 각각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제20조의 2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국민주택사업주체(법 제3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을 포함한다)”를 “국민주택사업주체(사업주체가 법 제6조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인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등”으로 한다.

[별표1]중 2. 임대주택의 경우의 건축공정난중 “50%”를 “20%”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세대주의 월평균 소득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사원용주택 및 조합주택 등에 대하여도 해당침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투기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소형의 국민주택은 저소득층에게만 공급되도록 하며 기타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독신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도 세대주로 보도록 하여 국민주택공급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조제6호).
- 나. 사원용주택 및 조합주택 등의 경우에도 해당침금지조항 등을 적용하도록 하여 투기발생소지를 없애도록 함(영 제3조·제4조제1항·제17조 및 제20조의 2).
- 다. 40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과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세대주의 월 평균소득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하도록 함(영 제4조1항 단서).
- 라. 종전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가 각각 달랐으나, 현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국민주택가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가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도 청약저축가입자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다르도록 조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도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되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 마. 종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민주택의 관리에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의외의 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국민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도록 함(영 제20조의 2).

◎ 건설부령제402호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1986년 6월11일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도로·공장 기타 소음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체육시설”을 각각 “체육시설·도서관·입주자회의실·관리사무소”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사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인양기 또는 화물전용승강기를 동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에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를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도금 등의 방법으로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마감 처리한 재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폭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막다른 도로이고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은 6 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대지안의 전체 세대수	도로의 폭 (미터)
20세대 미만	4
2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6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
5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0
8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
1천세대 이상	18

② 영 별표 4 제 2 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도로(이하 “단지내 도로”라 한다)의 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라도 막다른 도로이고 그 길이가 35미터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은 6 미터 이상으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은 자동차(대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입도로에 이르는 단지내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	도로의 폭 (미터)
100세대미만	4
1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6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8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
1천세대이상	15

⑥ 도로(단지내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부분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 2항중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 2항중 “장치물”을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물”로 한다.

제21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 외에 1천세대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이상, 1천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30제곱미터에 1천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입주자 회의실·도서실 또는 온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노인정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관리사무소의 건축계획에 포함하여 건축하고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대지안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 안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거나, 그 대지의 출입구로 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대지면적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0.3제곱미터이상 0.9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이상 0.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0.2제곱미터이상 0.6제곱미터 이하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그 최소면적은 315제곱미터(원い수가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27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제 1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부장관 또는 도시사가 대지의 이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놀이터안에 음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규모가 5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약국 1개소이상.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 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의 위치에 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일반목욕장) ① 세대별로 냉·

온수를 공급하는 목욕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1천세대이상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일반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매세대당 0.3제곱미터 이상 0.6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매세대당 0.2제곱미터이상 0.4제곱미터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일반목욕장을 건축(관리시설의 건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목욕장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준공시까지 건설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외하여 의한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 4 항의 근린생활시설중 제 3 호·제 4 호(안마시설소를 제외한다) 및 제 5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목욕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 연면적의 2 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제 2항중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1면”을 “수영장 1개 또는 정구장 2면”으로 한다.

제29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저수조는 세대당 3톤(다만, 시·군 지역에 있어서는 2톤으로 하고,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0.3톤 읍내의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50세대마다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비상전원 및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저수조·고가수조 및 지하양수시설에 있어서의 저수조는 당해 저수조를 2 개 이상의 칸막이로 구획하여 청소 등의 관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저탄시설) ①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식 난방방식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동별 또는 층별로 세대별 구획이 된 공동저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별 전용면적 부분 또는

발코니에 저탄용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탄용 창고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세대인 때에는 15제곱미터 이상, 100세대를 넘는 때에는 15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당 0.1제곱미터(시·군지역의 경우에는 0.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노인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더한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를 넘는 때에는 330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25제곱미터 이상의 오락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3항중 “근린생활시설(제조장·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을 “근린생활시설(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장, 자수업 및 장식품제조장, 커튼 및 휘장 제조장, 표구 및 표구제품제조장, 조화 및 관련제품제조장, 섬유제품인 인형제조장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장으로서 주민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장의 제조장과 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공동변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어린이 놀이터·체육시설 및 노인정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수세식 공동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준이상의 공동변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공동변소에는 대변기 1개 이상, 소변기 2개 이상 및 세면기 1개 이상
2.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관리사무소의 공동변소에는 대변기 2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및 세면기 2개 이상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공동변소에는 대변기 1개 이상, 소변기 2개 이상 및 세면기 1개 이상

4.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공동변소에는 대변기 2개 이상, 소변기 2개 이상 및 세면기 2개 이상
5. 노인정의 공동변소에는 대변기 2개 이상, 소변기 2개 이상 및 세면기 2개 이상

제37조 (수납공간의 설치) 공동주택에는 다용도실 외에 1개소 이상의 수납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기타 놀이시설의 규격난 중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을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7]중 동호 안내판란 다음에 공동변소안내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변소	관리사무소·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및 노인정의 보 안내관 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최소폭을 아파트인 경우에는 30미터,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10미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대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 제한을 없애도록 함(영 제2조).

나. 공동주택의 지하층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도서실 및 입주자회의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7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시집 등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인양기 또는 화물전용승강기를 동당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영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

다. 1천세대이상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입주자회의실·도서실 또는 온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노인정·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

라.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의 대지면적 기준을 세대별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사지역과 군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차등 적용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1천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설치하는 일반목욕장의 대지면적기준을 정하고 일반목욕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 및 침술원 등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바.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가내수공업용 영위할 수 있도록 침구 및 관련제품제조장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34조 제3항).

(건설부 제공)

[별표 1] 단위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치 수
층 고	2.6미터, 2.7미터 또는 2.8미터로 한다.
천정의높이	2.3미터로 한다. 다만,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9제곱미터이하인 욕실(화장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부엌·나용도실 또는 수납공간의 경우에는 2.1미터 또는 2.2미터로 할 수 있다.
거 실	각변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되,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적으로 하여 이를 가산한다.
침 실	각변의 길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하되,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적으로 하여 이를 가산한다.
부엌(식당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식당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적으로 한다.
욕실(화장실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적으로 한다. 다만, 유니트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동정

변경

□ 서울지부

△이상수 · 김방부 · 박은규 · 박영철회원

• (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 783-5301

△최재철 · 이증성회원

• (주)태천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539-2

• 477-2000

△정수현회원

• 하 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동숭동 1-114

• 742-1742

△권혁조회원

• 두성 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개봉동 403-107

• 687-8810

△이종성회원

• 구로 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구로동 1BL 125

• 862-3031

△주영삼 · 이철재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협도시건축

• 용산구 한남동 1-301

• 797-3685

△정동영회원

• 동영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537-2

• 585-6398

△박세웅회원

• (주)무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능동 97-7

• 466-4595

△이경남 · 이재규 · 박창호 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그룹 이이건축

• 강남구 대치동 945-15

• 568-9349, 562-6373

△강희용회원

• 태성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761-2

• 533-4926

△김기석 · 백홍수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람광장

• 종로구 안국동 175-87

• 733-0906

△유승근회원

• 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441

• 584-6172

△이상훈 회원

• 대양 환경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자양동 220-40

• 445-0441

△이상현 · 인화인회원

• 대우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창전동 6-136

• 393-2572, 2573

△이강수회원

• 홍익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당산 3가 228-23

• 633-0228

△박래승회원

• 한성 건축사사무소

• 성북구 삼선 5가 315

• 923-2323

△이장남 · 최용정 · 김영준회원

• 남부삼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9-23

• 546-3349

△임승무 · 김성래 · 안준수 · 전옥윤회원

• 예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3

• 566-6007, 566-6008

△인외식 · 최부득 회원

• 건축사사무소 공간구성

• 동대문구 장안동 464-3

• 245-6813

△유한용회원

• 문일 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시흥동 903

• 802-1025

△윤태웅 · 김영수 · 송교섭 · 김기환회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 강남구 역삼동 697-45

• 555-2935

△석정훈회원

• 건축사사무소 태

• 강남구 대치동 967-3

• 462-4245

△맹성우회원

• 건축사사무소 정전

• 서대문구 창천동 30-7

• 333-0137

△삼명규회원

• 건축사사무소 세경

• 용산구 동빙고동 94

• 798-2548

△박영호 · 전찬진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동인

• 782-8017

△박행일회원

• (주)대일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 837-16

• 532-8481

△방규상회원

• 세진건축사사무소

• 중구 예관동 70-27

• 272-9509

△이종욱회원

• 화일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2

• 557-6024

△오정수회원

• 건축사사무소 목인건축

• 강남구 청담동 87

• 543-3593

△이윤복 · 전경진 · 최강식회원

• (주)동방 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53-12

• 782-8069

△이병균회원

• 광생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가락동 410-211

• 416-2001

△신명철회원

• 정광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1-4

• 545-9362

△박기정회원

• 박기정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목 1동 174-6

• 975-0651

△이진환 · 노병용 · 이수영회원

• 삼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을지로 5가 275-5

• 273-6646, 6647

△송상철 · 노진복 · 송기성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 · 청명 · 기성

• 강동구 성내동 319-17

• 485-1580, 477-8823, 473-4400

△한능순회원

• 한은건축사사무소

• 구로구 구로동 805-2

• 864-7305

△임성호회원

• 건축사사무소 성우건축

• 강동구 성내동 318-1

• 485-1185

△진추경·박경호·서양원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자연·환경

• 강남구 논현동 240-9

• 545-4656

△고용식회원

• 고산 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 782-5597

△이정일·조사현회원

• 건축사사무소 범선

• 강남구 삼성동 1-3

• 545-6628, 6629

△김연구·한동신회원

• 건축사사무소 대원

• 강남구 역삼동 702-16

• 554-5117, 552-8718

△김우성·한현호·박훈회원

• (주)이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

• 553-5307

△진영훈·정한구회원

• 세한·진 종합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통의동 35-22

• 735-8541

△전태종회원

• 창 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인현동 2가 192-30

• 267-5957

△손두호회원

• 건축사사무소 모람

• 강남구 반포동 707-2

• 547-4368

△장기성·김영택회원

• 건축사사무소 미래환경

• 강남구 서초동 1606-3

• 586-3521, 2444

△황규열회원

• 삼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601-15

• 553-7998

△박용진·신동해·이인식회원

• (주)우양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 78-7

• 548-8849

△유지현회원

• 국원 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 76-32

• 94-2345

△이상태회원

• 미화건축사사무소

• 서대문구 합동 37-1

• 362-3983

△황규태회원

• 극동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서초동 1305-7

• 567-2620

△한창근회원

• 한일 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539-2

• 474-4576

△송재승회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 강남구 신사동 573-2

• 544-4723

△이광호회원

• 무이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신사동 664-8

• 546-4568

△박수량회원

• 건축사사무소 문화

• 영등포구 여의도동 62-2

• 784-5420

△김창환회원

• 대성 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 98-30

• 923-2280

△구용환회원

• 건축사사무소 가야

• 강동구 가락동 479

• 417-9211

△오병태회원

• 동남산업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53

• 549-7033

△류시락회원

• 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820-8

• 556-0575

△권세경회원

• 권세경 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87-2

• 604-4564

△김주열회원

• 할렐루야 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8-235

• 604-3130

△오기수회원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5

• 마포구 상수동 160-43

• 324-7200, 741-3701

△황숙재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영건축

• 강남구 논현동 101-21

• 544-3302

△홍성일·소진성회원

• 건축사사무소 흥건축

• 강서구 화곡동 1105-5

• 602-2660

□ 부산지부

△김덕부·강신철·심상복회원

• 로알종합건축사사무소

• 북구 구포동 1186-22

• 332-2862, 6125, 0703

△김원태회원

• 태성건축사사무소

• 북구 구포동 1186-20

• 332-7308

△황경호회원

• 건축사사무소 현기

• 북구 구포동 1186-20

• 333-3275

△김만석회원

• 김만석 건축사사무소

• 북구 덕천동 399-1

• 334-8811

△류광홍회원

• 건축사사무소 광장

• 동구 초량동 1169-11

• 463-3409

△문용규회원

• 건축사사무소 문예건축

• 동구 초량동 1169-11

• 642-0003~4

△이병인·이영진·유동진회원

• 삼중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중앙동 4가 80-21

• 463-3667~8

회원동정

△권경련회원

- 건축사사무소 신홍
- 부산진구 부전동261-1
- 89-4396

△정화선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회
- 부산진구 부전동467-7
- 89-9610

△이건영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회
- 부산진구 부전동467-7
- 22-8812

△김동희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회
- 부산진구 부전동467-7
- 463-2641

△박재평회원

- 세진건축사사무소
- 동구 범일동830-54
- 67-1116

△박상봉·최행웅·성훈섭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도성 공간
- 중구 동광동 1가5
- 68-0358, 22-9924, 1213

△김영배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
- 동구 초량5동1156-6
- 462-6767

△이동배회원

- 건축사사무소 동서
- 동구 초량동1169-11
- 463-9845

△이용홍·추교준·이재봉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 동구 초량3동1157-1
- 462-4711

△유우식회원

- 유우식 건축사사무소
- 동구초량동1161-9
- 463-1777

△정용웅회원

- 대명 건축사사무소
- 진구 가야동164-4
- 89-2033

△안일성·이동배·엄철현회원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기안·동서·한울
- 동구 초량동1169-11
- 44-3737, 463-9845, 463-5840

△박성길·윤영명·이성원회원

- 성심·성일·삼미 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593
- 552-0978, 552-3820, 53-8648

□ 대구지부

△추경호·장 호·이수원회원

- 금호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동인2가 177-1
- 44-7742

△이태우회원

- 대화 건축사사무소
- 서구 평리동1216-22
- 54-1891

△김성수회원

- 대광 건축사사무소
- 서구평리동1092-12
- 553-7050

△김중배회원

- 서부 건축사사무소
- 서구 비산동528-5
- 54-7272

□ 인천지부

△문귀동회원

- 문귀동 건축사사무소
- 북구 부평동442-24
- 김봉섭 회원

△김봉섭회원

- 김봉섭 건축사사무소
- 남구 도화동369-1

□ 경기지부

△윤문혁회원/성보 건축사사무소

△임용수회원/한성건축사사무소

△이홍구회원/정우 건축사사무소

△박보진회원/원진건축사사무소

△김영복회원/동구 건축사사무소

△김순제회원/대영 건축사사무소

△조병원회원/건축사사무소 동원

△김기홍회원/홍보 건축사사무소

△강진호회원/삼우 건축사사무소

△이병목회원/건축사사무소 삼기

△조병순회원/대흥건축사사무소

△이종은회원/건축사사무소 영신

△이상정회원/삼정 건축사사무소

△박영익회원/원 건축사사무소

△오수암회원/미진 건축사사무소

△장기화회원/화신 건축사사무소

△김현규회원/금목 건축사사무소

△이인구회원/(주)정림 건축사사무소

△김동호회원/경신 건축사사무소

△최영식회원/대지 건축사사무소

△윤영호회원/미도 건축사사무소

△정우택회원/신우 건축사사무소

△김명선회원/남양 건축사사무소

△임정남회원/제일 건축사사무소

△박효남회원/창성 건축사사무소

△송 영회원/진흥 건축사사무소

△민병화회원/민 건축사사무소

△박정태회원/성장·박정태 건축사사무소

△권태량회원/중앙건축사사무소

△박수현회원/화덕 건축사사무소

△김병을회원/성도 건축사사무소

△김희중회원/동양 건축사사무소

△박태신회원/명성 건축사사무소

△송인창회원/건축사사무소 신라

△이형재회원/파주 건축사사무소

△김중권회원/남부 건축사사무소

△정해웅회원/삼익 건축사사무소

△박영수회원/대원 건축사사무소

△이재식회원/장원 건축사사무소

△이재제회원/세광 건축사사무소

△최인현회원/영진 현대 건축사사무소

△강중희회원/여명 건축사사무소

△민병운회원/신한 건축사사무소

△박종윤회원/삼보 건축사사무소

△최동륜회원/한남 건축사사무소

△전상남회원/성준 건축사사무소

△최순남회원/미래 건축사사무소

△김동명회원/현대 건축사사무소

△최용덕회원/신화 건축사사무소

△방명규회원/세한 건축사사무소

△신명호회원/동성 건축사사무소

△박수원회원/대영 건축사사무소

△최 용회원/정우 건축사사무소

△박희영회원/동부 건축사사무소

△윤영재회원/건축사사무소 유신건축

△김복경회원/건축사사무소 정원

△김진식회원/원당 건축사사무소

△엄태웅회원/경일 건축사사무소

△조길용회원/유일 건축사사무소

△이일윤회원/한림 건축사사무소

△박용의회원/개풍 건축사사무소

△최동호회원/예전 건축사사무소

△조순환회원/경일 건축사사무소

△권순재회원/건축사사무소 기우

△유기조회원/법진 건축사사무소
 △최승국회원/국제 건축사사무소
 △한성호회원/제3 건축사사무소
 △유봉정회원/우림 건축사사무소
 △최재남회원/건축사사무소 삼양건축
 △권영근회원/내외 건축사사무소
 △김행원회원/정화 건축사사무소
 △김태익회원/건축사사무소 대삼
 △차주복회원/제일 건축사사무소
 △임동빈회원/동호 건축사사무소
 △이영택회원/정동 건축사사무소
 △여찬수회원/현대 건축사사무소
 △오은택회원/건축사사무소 벽진
 △김광일회원/광일 건축사사무소
 △정주영회원/건축사사무소 동성건축
 △최병상회원/대림 건축사사무소
 △유덕호회원/(주)삼진 건축사사무소
 △장봉생회원/원일 건축사사무소
 △추명오회원/미래 건축사사무소
 △정충조회원/대진 건축사사무소
 △한관수회원/경림 건축사사무소
 △백원기회원/건축사사무소 소슬단
 △강석준회원/동아 건축사사무소
 △이병일회원/(주)진화 건축사사무소
 △정환철회원/문화 건축사사무소
 △한진택회원/한진 건축사사무소
 △황재성회원/현대 건축사사무소
 △박중화회원/현대 건축사사무소
 △박종기회원/진명 건축사사무소
 △김세재회원/신도 건축사사무소
 △이호재회원/남부 건축사사무소
 △조은수회원/도시 건축사사무소
 △김진열회원/중앙 건축사사무소
 △이종성회원/동아 건축사사무소
 △황창구회원/평해 건축사사무소
 △정부교회원/(주)대호 건축사사무소
 △안외모회원/연합 건축사사무소
 △조성원회원/대우 건축사사무소
 △김준경회원/우신 건축사사무소
 △구홍서회원/정진 건축사사무소
 △조정희회원/서울종합 건축사사무소
 △김우현회원/서울 종합건축사사무소
 △소병익회원/서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재원회원/건축사사무소 한도
 △김진두회원/금성 건축사사무소
 △박창흡회원/우성 건축사사무소
 △조일환회원/현진 건축사사무소
 △김진길회원/김 건축사사무소

△최승원/건축사사무소 흥림
 □ 강원지부
 △민경수회원
 •대아 건축사사무소
 •춘천시 조양동37-19
 □ 전남지부
 △이승준·이창률·이경행회원
 •(주)사공 종합건축사사무소
 •동구 금남로 2가 7-4 •232-4981
 △김호신회원
 •삼영 건축사사무소
 •북구 우산동518-108
 •525-5788
 △박영희회원
 •무등 건축사사무소
 •동구 금남로 5가 152 •33-0215
 △정영옥·문상민회원
 •남해 건축사사무소
 •동구 궁동 7-7
 •27-0259
 △박영희·최수일·박종성회원
 •무등·백제·우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구 금남로 5가 152
 •33-0215, 34-3342, 34-8838
 △선재규·강찬수·노운기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고려·광림·대일
 •동구 궁동 7-9
 •22-1905, 27-0217, 27-7587
 △김보현·김상준·유준호회원
 •에이스·라인·유일 종합건축사사무소
 •북구 북동301-1
 •33-5436, 33-3651, 34-3191

재개

□ 서울지부
 △박상기회원
 •대소 건축사사무소
 •성동구 자양동220-149
 •445-0712
 △민영준회원
 •신한 건축사사무소
 •성북구 삼선 5가 298
 •95-1931

재입

□ 서울지부
 △김안배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요셉건축

•강남구 논현동254-4
 •545-1703
 △권영세회원
 •건축사사무소지원
 •성동구 자양동220-149
 •444-2580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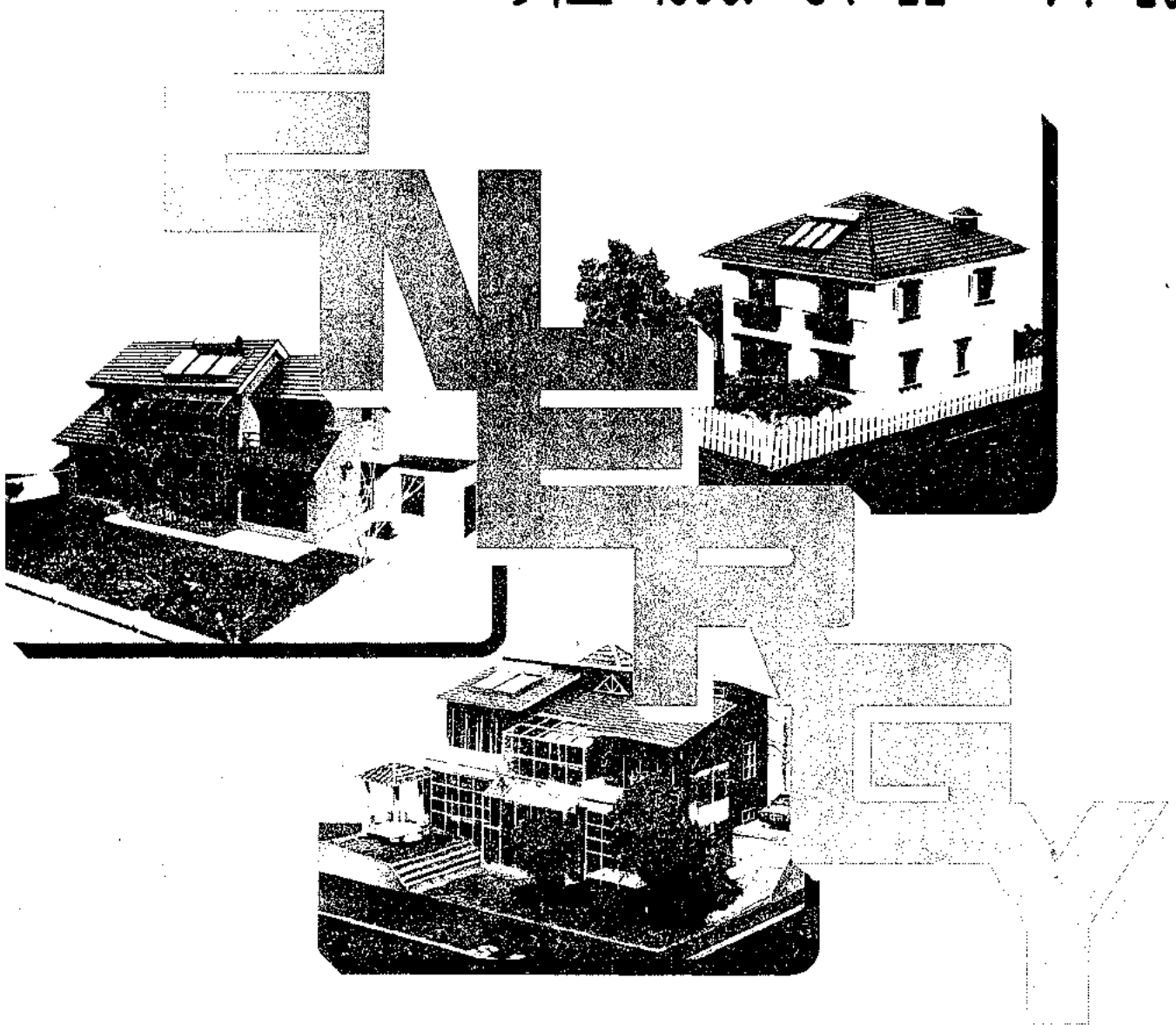
□ 서울지부
 △오은택회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논현동204-4
 △백종성회원
 •신미건축사사무소
 •관악구 봉천동913-1
 △차연희회원
 •(주)한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구 삼성동 9-21
 △이종성회원
 •구로 건축사사무소
 •구로구 구로동 1-125
 □ 경기지부
 △서남식회원
 •서남식 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송탄시 신장 2 동324-23
 △김근태회원
 •김근태 건축사사무소
 •강화군 강화읍 판청리170-7
 △심희택회원
 •심희택건축사사무소
 •이천군 이천읍 중리187-2
 □ 부산지부
 △손종윤회원
 •삼중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0-21, 23

전입

□ 서울지부
 △서남식회원
 •건축사사무소 태진건축
 •은평구 용암동591-1
 •303-5559
 □ 충북지부
 △김근태회원
 •김근태 건축사사무소
 •충주시 역전동669-11
 •43-3630

'86 현상설계작품 전시회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실
기간: 1986. 5. 22 ~ 7. 20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후원: 건설부·동력자원부·과학기술처·한국동력자원연구소·대한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한국태양에너지학회·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가협회

협찬: (주)화승·하궁유리공업조선회사

현대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반사유리



플로트 공법에 이은 새로운 유리기술의 개가

한국의 유리문화를 주도해 온 한국유리는 플로트 공법에 이어 미국의 Airco사로부터 이온 스파트링(Ion Sputtering) 공법을 도입하여 더욱 우수하고 다양한 반사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온 스파트링 공법은 이온의 확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고진공에서 가스를 방전시켜 가속된 가스이온이 금속 타겟을 때려 코팅시키는 공법으로 막의 밀도가 높고 밀착성이 뛰어나며 전체가 균일하게 코팅되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코팅물질에 따라 그 색상이 다양하며 빛이나 열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생동감 넘치는 외관, 쾌적한 실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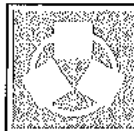
●에너지 절약—태양광선의 투과와 반사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큼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반사유리는 빛에 대한 성질을 변화시켜 커튼이 없어도 외부시선이나 직사광선에서 실내를 보호하며,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안락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아름다운 외관—색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반사에 따른 거울 효과로 자연과 주위의 전경이 건축물에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유리의 반사유리는 태양광선의 반사율이 높은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와 한랭한 지역의 보온을 위하여 개발한 난방보온유리(Low-E Glass)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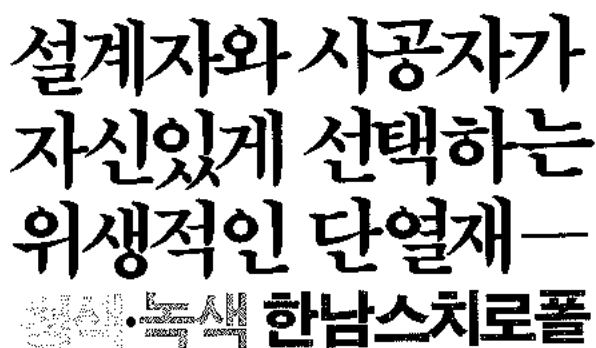
- 용도 — 일반건축 및 고층 빌딩의 창(특히 공기조절 설비를 갖춘 건물에 좋습니다)
- 건물로비 등 대형 스크린창
- 복층유리 등의 가공제품
-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
- 태양열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 실내 보온이 요구되는 곳



새로운 유리문화를 창출하는

韓 國 유 리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한남화학의 원료로 생산되는 건축용 단열재 청색, 녹색스チ로폴은 단열 및 방음, 방습효과가 뛰어나 알맞은 실내온도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유해요소가 없는 위생적인 단열재입니다. 이제 청색, 녹색 한남스チ로폴로 아늑한 실내 환경을 연출하십시오.

건축용 단열재 청색, 녹색 스티로폼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보증 KS 표시와 (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단열재에 ... 바로 먹이나 지붕을 열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 단열재에 ... 바로 먹이나 지붕을 덮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
- 흡습성이 없는 스티로폼은 한번 시공한 ... 안식해도 됩니다.

- 겨울에는 실내보온 효과가 뛰어나므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여름에는 알맞은 효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외투 소용돌을 등쳐주는 뛰어난 방출성으로 아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온난과 절감에 용이하므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 우수한 열로 제초제로 유해소스가 없어 안전합니다.

